최종보고서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선진화·정비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김 봉 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연구원 허 동 원 박사 (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연구원 최 요 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연구원 강 남 기 과장 (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연구원 김 현 수 변호사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보조원 이 승 엽 선임연구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보조원 김 선 미 선임연구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사단법인 한국기업법무협회

제 출 문

법제처장 귀하

본 보고서를 “FTA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국내 법령과 자치법규 선진화·정비 방안 연구“의 최종 연구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주관연구기관 법제처

연구수행기관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책임자 김 봉 철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연구원 허 동 원 박사 (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연구원 최 요 섭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공동연구원 강 남 기 과장 (한국기업법무협회)
공동연구원 김 현 수 변호사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보조원 이 승 엽 선임연구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연구보조원 김 선 미 선임연구원 (한국기업법무협회)

<제목 차례>

개조식 요약서 ······ 1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

II. FTA ······ 1

III. 한국의 FTA ······ 2

IV. FTA 체결과 국내법 ······ 3

V. 해외사례-EU가 체결한 국제조약과 한-EU FTA ······ 3

VI. FTA에 따른 국내법률의 개선내용과 제안 ······ 4

VII.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한 제안 ······ 4

요 약 문 ······ 6

1. FTA 추세와 Legal Infrastructure ······ 6
2. FTA에 따른 국내법률의 개선 ······ 7
3. 자치법규의 개선 ······ 8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0

제1절 연구의 배경 ······ 10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제2장 FTA에 대한 일반론과 한국의 FTA ······ 16

제1절 지역주의와 FTA ······ 16

Ⅰ. 지역주의의 의의 ······ 16

Ⅱ. 지역주의의 발전단계와 FTA ······ 17

제2절 FTA의 일반론 ······ 18

I. FTA의 의의 ······ 18

II.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 19

III. FTA의 유형 ······ 20

IV. FTA의 경제적 효과 ······ 22

1. 긍정적 효과 ······ 22
2. 부정적 효과 ······ 23

제3절 FTA의 법적 구조 ······ 25

I. 법적 성격 및 근거 ······ 25

II. 양허와 유보사항 ······ 26

III. FTA의 주요 규율 분야와 협정문의 규정내용 ······ 27

1. 상품무역 ··27
2. 원산지규정 ··28
3. 서비스무역 ··29
4. 투 자 ···29
5. 분쟁의 해결 ···30
6. 기타 규율분야 ··30
제4절 FTA의 규범적 역할 ··31
I. 국제경제규범 ··31
II. 국내경제규범 ···32
1. 무역·경제관련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 ······················32
2. FTA의 국내법적 효력 ···34
제5절 한국의 FTA 정책 ··35
Ⅰ. FTA 추진 배경 ···35
Ⅱ. FTA 추진과 전략 ··36
Ⅲ. FTA 체결 현황 ···37

제3장 FTA 추진과 국내법체계 ···41
제1절 FTA의 기본원칙 ··41
제2절 FTA 체결과 국내법 ··42
Ⅰ. 법령정비의 요구 ··42
II. 법개선 의무에 대한 예외-유보사항 ···44
1. 투자 관련 주요 유보 ··44
2.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47
III. FTA 협상과 체결 절차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 ······························55
1. FTA 추진·이행법의 제안 ···55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 ·························57
Ⅲ. 이행입법의 제정 ··58

제4장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체계에 대한 영향 ·····························61
제1절 EU 공동통상정책과 FTA의 발전 ··61
Ⅰ. EU 공동통상정책 일반 ··61
Ⅱ.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설립과 발전 ··63
1.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배경 ··63
2. 경제통합의 체계와 시장통합의 완성 ···63
3. 초국가적 기구와 EU 법규 ··65
Ⅲ. EU의 신 통상정책의 배경과 특징 ··66
1. 신 통상정책기조의 등장배경 ··66
2. 신 통상정책의 특징과 FTA에 대한 입장 ·····································67

제2절 EU 회원국 내에서의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한-EU FTA ······68
Ⅰ. EU 회원국 내에서의 조약의 효력 ······68
Ⅱ. EU이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원칙 ······69
1. 직접효력의 원칙 ······69
2. 우위성 원칙 ······71
Ⅲ. 한-EU FTA와 관련된 회원국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 ······72
1. EU와 비회원국간 국제조약의 체결과 효력 ······72
2. EU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한 ECJ의 태도 ······73
3. EU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EU 법체계 내부적인 법적 효력 ······76
4. 한-EU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 ······77

제5장 국내법률의 개선내용과 제안 ······81
제1절 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 ······81
Ⅰ. 행정, 제도, 공기업 관련 개정법률 ······81
1. 행정절차법(법률 제11109호, 2011.12.2, 일부개정) ······81
2. 우편법(법률 제11116호, 2011.12.2, 일부개정) ······82
3. 우체국예금 · 보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5호, 2011.12.2, 일부개정) ······85
4.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166호, 2010.3.22, 전부개정) ······86
5. 전파법(법률 제10393호, 2010.7.23, 일부개정) ······92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41호, 2008.12.19, 일부개정) ······96
Ⅱ. 독점 · 무역관련 개정 법률 ······9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9호, 2011.12.2, 일부개정) ······97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8933호, 2008.3.21, 일부개정) ······101
3. 대외무역법(법률 제9630호, 2009.4.22, 일부개정) ······111
Ⅲ. 조세 관련 규범의 개정 ······113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06호, 2011.6.30, 일부개정 / 법률 제11107호, 2011.12.2, 일부개정) ······113
2. 관세법 (법률 제11121호, 2011.12.31, 일부개정) ······114
3.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1106호, 2011.12.2, 일부개정) ······117
4. 지방세법 (법률 제11108호, 2011.12.2, 일부개정) ······117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08호, 2011.6.30, 일부개정) ······119
Ⅳ. 특허권의 강화를 원인으로 한 개정 ······120
1. 실용신안법 (법률 제11114호로 2011.12.2, 일부개정) ······120
2.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0809호, 2011.6.30, 일부개정 / 법률 제11111호, 2011.12.2, 일부개정) ······121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10호, 2011.6.30, 일부개정, 법

률 제11112호, 2011.12.2, 일부개정) ········· 125
4. 특허법 (법률 제11117호, 2011.12.2, 일부개정) ········· 128
5. 약사법 (법률 제11118호, 2011.12.2, 일부개정) ········· 132
6. 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 133
7. 상표법 (법률 제10811호, 2011.6.30, 일부개정, 법률 제11113호, 2011.12.2, 일부개정) ········· 137
Ⅴ.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 ········· 138
1. 세무사법 (법률 제10805호, 2011.6.30, 일부개정) ········· 138
2.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9524호, 2009.3.25, 제정) ········· 141
3.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0812호, 2011.6.30, 일부개정) ········· 143
제2절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 제안 ········· 146
I.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개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12.09.03.) ········· 146
II. FTA 기본원칙별 법령 선진화 방안 ········· 147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원칙 ········· 147
2. 시장접근 제한 금지(Market Access; MA)원칙 ········· 148
3.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SMBD) ········· 149
4.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 ········· 149
III. FTA에 따른 법률의 개선제안 - 민사소송법 개정제안을 중심으로 ········· 150
제3절 소 결 ········· 154

제6장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한 제안 ········· 156
제1절 현행 자치법규의 FTA와의 합치성 여부 검토 ········· 156
제2절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기존질서의 유보사항 ········· 160
제3절 FTA 기본원칙별 선진화 방안 ········· 162
Ⅰ. 내국민대우 ········· 162
Ⅱ. 시장접근 제한 금지 ········· 167
Ⅲ. 현지주재 의무 금지(Local Presence; LP) ········· 175
Ⅳ. 이행요건 부과금지(Performance Requirement; PR) ········· 176
Ⅴ.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SMBD) ········· 179
제3절 상-하위법 상호 관계에 기인한 선진화 방안 ········· 179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 182

제7장 결 론 ········· 184

〈부 록〉

※ FTA 체결을 원인으로 하여 제ㆍ개정된 법률 현황 ······ 186

※ FTA의 원칙과 비합치될 가능성 있는 지방자치법규 현황 ······ 189

〈표 차례〉

〈표 1〉 FTA 추진과 국내 대응조치의 근거를 제공하는 지원법규 예시 ······ 11

〈표 2〉 자치법규 표본 전수 조사ㆍ검토 결과(2011. 9. 법제처) ······ 14

〈표 3〉 FTA의 유형 ······ 21

〈표 4〉 FTA의 경제적 효과 ······ 24

〈표 5〉 한국의 FTA 추진 현황 ······ 37

〈표 6〉 FTA 기본원칙 ······ 41

〈표 7〉 한ㆍ미FTA와 비합치하는 국내 법률 조사 결과 발표(2007.1.26.) ······ 43

〈표 8〉 한ㆍ미 FTA 이행법률 정비 현황 ······ 59

〈표 9〉 "한ㆍ미 FTA 관련 비합치 법령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2012.1.26)"에 대한 정부(외교통상부)의 검토 답변(2012.2.6.) ······ 157

〈그림 차례〉

〈그림 1〉 FTA의 체결과 발효에 관한 법적 절차 ······ 26

〈그림 2〉 무역굴절현상과 FTA 원산지규정 ······ 28

〈그림 3〉 다자주의 규범과 FTA의 중첩적 적용 ······ 32

〈그림 4〉 FTA 체결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효과 ······ 33

개조식 요약서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국내법과 FTA 규정의 관계, 그리고 기업활동을 위한 규범 개선의 필요성과 통일/체계적인 국내 연구의 부재 및 그 대안

- 통일/체계적 연구는 향후 계속될 새로운 FTA 체결에 있어서도 크게 변동되지 않을 원칙을 제시
- FTA 관련 법규범의 안정적 보완을 위한 반드시 필요

○ FTA 시대에서 Global Standard 합치성을 존중하면서 투명성과 명확성을 제고하는 국내법령의 개선방향 도출

- 체결된 FTA 규정과 기존 국내법령의 충돌되는 부분을 탐색
-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조사 및 분석
- 향후 기업과 입법기관 및 행정기관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법개선 자료 작성

○ 현실에서 즉시 적용/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FTA의 법리 전체를 관통하는 통일적/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마련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함

II. FTA

○ 지역주의(Regionalism)라 함은, 국가 간 지리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연관성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정 국가들이 무역에 관한 자유주의 및 무차별주의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무역의 움직임

-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 등의 순서로 지역주의 발전

○ 자유무역협정(FTA)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

- FTA는 관세제거 및 무역장벽완화와 같은 단순한 무역규범의 성격에서 벗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이용
- 무역창출효과와 같은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함

○ FTA 협상에서 무역장벽의 제거와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고 노력

- 협상의 결과로 협정의 내용을 합의하는 것이 양허(concession)
- 양허안의 일부로서 각국의 산업구조 또는 무역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의 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FTA의 효력발생을 미루어 놓은 유보사항도 존재함

○ FTA는 국제경제규범으로 국제무역에 관하여 FTA와 다자주의 규범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FTA는 다자주의 규범에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음

- 국내규범으로서의 역할도 가지며, 무역・경제 관련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이 되고, 직접적으로 국내법적 효력도 발생

○ 6가지 FTA의 기본원칙

- 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원칙 등

Ⅲ. 한국의 FTA

○ 한국은 오랫동안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무역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에서 벗어나, FTA를 전략적으로 추진

-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 및 경제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적극적

-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 지향
-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 추진

○ 정부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다양한 국가와의 FTA 체결진행
- 현재까지 8건(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45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는 결과

Ⅳ. FTA 체결과 국내법

○ FTA 협정과 국내법 체계의 비합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내법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국내법규와 FTA간 비합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요구가 높아짐
- 법개선 의무에 대한 예외 및 유보조항의 설정도 가능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은 되기 어려움
- 국내에서는 FTA 협상과 체결 절차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가 이루어짐

○ FTA의 직접적용에 따른 법질서의 파괴를 막고, 기존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FTA의 이행을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입법이 다양하게 마련됨
- 특히, 한-미 FTA를 추진하고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입법 노력이 상당히 진행됨

V. 해외사례-EU가 체결한 국제조약과 한-EU FTA

○ EU는 공동통상정책을 기반으로 경제통합을 체계화하여 시장통합을 완성
- 초국가적 기구를 통하여 EU 공통의 통상정책을 마련함
- 직접효력의 원칙과 우위성의 원칙 등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원칙이 수립됨
- EU의 신통상정책에 따라서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기 시작

○ EU에서 한-EU FTA는 신통상정책을 바탕으로 진행된 중요한 사례이

며, 관련 회원국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중요성도 높음

Ⅵ. FTA에 따른 국내법률의 개선내용과 제안

○ FTA 체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많은 법률개정이 진행되었고, 현재도 진행중임

- 행정, 제도, 공기업 관련 개정법률

  행정절차법/우편법/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독점ㆍ무역관련 개정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대외무역법

- 조세 관련 규범의 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관세법/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특허권의 강화를 원인으로 한 개정

  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특허법/약사법/저작권법/상표법

-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

  세무사법/외국법자문사법/공인회계사법

○ FTA 추진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는 법률과 시행령 수준의 개선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향후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은 계속 진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몇 가지 제안도 가능함

- 특히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기회가 많았고, 이러한 기회에서 관련 국내법의 개선이 상당히 진행됨

Ⅶ.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한 제안

○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수가 총

79,043건(조례 55,996건, 규칙 23,047건)으로, 1992년에 비해 약 48%나 증가

- 4천여건인 법령 건수의 약 20배나 되므로,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법령 선진화의 일환으로 FTA와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짐
- 그러나 현실적으로 자치법규의 FTA 합치성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며,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 자치법규에 대한 일부 FTA의 유보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비합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 모든 FTA에 근본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국내법령의 체질 개선, 특히 자치법규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화'가 반드시 필요함

○ FTA 기본원칙별 선진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을 것임

- 예를 들어,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제한 금지/현지주재 의무 금지/이행요건 부과 금지/고위경영자나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 금지의 원칙에 배치되는 여러 가지 자치법규의 내용을 발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내용을 자치법규 선진화의 차원에서 개선해야 함

○ 또한 법률-자치법규 상호 관계에 기인한 선진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상위법령 제개정 취지 및 내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

○ FTA 기본원칙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함

- 비합치가 의심되는 자치법규가 발견되는 경우 법제처 등 관련 상위기관에 적극 문의하여 검토를 요청
- 법제처 또는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비합치 사례 및 개정 검토 내용을 유기적으로 공유하는 것도 방안

요 약 문

1. FTA 추세와 Legal Infrastructure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체결이 늘면서, 세계경제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내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적합성을 구현하기 위한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한-EU FTA를 비롯하여 이미 FTA가 한국의 무역과 국제경제관계를 규율하는 상황이다.

국제규범인 FT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FTA의 체결국은 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 분쟁해결 등 직접적인 관련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내규범의 전반적인 변화와 개선은 불가피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무역관련 법규,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 정책추진 절차 관련 법규 등 FTA 정책의 추진과 국내 대응조치의 근거를 제공하는 지원법규들이 제정 · 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국내법과 FTA 규정간의 비합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한 분야의 국내법령 개선은 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국제적 활동을 진행할 경우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경제관련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속있는 국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상품관세를 낮추거나 비관세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여 (가격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과 연결된다.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만들어진 FTA 및 관련 규범 전체는, 무역과 경제관련 나아가 사회, 문화, 정치적인 문제에까지 영향을 주는 규범적 자원이 된다.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간접시설과 비슷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에서, FTA를 규범적 인프라(Legal Infrastructure)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

다. 따라서 FTA의 효과적인 활용과 긍정적인 결과를 위한 규범개선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2. FTA에 따른 국내법률의 개선

FTA 체결에 따른 법률차원의 개정 현황과 관련하여서는 행정, 제도, 공기업 관련 개정법률, 독점 · 무역관련 개정 법률, 조세 관련 규범의 개정, 특허권의 강화를 원인으로 한 개정,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체계화하여 각 법률 개정의 내용을 조사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개정은 특정 분야에 대한 법이 아닌 전반적인 부분에 검색되었고, 1회에 그친 경우도 있으나, 계속 체결되는 다양한 자유무역협정에 합치하기 위해서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개정되기도 하였다.

행정제도 및 공기업 관련 분야에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에서 40일로 확대했는데 이는 한-미 FTA의 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그 기간을 20일 확대한 것에 그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 우편법 개정의 경우 정부의 우정사업 대한 기존의 독점적 지위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 FTA에 합치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정관련 사업에서 국가의 역할과 업무가 줄어드는 세계적 추세에도 부합하는 개정이다.

한편 특허·지적재산권 관련 규범들은 FTA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분야이다. 이와 관련된 개정 법률의 숫자도 많았고, 개별 개정 법률 간에는 유사한 점이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개정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개정 등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려 권리자를 한층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권리자의 보호의 측면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이나, 특허법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반출을 금지하는 법개정,

관세법에서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한 법개정 등에서 일맥상통하게 발견할 수 있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분야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전문자격 보유자 개인에 관한 법개정보다 이들이 다수가 모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대한 법개정이 주목된다. 즉, 개정된 내용에서는 외국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대한 국내 시장의 개방을 다루고 있으며, 또하나 주목할 점은 이들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차츰 개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이 분야의 시장개방은 FTA에 합치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당연하지만, 국내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기도 한 것이다.

3. 자치법규의 개선

FTA에 따른 국내법규의 정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개선하는 경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진행중인 자치법규의 선진화 사업에서도, FTA를 고려한 방향설정은 한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특히 중앙정부 보다 입법기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자치법규가 FTA 질서에 조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자치법규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한다.

지방자치법규의 개선은 지방의 기본적인 정서가 깊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므로, FTA라는 국제규범과 합치되지 못하여 심한 갈등을 낳을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FTA의 체결에 있어서, 각 당사국의 기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유보조항을 두는 경우도 있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기존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그러한 노력이 많은데, 한-미 FTA의 체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유보조항을 통해서 비합치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미 FTA의 유보조항이 기존 지방자치법규의 FTA 비합치성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에 국한되며, 다른 분야에 관하여는 여전히 지방자치법규의 유보는 불안정하거나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유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것에만 해당되며, 새로운 자치법규는 한-미 FTA의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FTA 현상에 합치하도록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TA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자치법규를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내국민대우,시장접근 제한 금지, 현지주재 의무 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등이 있다. 이밖에 상위법령의 특정 규제나 지원 등의 권한을 자치법규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관련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어 FTA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자치법규의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업무 처리절차의 재정립이 필요하다.

1. 상위법령 제개정 취지 및 내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한다.
2. FTA 기본원칙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3. 둘째 과정에서 비합치가 의심되는 자치법규가 발견되는 경우 법제처 등 관련 상위기관에 적극 문의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4. 법제처 또는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비합치 사례 및 개정 검토 내용을 유기적으로 공유토록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하여 FTA 원칙을 고려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해당기관 또는 법제처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가칭 ‘FTA시대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팀’의 설립 및 운영을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제1장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1절 연구의 배경

세계무역 및 경제질서는 WTO체제의 출범부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과 같은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 RTA)의 체결이 확산되는 추세를 경험하고 있다. FTA란 국제경제법상 ‘2 국가 또는 몇 개의 소수 국가들 사이에 관세 및 기타 규범 등을 공유하면서 서로간의 무역장벽을 상당부분까지 제거하는 조약’을 말한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미 많은 FTA가 체결되어 국제/국내 산업 규범으로 활용되는 상황이다.

FTA의 전 세계적인 확산 속에서,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이라는 원칙 아래 무역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고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FTA 체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거대ㆍ선진 경제권 및 신흥유망시장과의 FTA 추진, 상품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체결 등의 목표 아래 적극적인 FTA 체결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 2002년 체결된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싱가포르, 한-ASEAN, 한-EU 등 많은 FTA가 순차적으로 발효되었고, 미국과도 FTA가 체결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발효되었다. 2012년 9월을 기준으로 한국은 총 8건(45개국)의 FTA가 발효 중이다.

FTA를 통하여 마련된 규범과 기준은 국제경제규범의 역할 외에도 국내규범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법적인 자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FTA를 체결하는 국가는 이른바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산업기반시설과 같은 역할을 할 경우에 체결 당사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를 유사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1)]

FT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하여, FTA의 체결국에게는 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 분쟁해결 등 직접적인 관련 분야에 대한 관련 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1)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이해』, 한국기업법무협회, 2007, 111~113면

이 필요하다. 그러나 FTA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야 외에도 서비스, 기술협력, 구조조정, 투자, 노동, 사회보장, 기업, 환경 등의 분야에서도 체결당사국이 FTA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국내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자극하며 촉진한다.

더 나아가 FTA 체결 상대국과 무역규범을 공유하게 되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요인을 제공하게 되며,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속한 법률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된다. FTA 체결이 국내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공사법분야를 불문하고 전반적이고 광범위한 것이며, FTA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경제와 무역 관련 분야와 함께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회와 문화 관련 분야까지도 포괄한다. 대한민국이 체결하는 외국과의 조약은 체결ㆍ비준ㆍ의회의 동의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약은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인정된다.

무역관련 법규,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 정책추진 절차 관련 법규 등 FTA 정책의 추진과 국내 대응조치의 근거를 제공하는 지원법규들이 제정ㆍ개정되기는 하였으나, 기존 국내법과 FTA 규정간의 비합치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표 1〉 FTA 추진과 국내 대응조치의 근거를 제공하는 지원법규 예시

무역 관련 법규	- 관세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대외무역법 -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산업구조조정 및 지원 관련 법규	-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정책 추진 절차 관련 법규	- 정부조직 관련 법규 - 자유무역협정 체결절차규정(대통령령) -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체결 지원위원회 규정(대통령령)

기존의 국내법 규정과 FTA 규정의 비합치를 피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과 FTA 규정 상호간의 비교/조사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Global Standard와의 합치를 전제로 한다.

Global Standard에 합치하는 FTA/국내법 조화 방향의 예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와 민사소송법 개선안>

- BIT와 FTA의 투자규정
  양자간 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은 국제투자의 보호와 촉진을 위한 규범적 장치를 마련하는 양자조약이고, FTA는 원칙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무역장벽의 제거를 위하여 체결되는 협정
  최근의 FTA에서는 BIT의 기능을 포함하는 투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추세

-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 ISD)는 투자유치국이 투자조약상 규정된 투자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한 투자가가 국제 또는 국내분쟁절차 중에서 선택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분쟁해결방법이며, 투자자는 국제분쟁해결절차를 선호하는 경향
  많은 BIT나 FTA는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

- 국제투자중재절차와 민사소송절차
  국제분쟁해결절차 중에서 국제투자중재의 방식을 통해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경우 중재판정의 승인/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민사소송/집행법과 연결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관련 규정인 제217조[2]는 국제투자중재 관련 보편적 국제규범의 범위 내에서 개선 필요

---

2) 제217조(외국판결의 효력)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된다.
   1.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2.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송달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송에 응하였을 것
   3.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4. 상호보증이 있을 것

특히 기업활동과 직접적 연관성 있는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규범개선의 방향 제시는 FTA의 법적기반성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필요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 정책에 조화되면서도 Global Standard에 합치하는 다양한 국내법 개선에 관한 통일적 연구는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다.

‘법제도 선진화’는 FTA 시대에 필요한 Global Standard 및 국제사회의 법제흐름에 적응하는 ‘법만들기’이다. 따라서 FTA와 법제도 선진화 사업은 같은 방향을 위한 정책이며, 법제도 선진화에서 FTA라는 요소가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다. FTA 시대에 적절한 좋은 법과 좋은 입법체계를 구비하는 것은, 한국 기업과 한국 자체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제무대에서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근본적인 사업이다. 따라서 해당 분야의 국내법령을 개선을 통하여 한국사회가 FTA를 활용하고 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제도 선진화'의 목적

1. 좋은 법 만들기 : 국민과 수요자 중심의 간결한 법체계를 구축하고, 내용적으로는 헌법정신에 맞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민)과 기업을 위한 법규의 품질을 높이는 것
2. 좋은 입법체계 만들기 : 좋은 법 만들기를 위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그러한 분야의 국내법령 개선은 주로,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시하거나 국제적 활동을 진행할 경우에 1)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2) 경제관련 해외 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실속있는 국제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3) 상품관세를 낮추거나 비관세무역장벽을 제거하도록 하여 (가격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사안과 연결된다.

FTA에 따른 국내법규의 정비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을 개선하는 경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법률수준이 아닌 자치법규의 개선작업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장기적으로 진행 중인 자치법규 선진화 사업에서, FTA를 고려한 방향설정은 한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중앙-지방정부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

는 방법이다. 특히 중앙정부 보다 입법기능이 취약한 자치법규 분야에서 FTA 질서에 보호되지 못할 가능성이 발생하므로 자치법규까지 Global Standard의 범주로 포함시켜야 한다.

<표 2> 자치법규 표본 전수 조사 · 검토 결과(2011. 9. 법제처)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1곳씩을 선정하여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 조사 ·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위임 사항 미제정, 내용상 불합리한 사항 등 문제 사례가 다수 파악됨.

정비사항 유형	A도	B시
상위법 위반	25건 (6.1%)	47건 (12.0%)
법령 개정 사항 미반영	75건 (18.2%)	83건 (21.2%)
위임사항 미제정	15건 (3.6%)	6건 (1.5%)
내용 불합리	50건 (12.2%)	14건 (3.6%)
정비 필요 사항 합계	135건 (32.8%)	123건 (31.4%)

기존의 국내법과 FTA 규정의 비합치에 관하여 산업별 또는 개별 FTA 체결 · 발효시 부분적 · 산발적인 문제제기와 연구는 있었으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및 통일적 대안의 제시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FTA의 의의와 효과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경험을 바탕으로 법률-자치법규의 연관성에 관한 근본적인 사항들을 고려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시도는 필요하면서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FTA 활용 및 적용 대상인 정부와 자치단체의 법률-자치법규 담당자들에 대한 실무적인 규범개선의 필요성과 해석방향을 제안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나, 구체화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노력은 법리에 근거한 방향제시여야만 기존의 법질서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다. 즉, 이미 존재하는 법령에 대한 집중분석과 대안제시를 통해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모두에게 현실적인 필요성이 높은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FTA의 기본원리나 규정이 국내규범과 비합치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미리 예측하여 보완하지 못하면, 실제로 비합치되는 FTA 규정-국내법 사이에서 해석/적용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것이다. 규정 사이에 비합치되는 부분에 대한 예측 및 그 해결을 위해서는, 분야별로 FTA의 직접적 영향권에 있는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들에게 적용해야 할 규범들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FTA 활용에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보면, 중앙정부에 더하여 지방자치단체/기업 등도 편리하게 FTA라는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Global Standard의 범위 내에서 정합성 높은 국내규범의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때 FTA 시대의 경제원칙과 정책 방향을 고려한 각종 국내법령의 보완사항을 분야별로 도출하는 한편, 법이론적인 바탕을 근거로 하되 되도록 실무에서 요구하는 분야를 우선 파악하여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의 FTA 정책과 추세, 세계적인 경제규범 변화 방향까지 예측하면서 국내법과 특히 자치법규 등의 보완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FTA 및 국제경제법 일반과 국내법률/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기본방향을 Global Standard와 합치시킬 수 있는 법령개선책을 도출한다.

지금까지 체결된 FTA 규정과 기존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내법령이 비합치되는 부분을 탐색하고, 실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규정을 조사 및 분석하여, 향후 실무가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법개선 자료를 작성한다.

현실에서 즉시 적용/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령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FTA의 법리 전체를 관통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도 향후 연구기초가 되는 통일적/체계적인 연구결과를 마련한다.

FTA 협정의 운용 과정에서 제기될 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와 자치법규 선진화 확산을 위한 법적 지원에 사용할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이러한 기초자료는 향후 정부가 진행할 미래의 FTA 협상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FTA에 대한 일반론과 한국의 FTA

FTA 규정에 부합하기 위한 국내규범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FTA 일반론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본 장에서는 FTA의 개념 및 법적구조, 그리고 규범적 역할 등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한 후, 한국의 FTA 정책을 추진배경, 내용 및 구체적인 체결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제1절 지역주의와 FTA

Ⅰ. 지역주의의 의의

지역주의(Regionalism)라 함은 국가 간 지리적 인접성, 공통된 역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연관성과 같은 공통된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정 국가들이 무역에 관한 자유주의 및 무차별주의 원칙을 국지적으로 적용하려는 국제무역의 움직임을 말한다. 지역주의를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또는 지역무역체제(regional trading system)라고 부르기도 한다.[3)]

본래의 지역주의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WTO의 이념과 같은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비된다.[4)] 즉, 지역주의는 일정 지역 내의 국가들이 증가하는 상호의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경제적 공동체(regional economic community)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5)]

지역주의 차원에서 체결되는 모든 무역협정을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s, RTAs)이라고 하며, 지역무역협정은 지역주의를 구성하는 규범적 기초가 된다. 지역무역협정은 그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

---

3) 지역주의를 '지역화(regionalization)'라는 개념과 구분하여, 지역주의가 '정책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면서 지역화는 그 정책의 '결과'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역주의가 '경제적 흐름의 지역적 집중'이라고 하면서 지역화는 경제정책의 협력과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과정'이라는 견해도 있다[구갑우,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와 지역주의」, 『한국정치학회보』 35집 2호, 한국정치학회, 2001, 429면].

4) GATT, WTO 등과 같이 다수 국가들 사이의 무역관계를 규율하는 국제질서나 체제를 가리켜 흔히 다자주의(Multilateralism/Globalism), 다자간무역체제(Multilateral trading system) 또는 세계무역체제(World trading system) 등으로 부른다[고준성, 『자유무역협정의 법적 고찰』, 법무부, 2003, 5면]. 이에 대하여, 다자주의 대신 '보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35면].

5) 지역경제공동체는 경제통합(economic integration), 경제블록(economic bloc) 또는 무역블록(trade bloc), 지역협력(regional cooperation)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다[최승환, 『국제경제법』, 법영사, 2001, 867면].

으나, WTO의 근거규정인 GATT 제24조의 정의에 따르면 ‘체약국 사이에 체약국산 제품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제한적인 무역규정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서 제거되는 둘 이상의 지역협정’이다.[6] 지역주의는 지역무역협정을 법적인 기반으로 하여 성장하며, 현재 대부분의 WTO 회원국들은 대부분 적어도 하나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Ⅱ. 지역주의의 발전단계와 FTA

지역주의는 내부의 결속정도와 진행과정에 따라 몇 가지의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단계는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그 자체로서 하나의 지역주의 형태이다. 지역주의를 분류하는 기준은 견해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주의의 발전 단계별로 그 유형을 구분하여 살펴보면,[7]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관세동맹(Customs Union), 공동시장(Common Market), 경제동맹(Economic Union), 완전경제통합(Complete Economic)이라는 순서가 된다.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또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FTA)는 당사국(협정 체결국, 회원국 또는 역내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무역에 관하여는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면서, 비당사국(협정 비체결국, 비회원국 또는 역외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독자적인 무역정책과 규범을 그대로 유지하는 지역주의 초기형태이다. 제3국에 대한 무역정책과 규범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FTA는 당사국의 경제주권을 제한하는 별도의 의사결정기구나 법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FTA에서는 당사국들이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대해 독자적인 관세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무역굴절(trade deflection)현상이 발생한다. 즉, 비당사국들은 역외관세가 가장 낮은 FTA 체결국에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다시 동일한 FTA를 체결하고 있으나 높은 역외관세를 부과하는 다른 체결

6) 조 현, 「지역주의에 대한 한국외교의 대응」, 『외교』, 한국외교협회 62호, 2002, 65면.
7) 지역주의의 발전단계별 분류는 Balassa가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한 경제통합의 5단계로 나누었던 것이 대표적이다[Bela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rgration, George Allen & Unwin Ltd., London, 1961, pp. 2~3].

국으로 이 상품들을 재수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FTA 각 체결국의 관세정책 실시에는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국가별 관세정책상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FTA에서는 역내에 생산된 것임을 증명하는 원산지규정(Rules of Origin)과 같은 공동의 시장운영규칙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8)]

FTA는 1960년 형성된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으며, 1994년 출범한 NAFTA는 상당히 발전된 형태의 FTA이다. FTA는 현실적으로 체결 당사국 사이의 의견조율이 다른 지역무역협정에 비하여 용이하므로, 전 세계의 지역무역협정 중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형이다.

제2절 FTA의 일반론

I. FTA의 의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이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 등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FTA는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협정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FTA는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일반적인 FTA의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 이와 관련된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FTA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무역규범분야를 포괄한다. 이에 더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9)]

FTA의 범위가 확대되는 주된 원인은, 다자주의의 발전과 다자간 무역협상

---

8) 정재호, 『자유무역협정하의 최적 관세 및 관세 유예기간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1, 24~25면.

9) NAFTA는 관세철폐 및 세이프가드, 반덤핑·상계관세, 원산지규제, 투자, 서비스,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경쟁, 분쟁해결, 환경, 노동, 수량제한금지, 관세평가와 세관수속, 기준과 인증, 위생식물검역, 일반예외, 합동위원회, 인적이동 등을 포괄하여 그 대상 범위가 넓다.

으로 전반적인 관세수준이 이미 상당히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은 협상의 대상범위를 관세가 아닌 다른 분야로 영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10] 그러나 FTA가 반드시 모든 규범들을 포괄해야 할 필요는 없으며, 협정의 구체적인 범위는 당사국의 입장에 따라 달라진다.

FTA의 중심요소는 상품의 무역에 있어서 관세와 수량제한을 제거하고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내국민대우를 하는 것이다. 즉, 원산지규정,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조치, 보조금과 상계조치, 예외와 유보사항, 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분이 FTA 협정문의 핵심을 이룬다. 이러한 범위를 포함하는 FTA를 좁은 의미의 FTA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FTA에서 더 나아가 투자보장협정, 조세조약, 상호인증협정, 경제협력협정을 포함하거나 무역촉진·원활화를 위한 여러 조치[11]를 첨가하는 FTA도 있다. 이와 같이 FTA의 중심요소에 더하여 부수적인 협정이 포함되는 경우를 넓은 의미의 FTA라고 하며, 최근에 이러한 형태의 FTA가 증가하는 추세이다.[12]

Ⅱ. WTO의 출범과 FTA의 변화

WTO의 출범으로 인하여 FTA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났다. WTO 출범 이전의 전통적인 FTA의 목적은 단순한 관세인하 또는 무역의 확대에 있었다. 그러나 WTO의 규범들이 무역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면서, FTA는 관세제거 및 무역장벽완화와 같은 단순한 무역규범의 성격에서 벗어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 또는 국내산업의 구조조정 등 경제개혁의 수단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FTA의 대상 범위가 넓어진 것도 WTO 출범 이후의 현상이다. 다자주의가 GATT 체제에서 WTO 체제로 변화하면서, 다자주의 규범에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그 규율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FTA에 있어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각국은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무역장벽의

10) 김병섭, 「우리나라의 중장기 FTA추진 전략」,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25면.
11) 무역촉진과 원활화를 위한 조치에는 통관절차의 간소화, 정보의 공유, 데이터베이스의 정비, 인력·사회·문화의 교류 등이 있다.
12) 삼성경제연구소, 「아태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동향과 대응」, 『Issue Paper』, 2001. 2. 27, 3면.

철폐를 기본으로 하였던 기존 FTA의 틀에서 벗어나 투자, 노동, 환경, 경제협력 등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면서 FTA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시도하였고, 결국 각국이 처한 상황과 협정의 상대국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의 FTA가 출현하였다.

과거의 FTA는 유사한 경제발전단계의 국가 사이에 체결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이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낮추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WTO 체제의 출범 이후에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도 많은 FTA가 체결되었고,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국가들이나 서로 다른 지역주의에 속하는 국가들 사이에도 FTA가 체결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사이에 이루어지는 양자간 FTA가 기본적인 체결방식이었으나, 여러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삼자간 또는 사자간 이상의 FTA도 많아졌다.[13]

이와 같은 변화는 WTO 체제의 시작과 함께 나타난 각국의 FTA에 대한 시각이 변화한 것과 관계가 있다. 과거에는 FTA에 대하여 각국에서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지역주의의 부정적 측면이 부각되면서 지역간 무역마찰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그러나 WTO 출범 이후에는 FTA의 체결에 따른 무역자유화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부정적 효과보다 강조되었다. 각국과 WTO는 FTA를 통한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가 결국 다자주의적 차원의 무역자유화에도 기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Ⅲ. FTA의 유형

일반적으로 인접국가 사이에 관세 등의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확대하였던 초기 FTA에서 발전하여, 인접국이 아닌 국가 사이에서도 FTA가 체결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즉, 어느 국가가 경제적 상호보완성에 따라 인접국가 아닌 다른 지역협력체[14]에 속하는 국가와 FTA를 체결하거나 또는 지역협력체 자체와 FTA를 체결하는 경우도 나타난 것이다. 심지어는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도 등장하게 되었다. FTA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크게 세 가지

13) FTAA는 북미지역과 남미지역의 34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14) 여기에서 지역협력체란, 지역무역협정을 통하여 의사결정 및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권을 가지는 회원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을 위한 집단(bloc)을 의미한다.

로 구분할 수 있다.[15)]

<표 3> FTA의 유형

유 형	예	효 과
국가간 FTA(양자간·복수국간)	한-칠레 FTA(양자간) NAFTA(복수국간)	- 기존 시장의 확대 - 새로운 시장진출
국가-지역협력체 FTA	MERCOSUR-칠레 FTA	- 지역협력체로의 시장편입 - 새로운 시장 진출
지역협력체간 FTA	FTAA	- 대륙간 규모의 시장 확대 - 다자주의 수렴

첫째, 국가간 FTA는 양국 또는 복수국 사이에 FTA를 통하여 관세 등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각국의 이익을 도모한다. 이러한 경우가 FTA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다. FTA의 체결 당사국이 인접하거나 동일한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무역장벽의 제거로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상대국이 인접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협력체에 속하는 경우에는 FTA를 체결하는 주요한 목적이 상대국이 속한 지역협력체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간 FTA 중에서 한-칠레 FTA가 양국간 FTA의 대표적인 예이며, 복수국간 FTA의 형태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사이의 FTA인 NAFTA가 대표적이다.

둘째, 하나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의 체결이 가능하다. 만일 어느 지역협력체와 FTA를 체결한 국가가 그 지역협력체에 인접한 경우, FTA는 해당 국가가 협정을 체결하는 상대방 지역협력체에 편입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칠레는 MERCOSUR-칠레 FTA를 체결하여 MERCOSUR의 준회원국이 되었으며, 칠레와 MERCOSUR 사이에는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 멕시코-EU의 FTA와 같이 어느 국가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협력체가 FTA를 체결하는 경우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또는 협정을 체결한 지역협력체)가 상대방 지역협력체(또는 상대방 국가)에 경제적 진출을 위한 발판을

15) FTA의 유형을 당사국의 수가 2개국인 양자간 FTA(bilateral FTA), 당사국의 수가 3개국 내지 5개국 이하인 복수국가 사이의 FTA(plurilateral FTA), 그리고 당사국이 6개국 이상인 준다자간 FTA(quasi-multilateral FTA)로 나누는 견해도 있다[고준성, 앞의 책, 77면].

마련하는 것이다.

셋째, 국가 사이의 FTA나 국가와 지역협력체 사이의 FTA가 아니라 지역협력체 사이에도 FTA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FTA를 통해서 기존의 지역협력체가 보다 큰 규모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지역주의가 발전하여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MERCOSUR와 NAFTA 사이의 FTA인 FTAA, 그리고 MERCOSUR와 EU의 FTA 체결을 위한 논의는 이러한 현상을 반영한다.

Ⅳ. FTA의 경제적 효과

FTA의 경제적 효과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국내외에서 많은 논란이 있다. FTA의 경제적 효과는, FTA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성격에서 유래하기도 하고, 그것을 체결하거나 운용하는 목적 또는 과정에서 국가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1. 긍정적 효과

긍정적인 효과에는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가 대표적이다. 무역창출효과는, 이전에 소비되던 높은 가격의 국내 상품이 FTA 발효 이후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의 비교우위를 갖는 역내의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면서 무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결국 무역창출을 통해 비교우위상품의 생산과 수출이 증가하고, FTA 당사국 사이에 비교우위산업에 대한 특화가 이루어진다.[16]

FTA로 인한 무역장벽의 제거는 무역의 변동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FTA의 특혜적인 역내무역장벽의 제거는 FTA를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내시장에서 제외되는 역외국에 대하여 상대적인 무역장벽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FTA 이전에 효율적인 생산구조로 비교우위를 가진 역외국의 특정 상품이 있었다면, FTA의 체결은 기존 역외국의 그 상품이 역내로 수입되는 것을 방해한다. 무역전환효과는 역내무역장벽의 제거와 역외무역장벽의 유지로 인하

16) 생산측면에서는 역내산업의 효율성이 증가하고 소비측면에서는 저렴한 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긴다.

여 역외국의 상품이 상대적으로 역내상품으로 대체되어 역내무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말한다. FTA 체결 이전에는 역외국의 상품이 비교우위에 있었으나, 무역장벽으로 인하여 역내 상품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지게 된다.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는 산업구조, 경쟁성, 포괄범위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일반적으로 FTA에서는 무역창출효과가 무역전환효과를 능가한다.[17] 또한 몇 차례의 다자주의의 무역협상으로 역외국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관세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18] 무역전환효과는 점차 줄어들게 된다.

FTA로 인하여 단기간에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발생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규모의 경제 및 경쟁효과, 외국인 직접투자 및 산업재배치 등은 FTA로 인한 장기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이다. 특히 FTA와 관련된 국내규범의 변화에 따라서 사회의 변동과 안정화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이러한 효과들은 보다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2. 부정적 효과

FTA는 무역과 투자의 면에서 전반적으로 역내국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FTA로 국가경제 전체는 이익을 보더라도 업종과 산업분야에 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즉, FTA 자체가 당사국 사이의 무역자유화를 의미하므로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FTA에 따른 국내규범의 변화는 이러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또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와 작은 국가가 FTA를 체결하면 일종의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의 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영향력이 작은 국가는 FTA의 틀에 막혀 주변국에

---

17) 정인교,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200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7면.

18) 다자주의 무역협상(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이란 무역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다수의 국가들이 모여 진행하는 무역협상을 의미하며, '라운드(round)'라고 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자간 협상의 목적은 국제무역활동을 저해하고 있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의 요소를 제거·완화하여 무역을 확대하고 각 국가들의 경제성장과 국제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WTO 설립이전 GATT 체제에서의 다자주의 무역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까지 모두 여덟 차례 진행되었는데, GATT의 중요 목표가 관세의 인하였으므로 기본적인 논의를 관세 중심으로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관세수준은 점진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1964년의 케네디라운드는 평균 35%, 1973년의 동경라운드는 평균 33%, 1986년의 우루과이라운드에서도 평균 33%의 관세인하가 이루어졌다.

머무르면서 중심국에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19] 그러나 이와 같은 중심국과 주변국 현상은 오히려 적극적인 FTA의 체결로 극복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주변의 MERCOSUR 시장에 속하지 않으면서도 전 세계 많은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FTA를 추진하여, 자체적인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동시에 국내시장을 개방하여 자국 소비자들의 이익도 충족하고 있다. FTA에 따른 규범의 변화를 통해서 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주변국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무역전환효과가 크게 나타나면 자원의 비효율적인 분배와 소비자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역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 무역장벽은 역외국의 비교우위 상품이 역내에 수입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다자주의 차원에서 볼 때 비효율적인 경제가 운용되거나 무역자유화의 이익이 반감된다. 이에 더하여 단기적으로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약산업에 투입되었던 생산요소들이 다른 산업으로 이동하지 못할 경우에 실업문제와 높은 구조조정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FTA로 단기적인 문제가 커진다면, 협정의 이행에 있어서 자유화의 폭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FTA의 이행기간이나 유보사항을 설정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등의 무역구제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산업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20]

〈표 4〉 FTA의 경제적 효과

긍정적 효과	단기적 효과	· 역내무역의 확대 (무역창출효과와 무역전환효과)
	장기적 효과	· 규모의 경제 및 기업의 경쟁효과 · 외국인 직접투자의 확대 · 생산요소의 재배치 현상
부정적 효과	· 취약산업의 경쟁력 상실 · 중심국과 주변국(hub and spoke) 현상 발생가능 ·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와 소비자 손해 발생가능 · 실업문제와 높은 구조조정 비용 발생가능	

19) 주변국에 머무르는 작은 국가는 독자적인 FTA 정책의 추진이 어렵고, 중심국의 경제정책과 규범에 종속될 위험이 있다.
20) 정인교, 앞의 『FTA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50~51면.

제3절 FTA의 법적 구조

I. 법적 성격 및 근거

FTA는 무역장벽을 제거하고 무역을 확대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약속하는 것이므로, 국제법적 기본 단위인 국가가 체결하는 조약의 성격을 가진다. 물론 국가 이외에도 EU와 같이 지역협력체 자체가 FTA를 체결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결국은 FTA의 체결에 대하여 소속 국가가 권한을 부여하고 국내의 법적 절차를 통해서 효력이 나타나므로, 국가가 FTA를 체결하는 것과 효력 면에서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

FTA는 조약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국내법상의 절차를 통해서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국제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국제규범으로 작용한다.[21] FTA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한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필요한 국제규범적 근거로는, WTO 규범인 GATT 제24조 등이 있다. WTO 회원국들은 GATT 제24조와 같은 근거규범에 의하여 체결된 FTA가 해당 규범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당 FTA를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내법적인 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FTA를 체결하는 경우 협정의 서명권자는 국가원수이거나 국가원수의 전권을 위임받은 자이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FTA에 서명하는 경우에는 서명 후 협정 체결국의 국가원수가 FTA의 효력에 국가가 구속받겠다는 비준을 하여야 한다.[22] 또한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비준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23] 이와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체결된 FTA은 국내법적인 근거와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24] 미국

---

21) 조약은 협약(convention), 협정(agreement), 규약(convenant), 헌장(charter), 의정서(protocol) 등 여러 가지 이름을 통해서 체결되는데,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1969) 제2조 1항에 따르면,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조약의 성립요건은 조약당사자가 조약을 체결할 능력을 가질 것, 조약을 체결하는 대표자가 조약체결의 정당한 권한을 가질 것, 대표자 사이에 하자 없는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조약의 내용이 가능하고 적법할 것, 조약이 국내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절차에 따라 체결될 것 등이다.

22)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헌법 제73조].

23)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요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헌법 제60조 1항].

24)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헌법 제6조 1항].

이나 EU와 같이 FTA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 별도의 국내 입법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림 1〉 FTA의 체결과 발효에 관한 법적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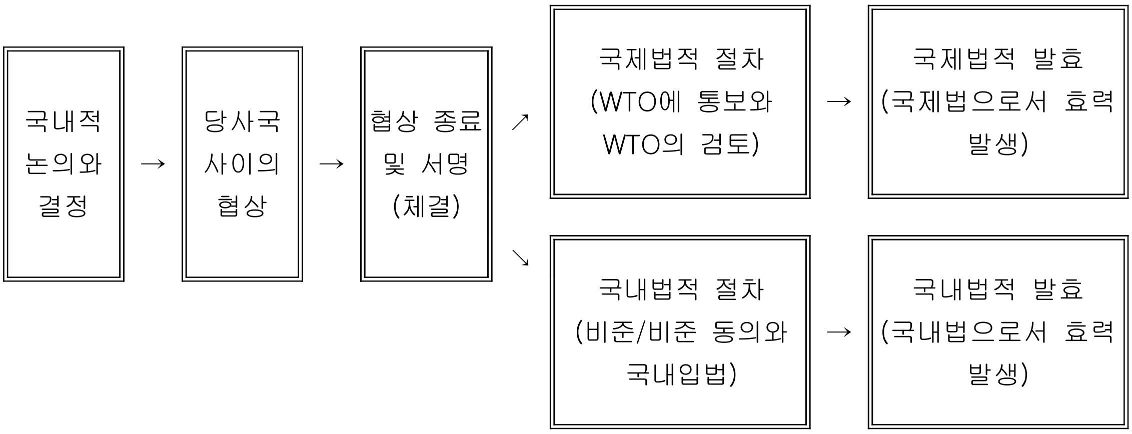

Ⅱ. 양허와 유보사항

각국이 FTA를 체결할 때에는, 당사국의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전면적인 무역장벽의 제거와 자유화가 이상적이다. 이에 관하여 GATT 제24조도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자유화의 대상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서, 당사국은 나름대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각국의 취약산업 보호노력에 대한 양보와 타협이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의 핵심이 된다.

실제로 FTA를 체결하는 당사국들이 모든 산업분야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부 분야에서는 기존의 무역장벽을 유지하거나 제한을 다소 완화하는 선에서 협상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각국은 협상에서 무역장벽의 제거와 자국 산업의 보호라는 두 가지 요소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당사국은 협상의 결과로 협정의 내용을 합의하는 양허(concession)를 하고, 양허안을 내용으로 하는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양허안의 일부로서 각국의 산업구조 또는 무역상황을 고려하여 협상의 대

상에서 제외시키거나 FTA의 효력발생을 미루어 놓은 사항을 유보사항이라 하고 이러한 사항을 규정한 조항을 유보조항이라 한다. 유보사항은 어느 상품 또는 서비스를 무역자유화 품목에서 제외하여 기존의 무역장벽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관세의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을 조절하여 신축성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유예기간을 두어 일정 시점까지 무역장벽을 유지하거나 다소 완화하였다가 재협상을 하기로 합의하기도 하고, 단계별로 점차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25)]

Ⅲ. FTA의 주요 규율 분야와 협정문의 규정내용

1. 상품무역

FTA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가 체결당사국 사이의 무역에 있어서 장벽을 제거 또는 축소하는 것이라면, 그중에서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은 상품무역에 관한 당사국 사이에 부과되는 관세의 제거이다. 대다수 국가들의 무역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상품의 국경간 무역이기 때문이다.

많은 FTA는 협정문의 초반에 관세의 제거와 축소, 그에 대한 조건과 관련 사항들을 명시하는 규정들을 마련한다. 각각의 FTA는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들의 경제상황과 국민정서, 당사국 사이 또는 제3국과의 관계에 따라서 상품무역의 관세제거 범위와 한계, 조건들이 차이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협정문에 규정되는 내용에도 다소의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은 상품무역의 관세축소에 대하여 FTA의 규정이 마련되면, 그러한 규정이 직접 해당국을 구속하는 국내규범으로 작동하거나, 당사국이 같은 취지의 내용을 담는 개별적인 국내 관세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관세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으로 해당 FTA에 따라 상대국과의 무역에만 특별히 적용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25) 하나의 FTA에서도 여러 가지 형태의 유보사항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으므로, 협상을 통한 신축적인 무역규제가 가능하다.

2. 원산지규정

FTA의 원산지규정은, 어느 정도의 공정을 수행해야 FTA의 특혜를 부여할 것인지 결정하는 기준이다. 실제로 원산지규정은 FTA의 특혜에 편승하려는 제3국의 시도를 배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산지규정은 FTA 체결국 사이의 역내무역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역외무역에 있어서 분쟁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에 있어서도 주요한 쟁점사항이 된다.

FTA의 원산지규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무역굴절현상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FTA에서 원산지규정이 없다면, 역외국들은 협정의 당사국 중에서 관세율이 가장 낮은 국가를 통해서 역내시장에 진출하여 다른 당사국으로 상품을 재판매할 것이다. 따라서 FTA 당사국들 중에서 가장 낮은 관세장벽을 보유한 국가의 관세가 역외국에 대한 해당 FTA 전체의 실질적인 대외관세로 기능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하기 위해 유용한 것이 원산지규정이다.

<그림 2> 무역굴절현상과 FTA 원산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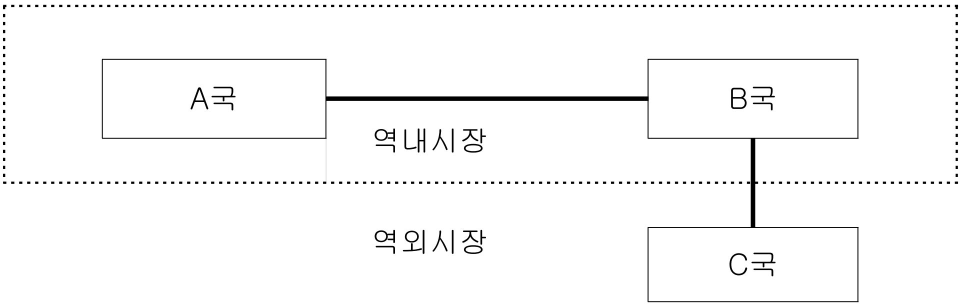

예를 들어, A국과 B국 사이에 FTA 체결로 역내시장이 형성되고 A국보다 B국의 대외무역장벽이 낮으면, 역외국인 C국의 상품이 B국을 통해서 A국으로 수입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를 통하여 A · B국이 공유하는 원산지규정은 A국으로 수입된 C국 상품에 대하여 역내국인 B국의 상품이 아니라고 판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는 FTA 특혜규정이 아닌 A국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일반적인 대외무역규범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3. 서비스무역

무역의 수준이 발전하고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서비스무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비스무역은 상품무역 분야와 다르게 그 대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만큼 규제방법도 다양하다. WTO 규범이 서비스분야에 관한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마련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서비스무역의 복잡한 상황을 모두 대처하기에는 세밀함이 부족하다. 따라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다자주의 규범의 규제가 완벽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다자주의 규범의 효과적이지 못한 규율 때문에, FTA 등 지역무역협정의 서비스무역 관련 규범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FTA의 서비스무역 관련 규정들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만큼 FTA를 체결하는 국가들 사이의 특수성이 협정문에도 많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FTA의 서비스무역 관련 규정들이 일반적으로 명시하는 내용들은, 규율범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원칙, WTO 등 다자주의 체제의 서비스협정들과의 관계, 제한조치 등에 관한 것들이다.

4. 투 자

투자 분야는 최근에 체결되는 FTA 협정문에서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EFTA와 같이 별도의 협정으로 체결되어 FTA에 부속되는 예도 있다. 이것은 투자분야가 무역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전제조건이 되고 각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외국자본이 투입되거나 다시 빠져나가는 상황들이 국가경제에는 상당한 부담이 되기도 하며, 각국 정부가 규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FTA에 나타나는 투자분야의 규정들은, 주로 투자유치에 관한 협력, 송금, 외환지급에 관한 긴급제한조치, 투명성, 법원의 판결, 분쟁의 해결, 국가와 투자자간의 소송 등이다. FTA의 투자관련 규정 내용에 당사국의 관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될 것이다. 즉, 당사국들의 경제가 투자에 많은 영향을 받는 FTA에서는, 당사국 사이의 투자에 관한 규정들이 보다 세밀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아시아 및 남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심각하게 발생하였던 외환위기와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 나타나는 금융위기 상황 이후, 여러 FTA에 투자관련 규정이 보다 세밀해지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금융 및 투자관련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거나 투자를 유치하려는 등 이해관계가 크게 작용하는 국가일수록, FTA에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내용을 자세하게 규정하려는 경향이 있다.

5. 분쟁의 해결

FTA은 공통적으로 당사국 사이의 무역분쟁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FTA 자체가 각종 무역분쟁의 주요 대상인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보조금, 서비스, 투자, 지적재산권, 통관절차, 기술장벽, 위생 및 검역 등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분쟁의 발생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FTA도 있다. 예를 들어,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ANCERTA와 칠레-캐나다 FTA 등은 반덤핑조치를 상호 배제하기로 하였으므로, 당사국 사이의 반덤핑조치에 관한 분쟁이 인정되지 않는다.

FTA의 분쟁해결절차는 각각의 협정마다 큰 차이가 있으나, 일부 FTA은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이를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하거나 절차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FTA을 체결한 국가 사이에는 FTA에 근거한 분쟁해결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하므로, WTO를 통한 분쟁해결보다 비교적 단기간에 분쟁을 마무리할 여지가 있다.

6. 기타 규율분야

FTA는 기타 분야들을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기타 분야들의 내용과 범위 등은 FTA 당사국 사이의 관심정도와 상황들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FTA는 노동, 환경 등의 분야와 무역을 연계하는 경우가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하다. 러시아 또는 중국의 FTA를 보면, 안보와 에너지에 관해서 세밀한 규정들을 두는

경우가 많다. 이밖에, SAFTA 등 인도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FTA는 경제적 협력에 따른 경제발전의 추구, 빈곤 퇴치, 직업교육 등을 강조하는 규정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한국의 FTA는 한반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남북한 경제협력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특례규정을 마련하기도 한다.

제4절 FTA의 규범적 역할

I. 국제경제규범

국제무역에 관하여 FTA와 다자주의 규범이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FTA는 다자주의 규범에 긍정적일 수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FTA는 체결국 사이의 관세 등 무역장벽의 축소로 역내무역을 증가시켜 당사국이 안정적인 무역시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당사국들은 FTA라는 규범을 공유하여 역내무역을 규율한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FTA의 역외국에게는 상대적으로 차별적인 무역장벽이 된다. FTA를 통하여 협정의 체결국들은 역내무역을 확대하면서 역외국에게는 기존의 관세 등 무역장벽을 유지하기 때문에, 역외국의 시장접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협정의 당사국 사이에도 대외관세의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무역굴절현상이 심각해질 가능성도 있다. FTA가 역외국에 대한 배타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가마다 상이한 무역기준을 제시하게 하므로, FTA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은 FTA가 다자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기 보다는 차별적 지역주의를 공고히 하고 범세계적 자유무역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26)]

역내국 사이의 무역확대를 위한다는 FTA가 역외국의 시장접근에 있어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시장접근을 원하는 역외국에게 FTA를 체결하도록 자극하는 동기를 부여하여, 결국은 더 많은 FTA가

---

26) 삼성경제연구소, 「FTA 시대의 개막-체결 임박한 한·칠레 협정의 과제」, 『CEO Information』, 2002. 10. 23, 7면.

체결되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다자주의 체제의 규범은 다수의 국가가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국이 많은 반면에 구체적인 규범력이 FTA와 같은 지역무역협정에 비해서 약하다. FTA는 협정의 당사국만을 강력하게 구속하면서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규율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자주의 규범과 FTA의 규범성은 그 차이점으로 인하여 국제경제규범으로서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그림 3〉 다자주의 규범과 FTA의 중첩적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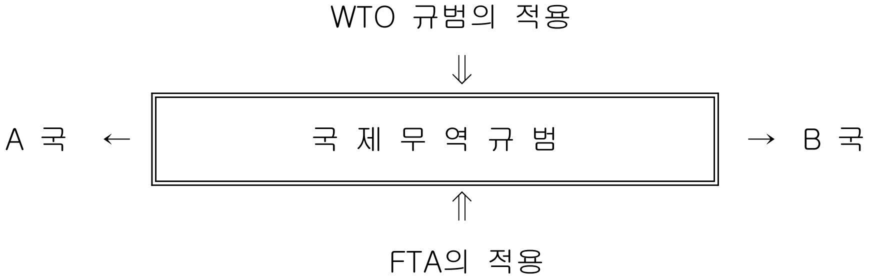

FTA 규범이 다자주의 규범과 조화되어 FTA의 배타성은 줄이면서도 무역규범성은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원활한 조화를 통해 국제거래의 안정적 규제와 무역촉진이 가능해질 것이다. 또한 다국간 FTA나 국가간 연쇄적인 FTA의 체결은, 다자주의가 지향하는 국제적 표준(Global Standard)을 제시할 수 있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27]

Ⅱ. 국내경제규범

1. 무역ㆍ경제관련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

FTA로 마련된 무역규범과 기준은 국제경제규범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국내규범으로서 일종의 경제적 자원이 된다. FTA를 체결하면 당사국들은 양허

27) 지역무역협정이 다자주의를 보완하고 지역주의와 다자주의가 조화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 FTA 체결의 도미노 현상이 지역주의가 다자주의로 수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된 무역분야에 있어서 규범을 공유하므로, 당사국들 사이에는 동일한 기준을 통해서 무역활동이 이루어지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FTA가 제시하는 해결방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FTA로 무역과 관련된 규범체계를 공유하는 것이 무역의 확대와 이익창출을 가져온다면, FTA를 체결한 국가에게는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을 구축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을 마련하는 것이다.[28]

FTA는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이다. 어느 국가가 다양한 국가들과 많은 FTA를 체결하고 있다면, 그 국가는 무역의 확대를 가능하게 할 법적 기반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이와 같은 법적 기반을 잘 운용하여 무역과 국가경제에 있어서 발전을 얻을 수 있으면 산업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림 4> FTA 체결의 '산업기반시설 확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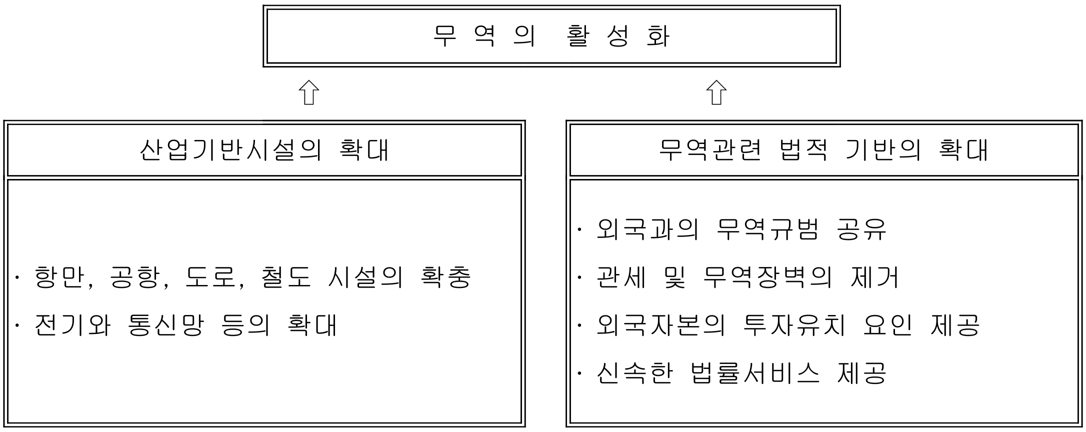

특히 이 기능은 국내법의 개선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의 개선방법을 마련한 국가는 규범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은 안정된 국내규범을 보유한 상태가 된다. 이것은 다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법적 차원의 견고한 바탕을 마련해주는 동시에, 무역을 촉진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관련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28) 국가의 산업기반시설(Infrastructure)은 국가경제를 발전시키고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근간을 의미한다. FTA으로 얻어진 법률적 기반이 무역을 확대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기반시설과 같은 역할을 할 경우에는 양자를 비슷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수 있게 한다. FTA는 관세, 보조금, 원산지, 검역, 분쟁해결 등 직접적인 관련분야 이외에도 서비스, 기술협력, 구조조정, 투자, 노동, 사회보장, 기업, 환경 등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사국이 FTA에 합치하는 수준으로 국내법체계 전반에 걸쳐서 관련 법규를 정비하도록 촉진한다.[29)]

개발도상국이나 폐쇄적인 무역체계를 보유한 국가는 FTA를 통하여 국제경제의 흐름을 따라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국가들에게는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국내법의 개선작업이 다른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다자주의 협상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30)]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경제규범에 적응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국가는 선진국 등과 FTA를 체결하거나 국제경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많은 '훈련'이 필요하며, 무역량이 적거나 보완성이 약한 국가 사이에 FTA가 체결되는 것은 무역에 관한 공동의 규범을 확보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비교적 위험부담이 적은 '훈련소'를 얻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한다.[31)] 넓은 의미에서는 이점도 일종의 법률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2. FTA의 국내법적 효력

우리나라와 같이 조약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 별도의 입법을 요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서명·비준되고 의회의 동의를 얻은 FTA가 국내법의 법원(source of law)으로서 직접 효력을 가진다. 국내 재판에서 FTA가 사안의 전제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FTA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 있고, 기존의 국내법이 제시하는 기준과 FTA의 체결로 인하여 생겨난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법과 FTA 사이에 특별법 ·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FTA의 규범 기준이 선택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32)]

---

29) 우리나라의 FTA 체결에 따른 수차례의 관련 국내법의 제정과 개정에서도 이러한 예를 찾을 수 있다.
30) 다자주의 협상을 아무런 준비나 경험 없이 시작한다는 것은 국가의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것이다. 지역주의 내에서, 특히 FTA을 통해서 이런 경험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31)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한국과 칠레의 FTA도 다른 FTA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나 다자주의 차원의 협상과 같은 국제적 경제협상에서 우리나라가 협상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
32) 대법원의 판례도, 조약은 원칙적으로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별도의 입법조치를 하지 않고도 국내법으로서 직접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관세 등의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GATT의 직접적용을 인정하였다(1992. 7. 14, 대판 91누10763; 1998. 8. 21, 97누13115 사건 참고).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여 FTA의 내용이 국내의 사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즉, FTA가 직접적인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법이 보완되지 아니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내용이 지나치게 일반적이거나 모호하여 집행력을 부여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제조약과 상치된다는 것만으로 관련 국내법이 개정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효력을 상실하거나 협정에 의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중요한 FTA의 이행을 위해서는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이 제정하는 등 법령 정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미 FTA 체결 이후 일부 국내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불가피하게 된 것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알 수 있다. 결국 FTA가 국내법상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든 그렇지 않든, FTA를 체결한 당사국은 그 협정에 합치하는 국내법적 기반을 충분히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FTA들이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신속성과 완결성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은 국내분쟁해결방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또한 중재와 조정과 같은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FTA가 시도하는 다양한 해결방법의 일부로 도입되는 경우에는, 협정 당사국의 중재법을 비롯하여 국내법상 재판이외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을 규율하는 법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다.

제5절 한국의 FTA 정책

Ⅰ. FTA 추진 배경

한국은 오랫동안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적 국제무역질서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유지하였다.[33] 그러나 FTA 체결을 비롯한 전 세계적

33) 즉, 1996년 WTO 싱가포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WTO의 지역주의 관련 규범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자유무역협정에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인 지역주의 확대로 인한 상대적인 무역차별을 받게 되었다. 역외국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대외관세율과 비관세 무역장벽은 국내 기업들의 시장접근과 확대를 어렵게 하였고, WTO 규범을 통한 역외차별적 요소의 제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지역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향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점차 늘었다.

정부는 변화하는 무역현실에 대처하고 외환위기의 가능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FTA 체결을 통한 개방정책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FTA가 다양한 무역 분야에서 WTO 보다 발전된 규범형태를 포함하므로, 개방정책에 수용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WTO 역시 GATT 제24조 등을 통하여 FTA 체결 등이 세계무역자유화에 기여한다고 인정한 점도 한국의 FTA 정책 추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구조의 취약성을 극복하여 안정적인 무역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내 기업들의 세계시장 참여에 적극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정부는 FTA가 이러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비교적 좋은 수단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34)]

Ⅱ. FTA 추진과 전략

정부가 공식적으로 FTA 정책을 추진하기로 결의한 것은, 1998년 11월 5일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였다. 위원회에서는 국내산업과의 상호보완성, 해당지역에서의 비중, FTA의 체결의사 등을 감안하여 칠레와의 FTA 협상을 우선 시작하기로 의결하였다. 칠레와의 무역이 상호보완적이고 칠레가 중남미 각국과 FTA을 체결하고 있으므로, 칠레를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높게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농수산 분야의 취약품목은 FTA의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간 유예기간을 설정하기로 기본방향을 정하였다.

한편 칠레와의 FTA를 진행하면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무역국들과

34)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FTA에 관한 법적 분석과 대응』, 인텔에듀케이션, 2004, 155~156면.

의 FTA 체결타당성을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협상의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정부는 FTA 정책을 진행하는 FTA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보다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여 FTA 정책을 진행하였다.

정부의 FTA 전략은 첫째, 동시다발적인 추진으로 FTA 체결진도를 단기간에 만회하여 우리 기업들의 기회비용을 최소화하고, 각 FTA마다 나타나는 서로 다른 효과들을 상호 상쇄·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경제의 선진화와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거대·선진 경제권과의 FTA를 지향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흥유망시장과의 FTA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FTA 내용에 있어 상품분야 뿐만 아니라,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이고, WTO plus적인 FTA를 지향하는 것이다.[35] 넷째, 체계적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FTA를 추진하는 것이다.[36]

Ⅲ. FTA 체결 현황

정부가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8건(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인도, EU, 페루, 미국) 45개국과의 FTA가 체결되어 발효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외에도 정부는 캐나다, 중국, 멕시코 등 각 대륙별 주요 시장과의 FTA 추진을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FTA 체결 및 협상결과와 그 의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5> 한국의 FTA 추진 현황

진행단계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발효 (8건,45개국)	칠레	99.12월 협상 개시, 03.2월 서명, 04.4월 발효	최초의 FTA,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

35) 또한 WTO의 상품과 서비스 관련 규정에 일치하는 높은 수준의 FTA 추진을 지향함으로써, WTO 규범을 보완하고 FTA를 통해 국내제도의 개선 및 선진화를 도모한다.
36) http://www.fta.go.kr/fta_korea/policy.php

	싱가포르	04.1월 협상 개시, 05.8월 서명, 06.3월 발효	ASEAN 시장의 교두보
	EFTA (4개국)	05.1월 협상 개시, 05.12월 서명, 06.9월 발효	유럽시장 교두보
	ASEAN (10개국)	05.2월 협상 개시, 06.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6월 발효, 07.11월 서비스협정 서명, 09.5월 발효,09.6월 투자협정 서명, 09.9월 발효	우리의 제2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인도	06.3월 협상 개시, 09.8월 서명, 10.1월 발효	BRICs국가, 거대시장
	EU	07.5월 협상 출범, 09.7월 협상 실질 타결, 09.10.15 가서명, 10.10.6 서명, 11.7.1 잠정 발효	세계 최대경제권 (GDP기준)
	페루	09.3월 협상 개시, 10.8월 협상 타결, 10.11.15 가서명, 11.3.21 서명, 11.8.1 발효	자원부국, 중남미 진출 교두보
	미국	06.6월 협상 개시, 07.6월 협정 서명, 10.12월 추가 협상 타결, 11.10.22 "한·미 FTA 이행법" 미 의회 상·하원 통과, 11.11.22 비준동의안 및 14개 부수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3.15 발효	거대 선진경제권
타결 (2건, 2개국)	터키	08.6월~09.5월 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10.4월, 7월, 11.3월, 12.3월), 12.3.26 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 가서명	유럽·중앙아 진출 교두보
	콜롬비아	09.3월~9월 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 공식협상 개최(09.12월, 10.3월, 6월, 10월, 11.10월, 12.4월)	자원부국, 중남미 신흥시장
협상진행 (8건,13개국)	캐나다	05.7월 협상 개시, 08.3월 제13차 협상 개최	북미 선진 시장
	GCC (6개국)	07.11월 사전협의 개최, 총 3차례 공식협상 개최(08.7월, 09.3월, 7월)	자원부국, 중동 국가와의 최초 FTA, 우리의 제3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멕시코	07.12월 기존의 SECA를 FTA로 격상하여 협상 재개,08.6월 제2차 협상 개최	북중미 시장 교두보
	호주	07.5월~08.4월 민간공동연구, 총 5차례 공식협상 개최(09.5월, 9월, 12월, 10.3월, 5월)	자원 부국 및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뉴질랜드	07.2월~08.3월 민간공동연구, 총 4차례 공식협상 개최(09.6월, 9월, 12월, 10.5월)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베트남	11.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4월 공청회 개최	우리의 제6위 투자대상국 (2011년 기준)
	인도네시아	11.10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 12.3.28 한·인니 CEPA 협상개시 선언	ASEAN 회원국중 우리의 최대 교역국 (2011년 기준)
	중국	07.3월~10.5월 산관학 공동연구, 10.9월~ 민감성 처리방안 등에 관한 사전 실무협의,12.5.2 협상개시 선언, 12.5.14 제1차 협상 개최	우리의 제1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협상준비 또는 공동연구 (7건,14개국)	일본	03.12월 협상개시, 04.11월 6차 협상후 중단,08~11년 협상 재개 환경조성을 위한 실무협의 총 6차례 개최	우리의 제4위 교역대상 (2011년 기준)
	한중일	03~09년 민간공동연구, 총 7차례 산관학 공동연구 회의 개최(10.5월, 9월, 12월, 11.3월, 6월, 8월, 12월), 11.12월 산관학 공동연구 종료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MERCOSUR (4개국)	05.5월~06.12월 정부간 공동연구(07.10월 연구보고서 채택),09.7월 무역협정(TA) 추진 협의를 위한 공동협의체 설립 MOU 체결	BRICs국가, 자원부국
	이스라엘	09.8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10.8월 종료	서부 중동지역

			거점시장
	몽골	08.10월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자원부국
	중미 (5개국)	10.10월 공동연구 개시, 11.4월 공동연구 보고서 완료 (*중미5개국: 파나마,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말레이시아	11.5월 한·말레이시아 FTA 타당성연구 개시,12.4월 타당성연구 중간점검회의 개최	한-ASEAN FTA Upgrade, 자원부국

전체적으로 보면, 200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인 FTA 정책이 추진되었고,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가들과의 FTA가 비교적 오랜 기간의 협상을 통해서 체결되었다. 협상기간이 장기화된 이유는 상대 국가들과의 무역상호보완성 검토, WTO 규범과의 조화 등에 관한 검토, 민감품목에 대한 협상의 장기화 등이 원인이었다. 한반도에 관한 정치적인 고려, 진행중인 협상을 고려한 다음 협상 상대국의 선택 등의 문제도 협상에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남미,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여러 지역 국가들과 FTA를 체결하였고, 현재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특히 호주, 인도네시아 등과의 FTA를 통해서 시장확대와 함께, 자원확보라는 측면도 고려되었다. 한편 중국과의 FTA 협상이나, 한국-일본-중국 3자간 FTA 등은 경제적 요소에 더하여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이라는 요소도 고려하는 면이 강하다. 한-ASEAN 사이에는 이미 FTA가 체결되어 있으나, ASEAN 회원국 개별적인 FTA를 진행하고 있는 점도 특이한 사항이다.

제3장 FTA 추진과 국내법체계

FTA가 국내법과의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FTA의 기본원칙에 합치하는 국내법체계의 대응이 필요하다. 국내법령을 개선하려는 과정에서 FTA라는 현상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FTA와 합치될 수 있도록 국내법을 개선하려면, 객관적 기준에 해당하는 FTA의 기본원칙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국내 규범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장에서는 FTA의 기본원칙을 정리한 후, FTA와 관련하여 이미 개정되었거나 개정되어야 하는 국내규범들을 분석한다.

제1절 FTA의 기본원칙

FTA시대 국내법령과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FTA의 기본원칙으로는 크게 6가지 원칙(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 시장접근제한금지, 현지주재 의무 부과금지, 이행요건 부과금지)이 있다. 이러한 기본원칙은 FTA상의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제도(Investor-State Dispute)를 통한 협정의무위반에 대한 문제제기 등, FTA와 관련된 국제분쟁에서 자주 나타나는 원칙이기도 하다.

<표 6> FTA 기본원칙

원 칙	내 용
최혜국대우 (Most-Favoured Nation treatment; MFN)	양국간 관계에서 지금까지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 중 최고의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원칙
내국민대우 (National Treatment; NT)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자국의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시장접근 제한 금지 (Market Access; MA)	외국인의 자국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원칙

현지주재 의무 부과금지 (Local Presence; LP)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 또는 기업 등을 설립·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Performance Requirement; PR)	생산품 중에서 일정한 비율 수출 강제, 국산품 사용 의무 부과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원칙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SMBD)	고위 경영층(Top managerial personnel)의 국적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

이와 같은 FTA의 기본원칙은, 특히 국내법과의 비합치 문제와 관련하여 큰 의미를 가진다. FTA라는 국제규범과 관련되는 국내규범이 조화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관련 국내규범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하여, 국내규범에 대한 FTA와의 조화가능성, 개선가능성, 개선방향 등을 도출할 수 있다.

물론 FTA의 기본원칙은 위에서 제시된 것에서 발전하여, 보다 자세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구체화되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국내규범을 평가하되, 기본원칙의 발전된 내용도 이러한 규범평가의 지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제2절 FTA 체결과 국내법

Ⅰ. 법령정비의 요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 정책이 한창이던 2007년 무렵에 FTA와 국

내규범에 대한 관계를 평가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FTA 협정과 국내법 체계의 비합치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내법규의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국내법규와 FTA간 비합치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사회전반의 요구가 높아졌다. 특히, 2007년 1월에는 열린우리당과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조사를 바탕으로 한-미 FTA와 비합치 가능성이 높은 국내 법률에 대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표 7> 한ㆍ미FTA와 비합치하는 국내 법률 조사 결과 발표(2007.1.26.)

분야	분과	쟁점 수	비합치법률 수
상품	상품무역	3	2
	농업	5	7
	섬유	6	3
	자동차	2	6
	원산지/통관	2	7
	위생검역	5	6
	기술장벽	4	3
	의약품 기기	2	2
투자	투자	8	29
서비스	서비스	38	52
	금융서비스	16	27
기타	통신	11	9
	전자상거래	8	10
	경쟁	7	19
	정부조달	2	3
	지적재산권	22	9
	노동	5	3
	환경	1	1
	총칙	1	1

※ 중복 제외 총 169개 법률안 (헌법 포함)

당시 이러한 의견이 반영되어, FTA 정책과 합치될 수 있는 국내법 개선 작업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국내법 개선 작업은, FTA의 원칙을 국내법에 확실히 적용하고, 이를 위해서 개선되어야 할 국내법을 조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 개선이 시급한 기존의 법률에 대한 내용과 새롭게 제정되어야 하는 법률이 제안되었으며, 정부의 관련 부처도 각각 다양한 개선 노력을 시도하였다.

Ⅱ. 법개선 의무에 대한 예외-유보사항

FTA의 체결로 인하여 국내법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예외가 있다. FTA의 체결 당사국들은 일반적으로 체결 이전의 국내법질서에 대한 파괴를 막기 위하여, 기존의 국내규범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허용하고 인정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을 유보조항이라고 하며, 이러한 유보조항의 존재는 FTA 체결에 따른 기존 국내법질서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기존 질서의 단계적 변화를 부드럽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아래에서는 한-미 FTA에 나타난 유보조항들의 일반적 내용들을 살펴본다. 한-미 FTA에서 양국은 서비스/투자/금융서비스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유보 목록을 부속서Ⅰ·Ⅱ·Ⅲ에 담았으며, 우리나라는 총 91개의 포괄적 유보(현재유보 47개, 미래유보 44개)를, 미국은 총 18개의 포괄적 유보(현재유보 12개, 미래유보 6개)를 지정하였다.

1. 투자 관련 주요 유보

한-미 FTA에서는, 국내의 공공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내국민대우 및 이행요건 부과금지 의무에 반하는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는 유보를 부속서에 기재하여 이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였다. 한국의 유보사항은 다음과 같다.

한·미FTA 부속서Ⅱ(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11.3조) 이행요건(제11.8조)
기존의 조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8380호, 2007.4.11.) 동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19826호, 2007.1.5)
유보내용	투자
	1. 대한민국은 투자의 설립 또는 인수와 관련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제4조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제5조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할 권한을 유보한다. 다만, 대한민국은 즉시 미합중국에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였다는 서면통지를 하고, 그러한 조치는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2007),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2007) 및 그 밖의 적용가능한 법에 규정된 절차적 요건에 따라 적용된다. 나. 그 투자가 사회의 근본적 이익에 대하여 진정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채택되거나 유지된다. 다.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마.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비례한다. 2. 제11.16조제1항에 따른 중재에 제기될 수 있는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다음의 청구를 제11장(투자)의 제2절에 따른 중재에 제기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이 제1항에 따라 통지한 조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나. 청구인 또는 해당되는 경우 청구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인 대한민국 기업이 그 조치를 이유로 또는 그 조치로부터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다. 그러한 청구의 경우, 제11장 제2절이 준용되며,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 위반 또는 위반주장에 대한 제11

	장 제2절상의 모든 언급은 이 유보항목이 없었다면 제11장 제1절상의 의무위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될 그 조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그 조치가 제1항 가호 내지 마호에 열거된 모든 조건을 충족하였음을 중재 판정부가 만족하도록 입증한 경우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정이 내려질 수 없다. 3. 제1항에 언급된 조치가 제13장(금융서비스)의 적용대상인 한도에서 이 유보항목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정부권한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37]에 대해서 필요한 외국인투자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미래 유보를 기재하였다. 단,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하는 외국인 투자자 및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이러한 유보 적용을 제외하였다.

한・미FTA 부속서Ⅱ(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모든 분야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기존의 조치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8315호, 2007.3.29)
유보내용	투자
	대한민국은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그러한 조치는 제21장(투명성)의 규정에 따라 이행된다. 제13.9조(비합치 조치)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13.2조(내국민 대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은 과거 민간기업이었으나 기업구조조정 과정의 결

37)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 : 법집행, 교정서비스 등 정부가 비경쟁적, 비상업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

	과로 국가가 소유하게 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공기업에는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 또는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도 포함된다.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의 부속서 I 및 부속서 II상 약속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은 정부권한 행사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부 또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특급배달서비스의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인 한도에서 제11.3조 또는 제12.2조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문단은 대한민국이 공기업을 설립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13.9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유보항목은 제13.2조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비합치조치로 취급되지 아니한다.

2. 서비스 관련 주요 유보

미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가 국내에서 국제공법 및 미국법에 대한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며, 회계사 · 세무사의 경우도 유사하게 개방하였다. 다만, 이러한 자문은 미국법에 한정하며 국내법에 대한 자문은 국내 자격증의 취득이 필요하다. 법무서비스의 경우 3단계[38], 회계 · 세무 분야의 경우 2단계[39]로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 · 미FTA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전문직 서비스 · 법률 서비스
관련의무	시장접근(제12.4조)

38) • 1단계(발효시) : 미국법 및 국제공법자문 허용, 미국로펌의 사무소 개설 허용(09.9.26 외국법자문사법 발효를 통해 1단계 개방)
• 2단계(발효후 2년내) : 국내 로펌과의 업무제휴 허용
• 3단계(발효후 5년내) : 미국로펌과 국내로펌간 조인트벤처 사업체 설립 및 동 사업체의 국내변호사 고용 허용

39) • 1단계(발효시) : 미국회계 · 세무 자문 허용, 미국 회계 · 세무법인의 사무소 개설 허용
• 2단계(발효후 5년내) : 국내 회계 · 세무 법인에 대한 미국 회계사 · 세무사의 출자 허용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변호사법 제4조, 제7조, 제21조, 제34조, 제45조, 제58조의6, 제58조의22 및 제109조(법률 제8271호, 2007.1.26) 법무사법 제2조, 제3조 및 제14조 (법률 제7895호, 2006.3.24) 공증인법 제10조, 제16조 및 제17조(법률 제7428호, 2005.3.31)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만이 법률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 변호사만이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 조합을 개설할 수 있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은 이러한 유형의 어떠한 법적 실체에도 투자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사무소는 당해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개업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공증인의 사무소는 당해 공증인이 개업하는 지방검찰청의 관할구역 안에 두어야 한다. 이 유보항목은 부속서 II의 유보목록 중 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 분야에서 준수되는 약속을 조건으로 한다.

지상파, 위성방송, 케이블사업자(SO)의 인ㆍ허가제도, 외국인투자 지분 한도, 방송쿼터 등에 대해 현행 규제 수준을 유지하였다. 다만, 방송채널사용사업(PP; Program Provider)을 중심으로 일부 자유화를 약속하였다.

한ㆍ미FTA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 방송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시장접근(제12.4조) 현지주재(제12.5조)
조치	방송법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내지 제18조, 제48조, 그리고 제69조 내지 제71조(법률 제8301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57조(대통령령 제19806호, 2006.12.29)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법률 제6970호, 2003.8.21) 국내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방송위원회 고시 제2005-2호, 2005.1.22)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고시(방송위원회 고시 제2006-1호, 2006.3.29)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외국국민 또는 외국기업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인 대한민국 국민은 지상파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대표자(예를 들어 최고경영자, 회장 또는 유사한 최고선임임원)나 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모든 이사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 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대한민국 정부·지방정부 또는 대한민국의 인에 대해서만 부여되거나 보유될 수 있다.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허가를 통하여 부여되는 반면, 전송망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홈쇼핑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면허는 등록을 통하여 부여된다. 외국정부, 외국인 또는 의제외국인에게는 다음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 나. 합하여 위성방송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또는 다. 합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 또는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것이 협정 발효 후 3년 이내에 대한민국은 의제외국인에 대하여 종합편성・보도 또는 홈쇼핑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지 아니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지분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한다. 투명성 목적상, 방송사업자가 종교적이거나 선교적인 내용을 주로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방송법시행령 제3조의 "특수관계자" 포함)은 합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종합편성이나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제한은 대한민국 정부와 특별법에 따라 설립한 회사(예를 들어,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방송주식회사(MBC))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분기별로 전체 편성물 중 일정 비율 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80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 50, 그리고 다.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제외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경우 채널별로 매 분기 전체 방송시간의 100분의50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다음 분야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연간 전체 편성물 중 일정 비율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45 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5, 그리고 다. 음악: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최소한 약간의 음악 프로그램이라도 편성하는 경우, 채널별로 연간 전체 음악 방송시간의 100분의 60만큼 대한민국 콘텐츠를 편성하여야 한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업자가 최소한 조금이라도 애니메이션 또는 영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채널별로 적용되는 연간 분야별 대한민국 콘텐츠 편성비율을 다음의 비율 보다 더 큰 비율로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가. 애니메이션: 연간 전체 애니메이션 방송시간의 100분의 30, 그리고 나. 영화: 연간 전체 영화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종교 또는 교육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또는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별도의 콘텐츠 쿼터 요건이 적용된다.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는 콘텐츠 쿼터 요건이 적용된다. 이 협정 발효일 이전에, 대한민국은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분야별 외국 콘텐츠 분기별 전체 편성시간의 100분의 80 또는 그 이상이 1개 국가에서 제작된 외국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1개국 콘텐츠 한도라 한다). 이 유보항목의 목적상, 가. 종합편성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라 함은 보도·오락·드라마·영화·음악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말한다. 나. 의제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거나, 외국정부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인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다. 위성방송사업자는 외국에 등록된 위성의 설비를 이용 또는 임차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미디어간 교차소유 문제, 간접투자한도 문제, 이사 국적제한, 채널 구성과 운영, 만화총량제 · prime time quota · 제작비 쿼터 등에 대한 쿼터, 해외공동제작 관련 사항 등은 미래유보키로 하였다. 또한 외국방송 재송신에 대해서도 미래유보에 합의하였다.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지분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 49%를 유지하였다. 단, 협정발효 후 2년 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을 통한 간접투자는 100%까지 허용하기로 하였다. 스크린쿼터는 현행 73일을 현재유보로 합의하였다.

<table>
<tr><th colspan="2">한 · 미FTA 부속서 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th></tr>
<tr><td>분야</td><td>레크리에이션 · 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영화상영서비스</td></tr>
<tr><td>관련의무</td><td>이행요건(제11.8조)
시장접근(제12.4조)</td></tr>
<tr><td>조치</td><td>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7조, 및 제40조 (법률 제8280호, 2007.1.26.)
동법 시행령 제19조(대통령령 제19714호, 2006.10.26.)</td></tr>
<tr><td rowspan="2">유보내용</td><td>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td></tr>
<tr><td>대한민국 내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각 상영관에서 연간73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하여야 한다.</td></tr>
</table>

공교육(유 · 초 · 중 · 고 교육)의료 및 사회서비스, 수도 · 전기 · 가스 · 생활환경 서비스 등 공공성이 강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모든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하였다. 다만, 고등교육(대학교) 및 성인교육 분야의 경우, 현행 관련법령의 수준에서 개방하고, 원격교육의 경우 비학위 성인교육에 한하여만 진출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table>
<tr><th colspan="2">한 · 미FTA 부속서 II (대한민국의 유보목록)</th></tr>
<tr><td>분야</td><td>교육서비스 - 유아·초등·중등·고등 및 기타교육</td></tr>
<tr><td>관련의무</td><td>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td></tr>
<tr><td>유보내용</td><td>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td></tr>
</table>

	대한민국은 유아 · 초등 및 중등교육, 의료 · 보건관련 고등교육, 유아 · 초등 및 중등교원양성 고등교육, 법학전문대학원, 모든 교육 수준의 원격교육(학점, 졸업장 또는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성인 교육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리고 기타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해외용도를 위한 교육 테스팅의 운영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국내 교육정책에 따라 교육 테스팅을 선택하고 적용하거나, 학교 교육과정을 규제하는 대한민국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료분야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관계 법령상의 특례는 포괄 유보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한 · 미FTA 부속서 II(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사회서비스 - 보건의료서비스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최혜국 대우(제11.4조 및 제12.3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
유보내용	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
	대한민국은 보건의료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항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4.11.)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의료기관, 약국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와 그 법률에서 특정하고 있는 지리적 지역에 대한 원격의료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우대조치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발굴·평가·매매 등 문화유산 및 문화재의 보존·복구 관련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유보하였다.

<table>
<tr><th colspan="2">한 · 미FTA 부속서Ⅱ(대한민국의 유보목록)</th></tr>
<tr><td>분야</td><td>레크리에이션·문화 및 스포츠서비스 - 박물관 및 기타 문화서비스</td></tr>
<tr><td>관련의무</td><td>내국민 대우(제11.3조 및 제12.2조)
이행요건(제11.8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9조)
현지주재(제12.5조)</td></tr>
<tr><td rowspan="2">유보내용</td><td>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td></tr>
<tr><td>대한민국은 문화재의 발굴, 감정 또는 매매를 포함한 문화재의 보존 및 복원과 관련한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td></tr>
</table>

국민생활과 직결된 여객 육상운송(시내·시외 노선버스 및 택시)에 대해서는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추후 국가경제의 고도화에 따른 대중교통 체계의 구조개편 가능성에 대비하였다. 한편, 이미 국내법령상 대외개방된 통근·통학버스, 공항버스, 전세버스, 궤도·삭도(모노레일, 케이블카) 서비스에 대해서는 현재유보로 기재하여 추후 외국인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였다.

화물운송 분야의 경우에는 동 분야에 대한 정부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미래유보)하여 화물 운송시장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상황으로 환원시키기 위한 제반 조치를 지속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철도운송의 경우, 현행 자유화 수준을 현재유보하는 한편, 추후 TSR(시베리아횡단철도)/TCR(중국횡단철도) 등 대륙 철도운송망과의 연계에 대비한 미래 유보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table>
<tr><th colspan="2">한 · 미FTA 부속서Ⅱ(대한민국의 유보목록)</th></tr>
<tr><td>분야</td><td>운송서비스 - 철도 운송</td></tr>
<tr><td>관련의무</td><td>최혜국 대우(제11조.4조 및 제12.3조)</td></tr>
<tr><td rowspan="2">유보내용</td><td>국경간 서비스무역 및 투자</td></tr>
<tr><td>대한민국은 시행 중에 있거나 이 협정 발효일 후 서명되는 철도운송에 관한 양자 간 또는 다자간 국제협정에 따라 국가들에 대하여 차등 대우를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td></tr>
</table>

부동산 서비스의 경우,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부동산 중개·감정평가 분야는 현재유보 목록에 기재하여 현행 개방 수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는 한편, 여타 분야(개발·임대·관리·공급)에 대해서는 포괄 유보(미래유보)하였다.

건설·건축설계·각종 엔지니어링 서비스 및 수의 서비스의 경우, 이미 대외 개방되어 있는 현행 법령상 규정에 따라 사무실 구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 참여가 가능함을 상호 확인하였다.

시장접근(MA) 의무에 한해서 양측은 포지티브 방식으로 자유화를 추진하는데 합의하고, 양측 공히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시 제시한 수준까지 각각 양허범위를 상향 조정하였다.

해운의 경우, 미국측은 우리측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해운시장 분야를 미래유보하였고, 이에 우리측도 국제여객운송, 연안해운을 미래유보하였다. 다만, 선박수리업을 포함한 해운 관련 부수 서비스(항만내 선박하역·터미널 운영 등)에 대해서는 양국 공히 시장접근을 허용하였다.

어업 분야와 관련, 미국 영해·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의 조업 등 상업적 활동에 관하여는 『공동 수산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Ⅲ. FTA 협상과 체결 절차를 위한 국내법의 정비

1. FTA 추진・이행법의 제안

FTA 추진과 이행을 위한 통일적 법률의 제정에 관한 논의는 이미 정책의 구상단계부터 진행되었다. FTA를 체결하는 것이 국가적인 과제이고 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정치적ㆍ사회적 압력에 지나치게 영향을 받지 아니하면서 일관성 있게 FTA를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FTA 정책을 수행하는 이유와 대상국을 선정하는 기준, 경제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과 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일반적인 대책 등을 명확하게 할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논리였다.

현실적으로 FTA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전반적인 원칙과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여, FTA 정책의 지침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법적 토대 위에서 협정을 준비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이에 더하여, FTA 정책의 일관적인 '추진'과 효과적인 '이행'을 규정한 FTA 관련 일반적인 추진·이행법의 마련이 제안되었다. 이미 체결된 특정한 FTA의 이행만을 위한 특별법 속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40]

FTA를 추진하는 목적은 1) 무역의 자유화와 확대로 국민경제를 발전시키고, 2)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3) 국제무역을 통하여 재화의 올바른 분배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FTA 추진·이행법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면서 나아가 WTO규범과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결과도 반영되도록 기본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추진·이행법에는 정부가 올바른 FTA정책을 추진하고 체결된 FTA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특히 일관된 정책마련을 위한 정부내 관련부처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수인데, FTA의 영향과 문제점을 평가하고 연구하는 전문연구기관이나 위원회 등을 구성하거나 지원하는 원칙을 명문화할 필요도 있다.[41]

FTA 체결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산업의 피해와 보상이라는 문제들을 해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근거와 원칙 그리고 결정방법 등을 규정할 필요도 있다.[42] 보상에 대한 일반원칙을 가지고 있다면 중립성과 객관성의 확보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보상의 범위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이는 취약산업의 개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줄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43] 이러한 보상과 지원이 WTO 보조금 협정 등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하여 외국과의 무역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할 필요도 있다.[44]

끝으로 FTA 추진·이행법에는 FTA가 남북한 교류의 확대와 한반도의 평

40) 미국의 NAFTA 이행법이나 우리나라의 WTO 이행법은 향후 FTA의 확대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한 내용 등을 일부 포함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이미 체결된 특정한 협정을 이행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다. FTA 정책을 위한 추진·이행법의 성격과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고려하며, 독립적인 법률로 제정되어 FTA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이나 협정의 이행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41) 김봉철,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인텔에듀케이션, 2004

42) 보상과 지원의 법적 근거는 각각의 FTA를 추진하면서 구체적인 필요가 있을 때마다 법규를 제정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FTA 추진·이행법에서 일반적인 보상의 원칙과 내용의 결정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피해산업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각각의 상황에서 별도의 보상입법을 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밖에 없고, 형평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43) 정문수, "FTA 추진의 선결과제』, 무역구제 7호,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2002.7.5.~6면.

44) 이러한 내용은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 무역조정지원법 등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다.

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전제규정과 함께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45)을 명시하여,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게 되는 국가들이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협상에서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46)

FTA 추진 · 이행법은 FTA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원칙이나 협정의 이행을 위한 대책을 일반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관련 국내법규의 조화가 매우 중요하다. 즉, FTA 추진 · 이행법을 통해서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행에 관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된 분야의 법규를 보완하여 FTA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FTA와 관련되는 국내법은 매우 다양하고 그 수도 많겠지만, 주로 이미 개정이 이루어진 관세법과 산업피해구제법, 대외무역법 등 무역분야의 법규와 산업지원 또는 구조조정 법규들 이외에도, 투자 관련법규나 물류와 관련된 법규 등도 포함될 것이다.

2.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와 같은 논의 이후, 통상정책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국회의 역할 강화, 국회와 행정부 상호간의 역할 분담과 협조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통상협상추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체계적 보상체제 및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권한 및 역할 강화에 관한 연구' 47)가 정부차원에서 진행되었다.

이러한 논의는 정치권에서도 구체화되었고, 마침내 2011년 말 국회에서 통상절차법(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

45) 남북한의 경제교류는 순수한 내국간 거래와는 당연히 다르며, 내국간 거래와 외국과의 거래의 중간영역쯤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이 "무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외무역법 등 무역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4항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그에 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쉽게 알 수 있다[문준조, 『우리나라의 FTA 체결을 위한 체계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5. 11, 76면]

46)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교류를 민족내부의 특수거래로 간주하여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GATT 제1조에 명시된 최혜국대우 원칙의 적용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WTO 회원 4분의 3 다수결에 의한 의무면제를 받거나(WTO 설립협정 제9조 3항), 남북한 사이에 지역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남북한 사이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고 그것이 WTO의 규범 내에서 승인받기 위해서는 북한의 WTO 가입이 전제되어야 한다[Choi. Won-Mok, "East Asian FTA - Prospect and Conditions", 『한국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의의와 전망』, 2003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심포지엄, 2003. 5. 13, 18~20면]. 현재의 상황에서 이것을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남북간의 특별관계에 관하여 FTA 추진 · 이행법에서 선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47) 박창현, 『통상협상 과정에 있어서의 국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7월 18일 시행되었다. 이 법의 발효로 정부는 통상조약의 체결과 이행의 주요 단계마다 국회에 중요사항을 보고해야 하며, 협상이 종료된 후에는 이 조약이 국내경제, 국가재정, 국내 관련사업, 국내 고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포괄적인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이유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해와 참여 증진을 통하여 통상조약 체결의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통상협상을 추진하자는 것이었다. 궁극적으로는 통상조약의 이행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었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통상조약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정보의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며, 통상협상의 진행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제4조제1항). 정부는 국회의 요구에 의하여 진행 중인 통상협상 또는 서명이 완료된 통상조약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제5조제1항),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한 외교통상부장관은 발효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통상조약에 대하여 경제적 효과, 피해산업 국내대책의 실효성 및 개선방안 등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15조제1항).

한편, 정부는 통상조약상의 의무이행으로 인하여 특정 품목의 국내 피해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상조약의 개정 추진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제17조). 또한 통상정책 수립 및 통상협상 과정에서 외교통상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외경제 및 통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 구성된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두어야 한다(제21조).

Ⅲ. 이행입법의 제정

앞서 언급한 것처럼, FTA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별도의 국내입

법이 없이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와 같은 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입법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설득력을 가진다. 해외에서도 조약의 이행에 따른 필요조치를 적기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이행입법을 제정하는 관행이 정립되어 가는 상황이다.[48)]

국내에서도 FTA의 직접적용에 따른 법질서의 파괴를 막고, 기존의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FTA의 이행을 부드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이행입법이 다양하게 마련되었다. 특히 한-미 FTA를 추진하고 적용하려는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입법 노력이 많이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8> 한·미 FTA 이행법률 정비 현황

부 처	내 용
기획재정부	관세법(개정)
	세무사법(개정) * 발효후 5년내 추가개정 필요(2단계 개방: 국내세무법인 투자 허용)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개정)
	외국법자문사법(제정, 개정) * 발효후 5년내 추가개정 필요(3단계 개방: 합작사업체 설립 허용)
지식경제부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개정)
	대외무역법(개정)
방송통신 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개정) * 발효후 2년내 추가개정 필요(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 완화)
	전파법(개정) * 전기통신기본법 중 관련 내용 이관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법(개정)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개정)
	개별소비세법(개정)
행정안전부	지방세법(개정)

48) 정민정, 『한·미 FTA 이행법령 정비 현황』, "이슈와 논점", 국회입법조사처, 2011.

	행정절차법(개정)
문화체육부	저작권법(개정)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안 포함
지식경제부	우편법(개정) * 협정서명 후 5년 유예
	우체국연금 · 보험에 관한 법률(개정)
	특허법(개정)
	실용신안법(개정)
	디자인보호법(개정)
	상표법(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
보건복지부	약사법(개정)
공정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
방송통신 위원회	방송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개정)

이와 같이 한-미 FTA의 이행에 따라 정비된 법률들이 많이 있으나, 이행법률은 항상 변동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미 FTA의 발전과 다른 FTA 체결, 또는 WTO 규범의 변화 등 변수에 따라서 향후 Global Standard의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4장 FTA 체결에 따른 국내법체계에 대한 영향 - EU가 체결한 국제조약과 한-EU FTA 효력을 중심으로

FTA와 관련된 국내법의 개선작업은 해외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있다. 법체계의 차이가 있으나, EU의 공동통상정책에 따른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에 관한 법적 논의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본 장에서는 EU 회원국 내 또는 EU와 비회원국 간에 체결된 조약에 있어서의 국내법적 적용에 관한 기본원칙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한-EU FTA와 관련된 EU 회원국의 국내법적 효력 및 한국에의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제1절 EU 공동통상정책과 FTA의 발전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공동통상정책은 EU의 출범초기부터 회원국으로부터 독립하여 전적인 권한을 행사해온 분야이다. EU는 관세동맹으로 국제통상무대에서 하나의 단위로서 행동해야 하고 국제통상협정의 체결에도 일관된 의견을 제시해야하므로, 국제무대에서의 교섭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공동통상정책의 실시는 매우 절실하였다.

공동통상정책의 목적과 범위는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기능조약이라고도 함) 제206~207조를 법적 근거로 한다. 제206조는 공동통상정책의 목적을, 제207조는 수출신용 등 회원국 해외수출 지원 제도의 당위성, 공동통상정책의 범위, 위원회 및 이사회의 권한, 표결정족수, 자문위원회, 공동통상정책으로 인한 특정 회원국 불이익 발생시 처리원칙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다.[49)]

Ⅰ. EU 공동통상정책 일반[50)]

한-EU FTA는 EU의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 “CCP”)을

---

49) 이종서, “리스본조약과 공동통상정책: EU의 권한 변화를 중심으로”, EU연구 제29호, 2011, 34~35면.
50) 이하는 김대원, “EU FTA 접근방식과 한-EU FTA 평가-서비스와 지적재산권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경제법연구 제8호 제2권,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3~9면을 요약정리하였음.

통하여 이루어졌다. EU는 역사적으로 역내시장(internal market) 확대를 통한 관세동맹(Customs Union)에서 기원하는데, 유럽공동시장(Common Market: 현재 역내시장)의 형성이라는 EU의 경제적 지향점은 역외국과의 관계에 관한 정책과 관련된다. 따라서 공동통상정책은 EU의 경제적 핵심동력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51) EU의 기본원리 중 하나는 법의 지배(Rule of Law)이며,52) 공동통상정책 역시 법에 의해 규율된다. 특히 TFEU 제207조(구 EC 제133조)와 제218조(구 EC 제300조)가 주요 근거규정에 해당한다. 여러 차례의 개정과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의 판례법 발전을 통한 해석을 거친 TFEU 제207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53)

첫째,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ㆍ상업적 측면의 지적재산권 및 해외직접투자(FDI)까지 EU의 전속관할범위(exclusive competence)이다. 둘째, 통상협정의 협상개시와 체결에 관한 각료이사회(Council)결정이 원칙적으로 가중다수결제(qualified majority voting)로 적용되면서 예외적으로 제207조 4항에 규정된 경우에는 만장일치제(unanimity)에 의한다.54) 셋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가 리스본조약에 의해 공동통상정책의 기본골격에 관한 공동결정(co-decision)의 주체가 되었다.55)

EU는 기본적으로 WTO 다자주의에 근거한 통상정책을 존중한다. 그러나 경쟁력강화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시장잠재력”(market potential)을 기준으로 신흥경제국가 또는 경제권과 FTA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의 FTA는 이러한 정책의 대표적인 반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EU는 FTA 추진에 있어서 무역장벽과 같은 EU의 수출조건, 시장에 미치는 영향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배려 등도 구체적으로 고려하고 있다.56)

---

51) European Commission,“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 SEC(2006) 1230, p.13.

52) TEU 제2조; 이전의 EC는 TEC 제281조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았지만 Lisbon조약 이전에는 EU에 법인격은 부여되지 않았다. Lisbon조약 후 EC는 EU로 통합되면서 EU는 TEU 제47조에 의해 법인격을 부여받았다.

53) R. Leal-Arcas,"Is EC Trade Policy up to Par?",Columbia Journal of European Law, Vol. 13, pp.369-370, 2007. 및 F. van den Berghe,"The EC's Common Commercial Policy Revisited: What Does Lisbon Add?", Global Trade and Customs Journal, Vol. 4, Issue 9, pp. 277-279, 2009 참조.

54) 한국의 경우를 보면, 1997년 발효된 Agreement on Co-operation and Mutual Administrative Assistance in Customs Matters와 2001년 발효된 EU와의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 on Trade and Co-operation) 그리고 2007년 이후 본격화된 FTA 협상 및 타결 등과 같은 점진적 과정을 거쳤다.

55) TFEU 제207조 2항 및 3항.

56) http://rtais.wto.org/UI/PublicSearchByMember.aspx에서 검색.

Ⅱ. EU의 공동통상정책의 설립과 발전[57)]

1. 공동통상정책의 수립 배경

EU가 탄생할 당시만 하더라도 성공적인 시장통합의 사례는 베네룩스(Benelux) 관세동맹이 대표적이었다. 1950년대 초반부터 관세동맹의 추진을 주장하는 프랑스 및 베네룩스 3국을 중심으로 한 대륙 국가들과 단순한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고집하는 영국을 비롯한 북유럽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되었다. 견해의 차이는 근본적으로 '경제주권' 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일 것인가라는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는다.[58)]

EU 설립 당사국(6개국)들은 초기에 '관세동맹' 을 계획했으나 시장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형태가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 으로 바뀌었다. 비록 석탄과 철강이라는 두 부문에 국한했지만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 1952)라는 부분적인 공동시장의 운영은 하나의 사례를 제공했다. 특히 1950년대는 유럽연방주의자들(European federalists)이 중요 유럽 대륙국가들 내에서 집권하던 시기였다.[59)] 고전적 개념인 관세동맹이 경제동맹으로 발전함에 따라 대외공동관세정책은 대외공동 '통상' 정책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었다.

2. 경제통합의 체계와 시장통합의 완성

현재까지 EU가 이루어 낸 경제통합의 상황은 부분적인 경제연방(partial economic federation)을 실현한 단계라고 요약할 수 있다. EU는 유럽통합과정에서 탄생한 '특수한(sui generis) 형태의 국가간 모임' 이라는 측면에서 다른 국제기구들과 차이가 있다. 유럽이 본격적으로 경제통합에 착수한 것은 로마조약(EEC, 1958) 이후부터이다. 이 조약은 일부 개정 및 보완되기는 했으나, 경제통합에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포괄조약(Treaty-cadre)이라고 불리는 이 조약은 일종의 헌법과도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그 후 채택

---

57) 이하 김세원, EU의 세계통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7~39면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58) 자유무역지역의 취지는 단순히 회원국간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데 있지만 관세동맹의 경우에는 회원국들이 역외에 대해 공동관세정책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개별 회원국은 관세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59) 유럽통합의 역사와 관련해서는 많은 문헌이 있다. Palmer(1968)는 3개 공동체(ECSC, EEC 및 EURATOM)의 역사를 잘 정리하고 있다.

된 개정조약들은 로마조약 이후 EU가 이룩한 업적들을 반영하는 한편, 회원국 사이의 합의를 토대로 새로운 통합의 추진방향을 담고 있다.

로마조약이 예정하는 경제통합의 체계를 관세동맹, 공동시장 및 경제동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통합은 관세동맹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음 단계로 역내 회원국간 노동, 자본 및 서비스의 자유이동을 취지로 하는 공동시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경제동맹의 특성인 공동정책의 취지는 각각 추구하는 고유의 목표 이외에도 역내시장의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시장왜곡(market distortions)을 제거하는 데 있다. 공동정책 중에서 공동통상정책, 공동농업정책 및 공동통화정책[60]은 EU가 회원국을 대신해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 단일공동정책의 예이다.

EU조약은 회원국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단순한 '협력(cooperation)', '조정(coordination)', '조화(harmonization)' 및 '접근(approximation)'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대부분의 경제정책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협력이 요구된다. 공동시장은 로마조약의 명문규정에 따라 단계별로 추진됐으나, 과도기간(1958 ~ 1969년)을 10여 년이나 경과한 1980년대 초에도 하나의 시장은 큰 과제였다. 이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방향을 위해 등장한 것이 실리주의적 접근이었다.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및 요소이동을 방해하는 실질적인 장벽들을 추려낸 후 1992년까지 사안별로 저해요인들을 제거하는 작업(EC-1992년 계획, 'Completing Internal Market')이 시작되었다. 이 계획은 회원국 내 철폐되어야 할 규제 및 보호정책의 대상과 회원국간 접근이나 통일해야 할 정책 및 제도를 구체화 하였다.

로마조약을 최초로 개정한 단일유럽법(SEA: Single European Act, 1987)의 중요한 취지 중 하나는 'EC-1992년 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는데 있었다. 이 계획에 따라 1991까지 EU는 공동시장을 이룩하면서, '역내시장(internal market)'이라는 공식적인 용어도 탄생했다. EU라는 포괄적인 공식명칭의 등장을 가져온 마스트리히트조약(Treaty of Maastricht)은 로마조약 이후의 상황을 반영하였다. 특히 이 조약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마지막 단계에 들어선 통화통합과 공동통화정책의 수립에 따르는 제도적 개편을 상세하게 담았다. 실물시장과 통화시장의 통합으로 경제통합은 성숙단계로 들어

60) 로마조약은 공동통상정책과 공동농업정책의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통화정책은 그 후 마스트리히트조약(1993)에 이르러 추가되었다.

섰다. 남은 과제는 각 부문에서 회원국과 EU의 조화를 이루면서 공동정책의 수립을 중심으로 실현한 ‘유럽연합 확정영역(acquis communautaires)’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이후 EU 조약은 암스테르담조약(2000) 및 니스조약(2005)에 의해 또 다시 개정되었으나,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은 없다. 또 유럽헌법조약(안)이 일부 회원국(프랑스 및 네덜란드 등)의 비준에 실패한 이후 새로이 마련된 개혁헌법(Reform Treaty, 일명 마드리드조약)[61] 역시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업적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정도이다.

3. 초국가적 기구와 EU 법규

EU의 특성 중의 하나는 복잡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가리켜 ‘기구에 의한 통합’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EU를 운영하는 핵심기구들은 유럽이사회, 이사회, 유럽위원회, 유럽의회 및 유럽법원 등이다. 이 기구들은 상이한 권한과 기능을 갖고 있으며, 유기적인 틀에서 운영된다.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들은 초국가적(supranational)인 의사결정권을 누린다. 총체적으로 이 기구들은 조약이 위임한 분야에서 한 국가의 경우와 같이 각각 입법, 행정 및 사법을 담당함으로써 EU의 지배구조를 형성한다.[62]

장관들로 구성되는 이사회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본적인 업무는 각종 유럽연합 법규를 제정하는데 있다. 의사결정방식은 대부분의 안건에 있어서 가중다수결제(QMV: qualified majority voting)가 적용된다.[63] 이 제도는 종전까지 대국들의 독주를 막는 한편, 소국들의 입장을 보호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유럽위원회는 순수한 EU의 기구로서 회원국들이 추구하는 공동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유럽통합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가의 행정부와 같은 기능을 가지며, 동시에 법제정을 위한 제안권을 전담한다.

EU가 회원국간경제통합을 추진하기 위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수단은 조약

61) 개혁헌법은 2007년 12월 회원국들의 조인을 거쳤으며 비준절차가 끝나는 2009년부터 발효하였다.
62) 단지 입법권의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이사회, 유럽위원회 및 유럽의회가 공동으로 또는 분담하여 권한을 갖는다.
63) 가중다수결제에 따르면 각 회원국별로 인구,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투표수가 결정되며,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의 가결을 위해서는 일정 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회원국들은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에 의해 위임받은 분야와 관련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이다. EU 법규가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경우는 다음의 네 가지다.

‘규칙(regulation)’은 EU가 취하는 의사결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효력을 갖는다. 직접 효력을 갖는 단일 법규로서 회원국 내에서 다른 입법과정이 필요 없으며, 규정 그대로 회원국에 적용된다. ‘지침(directive)’ 역시 구속력을 가지며 그 대상이 회원국이다. 지침은 회원국이 ‘일정기간 내’ 실현해야 할 입법의무를 낳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나 과정은 회원국의 자율에 맡긴다. 따라서 지침이 회원국 국내법으로 반영되려면 적절한 변형조치(transformation measures)로서의 법제정이 필요하다. ‘제도지침(framework directive)’의 법적 성격은 지침과 동일하지만, 회원국간 ‘동일한 접근’이 취해져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된다. ‘결정(decision)’이 취해지는 대상은 개별 회원국, 개인 또는 법인이며, 이 또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다.

Ⅲ. EU의 신 통상정책의 배경과 특징[64)]

1. 신 통상정책기조의 등장배경

유럽위원회는 2006년 10월 ‘Global Europe: Competing in the World-A Contribution to the EU’s Growth and Jobs Strategy’[65)]라는 제목의 신 통상정책을 ‘통지(communication)’ 형식으로 이사회에 전달하였다. 이사회가 이 정책기조에 동의하는 결론을 채택하면서, 신 통상정책은 EU의 공식적인 통상정책이 되었다.

신 통상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추진 자체는 새로운 EU 법규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유럽위원회의 권한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내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반드시 이사회나 회원국의 결정이 요구된다. 유럽위원회는 신 통상정책의 실시를 보완하는 정책자료들을 발표하였다. 무역방어수단 녹서(green paper),[66)] 유럽수출기업에 대한 시장접근전략[67)] 그

64) 이하 김세원, EU의 세계통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55~162면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임.
65) European Commission(2006).
66) European Commission(2006).
67) European Commission(2006).

리고 신 통상정책 부속자료[68] 등이다.

2. 신 통상정책의 특징과 FTA에 대한 입장

EU의 신 통상정책은 혁신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으며, WTO 다자협상과 대상국별 통상협상에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종전 통상정책과 비교할 때 신 통상정책의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반적으로 국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좀 더 현실적인 측면이 보완되었다.

신 통상정책은 역내시장이나 국제시장에서 보호주의 철폐를 제안하고 두 시장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EU는 '역내시장'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품 및 서비스시장의 자유화가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회원국 사이의 수입규제 철폐와 국내 규제개혁은 물론 공동규정의 채택, 정책 및 관행의 접근, 정책의 일관성 및 투명성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을 경험했다. 정책의 변화가 EU 내에서 실제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려면 경쟁적 역내시장의 형성과 함께 기업들의 역외에 대한 수출확대 및 투자증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중요거래 상대국들도 EU와 비슷하게 수입시장을 개방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여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 통상정책은 최초로 국제경제질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유럽식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EU는 WTO를 중심으로 통상정책을 전개한다. WTO가 규제통합(regulatory convergence)을 통해서 국제기준(global standards)을 확대하고 국제관리체제(international governance)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무역의 자유화과정에서 빈국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균형과 합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제안대로 WTO가 발전한다면 EU의 경제통합모형은 좋은 기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EU는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의 FTA'라는 명칭 아래 외교 전략적인 협정보다는 실제로 무역자유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FTA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FTA는 대상국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며, 또 그 내용은 관세철폐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비관세장벽, 투자, 지식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그리고 나아가서 환경 및 사회보호정책까지 포함할 수 있다. 따라서 FTA는

---

68) European Commission(2006).

WTO 다자주의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된다는 것이 EU의 입장이다.

신 통상정책은 관세와 비관세장벽에 더하여 FTA협상에서 다루어야 할 의제로서 에너지 및 환경 그리고 새로운 성장부문(지식재산권, 서비스 및 경쟁정책 등)을 제안하였다. 이 부문들은 이미 ‘역내시장’이나 공동정책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EU가 대외협상에서 회원국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에너지정책은 회원국의 권한에 속하지만 공동통상정책에 포함된다는 것은 시장통합의 발전에 따르는 당연한 결과이다.

제2절 EU 회원국 내에서의 조약의 국내적 효력과 한-EU FTA[69)]

Ⅰ. EU 회원국 내에서의 조약의 효력

EU 회원국들 대부분은 EU와 회원국의 법이 하나의 체계라는 태도를 취하는 일원론 국가들이지만, 이원론과 완화된 이원론을 취하는 국가들도 있다. 특히 이때 각 회원국의 법체계 및 EU법과 국제법의 관계는 한 국가가 국제법의 유효성에 대해 갖는 특정한 관점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정된다.[70)] 국제법의 규정과 국내법의 규정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에 무엇이 우선되어 적용되는가의 문제가 바로 이와 연결된다.

입장에 따라서 각국 정부는 어느 법을 집행해야 하며, 회원국 법원은 어느 법을 적용해야 하며, 그리고 유럽재판소 및 국제재판소 판결의 결과와 논거는 국내 법원과 다를 것인가의 문제에 이른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법과 국내법의 체계적 관계에 관한 법철학상의 관점과, 각국의 국내법 및 관행 등의 실정법에 대한 해석ㆍ적용의 입장에 연결된다.[71)]

EU의 규범은 여러 나라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동시에 각 회원국들의 고유한 국내법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양자가 비합치되는 경우에 과연 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

69) 이하는 서은아, “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된 조약의 유럽연합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한-EU FTA 체결과 관련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09-Ⅱ(통권 제30호), 국제법평론회, 2009, 300~309면을 요약하고 정리하였음.

70) Nigel Foster, *Foster on EU law,* Oxford Universtity Press, 2006, p.147.

71) 이한기, 『국제법 강의』, 박영사, 2004, 122면.

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어느 한쪽의 규범에 우선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EU와 회원국 규범 사이의 비합치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EU와 회원국들 사이의 규범이 비합치하는 경우 EU 차원에서 관련 제도와 법률해석을 통해 어떻게 양자를 규율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럽연합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72]

Ⅱ. EU이 비회원국과 체결한 조약의 국내적 적용에 관한 원칙[73]

1. 직접효력의 원칙

직접효력의 원칙이란, EU법 규정에 대해 직접효력이 발생하면 각 회원국의 국내법원이 EU법을 그 나라의 법의 일부로써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직접효력의 원칙을 논하는 데 있어서 ECJ가 이를 다룬 최초의 판례는 *Van Gend en Loos*[74]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ECJ는 “EU법이 회원국과는 관계없이 개인에게 의무뿐만이 아니라 권리까지도 부여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 고 판시하여, 당시 EEC조약 제12조(신규관세의 도입 및 관세증액의 금지)의 직접효력을 승인하였다. 이러한 사건의 판시를 통하여 각 회원국에게 EU법의 직접효력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은 이 사건에서 회원국에 대한 의무는 부과하였지만, 그에 상응하는 개인에 대한 권리는 명시하지 있지 않았다. ECJ는 “단지 회원국에 대해 EU법이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는 것을 판시했다는 이유로 개인에게 그러한 권리가 명시적으로 수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권리부여를 위한 요건을 제시하였다. 그 후의 판결들이 이러한 요건을 수정하고 세분화 시키면서 발전하였다.[75]

---

72) 이호선,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세창출판사, 2006), 89면. 제4장 유럽연합 법규와 회원국들의 관계 참조.

73) 서은아, “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된 조약의 유럽연합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한-EU FTA 체결과 관련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09-Ⅱ(통권 제30호), 국제법평론회, 2009, 311~320면의 내용을 요약정리 하였음.

74) Case 26/62, Van Gend & Loos v. Netherlands, European Court Reports [1963], p.1.

75) Alan Dashwood, “The Principle of Direct Effect in European Community Law,” 16 Journal of Common Market Studies, Vol. 16(1977), pp.229-231.

이러한 직접효력의 원칙은 명백성 및 명확성(Clarity and Unambiguity), 무조건성(Unconditionality), 무의존성(No dependency on Further Action)을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명백성 및 명확성은 EU법 규정이 충분히 명백하고 명확해야만 각 회원국에게 직접적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다수의 다른 당사국들 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EU법의 기준으로 판단 할 때, 각 국의 국내법이 모호하여 법관의 해석이 필요한 것처럼 EU법 규정이 불명확(unclear and ambiguous)한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다만 불명확한 규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직접효력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불명확한 규정에 대해 ECJ가 해석을 거듭할수록 이러한 불명확성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EU법 규정 중 하나에 일반적인 목적이나 정책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규정을 구체화하는 일련의 적합한 수단 없이는 재판규범으로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없다. 이는 어떠한 사안이 발생하는 경우 이 규정의 적용 전에 수정 및 개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조건성은 직접효력 원칙의 두 번째 적용요건으로, EU법 규정은 그 실시와 이행(implementation)에 조건과 제한이 붙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된 후에야 동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개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약을 EEC 설립 직후의 이행기간 중에 폐지할 것을 회원국에 요구하는” 당시 EEC조약 제52조(현 제43조)는 그 이행기간이 경과한 시점(1970년 1월 1일)부터 직접효력을 발생한다.[76] ECJ는, EU의 어떠한 조약상의 규정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규정된 권리가 독립적인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이나 재량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였다.[77]

무의존성은 EU법 규정이 각 회원국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도록 하는 세 번째 요건으로서, EU의 규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량권을 가진 EU기관 내지 회원국의 행위 또는 후에 따르는 조치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EU기관 내지 회원국의 새로운 조치가 EU 규정을 실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경우일 때에도 규정을 적용하는데 재량의 여지가 주어지는 것도 금지된다.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은 곧 부여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지 않은 것이

76) Case 2/74, Jean Reyners v Belgian State, European Court Reports [1974], p.649.
77) Case 41/74, Yvonne van Duyn v. Home Office, European Court Reports [1974], p.1337.

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원국이 재량의 여지를 부여 받는다고 해서 직접효력이 반드시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재량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내용의 기본적인 부분을 회원국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면 동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78)]

2. 우위성 원칙

EU규범에 대한 우위성의 원칙은, EU법이 회원국법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며 이를 항상 우위에 놓는다는 것이다.[79)] 이러한 우위성 원칙은 어떠한 조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지만, ECJ는 우위성의 원칙을 항상 강조해 왔다. 이 원칙은 EU법에 규정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만약 우위성의 원칙이 EU법에 규정되었다면 국내법 규정이 만들어진 후에 제정되었든 그 전에 제정되었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즉, 모든 경우에 있어서 EU법이 반드시 국내법 규정에 효력을 미친다는 것이다.[80)]

Simmenthal II 사건이 우위성의 원칙을 설명하는 좋은 예이다. Simmenthal은 일정량의 소고기를 프랑스에서 이탈리아로 수입하였는데, 국경통과 과정에서 육류 검사비용을 보건검역소에 지불하였다. 검사비용에 대한 납부의무는 1970년에 통과된 이탈리아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내용을 규정하는 당시 EC조약과 명령들(community regulations)이 1964년도 및 1968년도에 마련되었다. 이에 관하여, 이탈리아법과 후법인 EC조약 등과의 비합치를 이유로 이 사건은 이탈리아 법원에서 문제가 되었다.

이탈리아 당국은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는 이탈리아법(1970)이 EU 차원의 명령(1968) 보다 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어 이탈리아법이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이탈리아법이 조약상 의무와 비합치된다 하더라도 국내법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라고 선언되기 전까지는 우위에 있다는 것이다. 즉, 이탈리아 헌법재판소에 의해서만 이탈리아 법의 위헌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ECJ는 각 회원국

---

78) Case 91/92, Faccini Dori v. Recreb, European Court Reports [1994], p.3354.

79) The only exception is where the national provision is necessary to give effect to obligations under an international agreement entered into by the Member State before it became a party to the relevant Community Treaty—Levy Case C-158/91, European Court Reports [1993], p.4287.

80) Hartley, supra note 12, pp.227-228.

의 법원이 EU법의 효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그 후에 EU법이 채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EU법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자국 내에서 자국법과 EU법 사이의 비합치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다.[81]

Ⅲ. 한-EU FTA와 관련된 회원국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한 검토[82]

위에서 검토한 EU 회원국 내에서의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통하여 한-EU FTA의 회원국 내에서의 효력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한-EU FTA가 명확성, 무의존성, 무조건성이라는 일정 요건을 구비한다면 직접효력의 원칙이 적용되며, 이와 함께 우위성의 원칙을 회원국 내에 적용하여 동 협정의 원활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EU가 제3국(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의 직접효력의 원칙이 회원국에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점 또한 ECJ에 의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한-EU FTA에 관련된 검토를 하는데 있어서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관한 사항을 좀 더 전체적으로 자세히 알아보고, 이에 따라 한-EU FTA의 향후 이행문제에 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EU와 비회원국간 국제조약의 체결과 효력

EU와 비회원국간 국제조약은 EU의 이례적인(anomalous) 요소라 볼 수 있다. 헌법적 요소를 갖고 있는 EU 내부적 조약은 회원국들의 행위(acts)라 할 수 있다. 즉, 명령, 결정, 준칙 등과 같은 것은 EU 그 자체의 행위(acts)이며, 국제조약의 근원은 EU 법질서의 외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국제조약은 부분적으로 비회원국들의 행위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제조약 모두 EU법 내에서 효력을 지니며, 이는 ECJ에 의해 적용된다. 즉, 국제조약들은 ‘EU법의

81) Case 106/77, Amministrazione delle Finanze dello Stato v Simmenthal SpA. Referencefor a preliminary ruling: Pretura di Susa-Italy, European Court Reports [1978], p.629.
82) 서은아, “유럽연합과 비회원국간 체결된 조약의 유럽연합 회원국내 국내적 효력: 한-EU FTA 체결과 관련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2009-Ⅱ(통권 제30호), 국제법평론회, 2009, 311~320면을 요약 정리함.

통합적인 부분’으로 선언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EU법에 다양한 연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조약은 EU법의 진정한 연원으로 여겨진다.

EU법의 일부로 구성되는 국제조약은 세 가지의 범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 범주는 EU와 한 국가 또는 둘 이상의 비회원국과의 조약이다. 이러한 조약은 조약에 관한 문제가 오직 EU의 조약체결 권한 내에 있을 때에 사용된다. 두 번째 범주는 ‘혼합(mixed)협정’이다. 이 조약은 한편으로는 EU와 회원국들이 하는 행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비회원국들과의 행위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관련 문제가 EU의 권한 안에 있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그러한 권한이 회원국들에게 있는 경우 또는 EU와 회원국들이 모두 권한을 갖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세 번째 범주는 회원국들과 비회원국들 간의 조약이다. ECJ는 그러한 조약을 EU법의 한 형태로 받아들였다.

국제기구는 국제법에 의한 법인격(legal personality)을 인정받아야만 국제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TFEU는 EU의 법인격을 명시적으로 수여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한-EU FTA 체결 후라도 각각의 회원국이 아닌 EU가 대표하여 행동한다고 볼 수 있다.

2. EU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한 ECJ의 태도

직접효력의 원칙은 각 회원국에 있는 개인을 위하는 것이다. EU법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개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실행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위에서 언급했던 일련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 개인이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자국의 재판소에 대해 그 규정에 따른 집행 및 실행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직접효력의 원칙은 EC조약, 명령, 규칙, 결정[83] 및 제3국(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ECJ가 결정을 함으로써 발생된다.

83) EC 제249조와 ECSC 제14조는 유럽연합기관이 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택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열거하고 있다. 이 두 조문에서는 유럽연합 집행기관이 제정할 수 있는 행위(acts)의 종류를 열거하고 그리고 각 행위의 성격에 관해서 말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입법권한은 각각의 개별 조항으로부터 찾지 않으면 안된다. Euratom 제161조는 EC 제249조와 동일한 분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유럽연합기관이 채택할 수 있는 행위의 명칭과 특성 이 EC와 ECSC간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EC 제249조는 명령(命令, regulations), 준칙(準則, directives), 결정(決定, decision), 권고(勸告, recommendation), 의견(意見,opinion) 등 다섯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 반해서, ECSC 제14조에는 결정(decision), 권고(recommendation), 의견 등 세 종류가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ECJ의 판례를 통해서 두 체제간의 차이점들이 해소되어 왔다. ECSC는 2002년 소멸하였다.

EU와 제3국(비회원국)이 체결한 조약(Agreements with Third Countries)은 분명히 그 밖의 입법행위와는 다른 영역이다. 특히, 조약이 회원국에게만 직접효력을 미치고 그 상대방인 비회원국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사자간의 상호주의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연합협정(association agreements)이나 양자간 무역협정(bilateral trade agreements)에 있어서는, 그러한 협정문이 직접적인 효력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ECJ는 그러한 조약이 제3국(비회원국)에게 더 유리한 권리를 주게 되는 특혜관련 영역이든지 상호주의를 의도한 것이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제3국(비회원국) 내에서 직접적 효력을 미치지 않는 조약이든지에 관계없이 ECJ는 이러한 조약들이 회원국에게 직접적인 효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를 내 놓았다.

이와 관련된 두 가지 사안이 있는데, 하나는 EU에 의해 맺어진 조약에 관한 *Kupferberg*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EU와 회원국이 같이 관여한 혼합협정(mixed agreement)에 관한 *Bresciani* 사건이다. *Kupferberg* 사건에서, EU가 조약을 체결하는(treaty-making) 권한 밖의 부분의 조항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의 법에 따라 그 효력 여부를 판단한다는 원칙이 만들어졌다.[84] 그러나 이와 달리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조약이지만 그 후에 EU를 구속하는 구 GATT에 대해서는 ECJ가 그 조약에 대한 직접효력의 가능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85]

Kupferberg 사건에서 EU와 (당시 EU의 비회원국이던) 포르투갈 사이에 맺은 FTA 조항에 대한 비합치가 있었다. EU-포르투갈 FTA 조항에 근거하여, 포르투갈은 자국에서부터 독일에 수출되는 와인에 대하여 독일이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국법을 포르투갈의 와인에는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제기된 문제는 FTA의 규정들이 과연 독일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가의 여부였다. 이에 대해 ECJ는 EU의 통합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이러한 문제를 각국의 재판소에서 다루도록 유보할 수만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ECJ는 이 규정에 대해 심사를 한 후, 이는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다는 결론을 내렸다.[86]

---

84) Cases C-300, 392/98, Dior v. Tuk Consultancy (14 December 2000) 참조.
85) G. Bebr, “Agreemnets Concludes by the Community and Their Possible Direct Effect: From International Fruit Company to Kupferberg,” Common Market Law Review, Vol. 20(1983), p.35.
86) G. Bebr, op cit, pp.35-36.

이러한 결론으로 비회원국의 사업자가 회원국 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국가들 사이(회원국과 비회원국간)의 조약이 더 효과적인 수단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ECJ는 비회원국과의 조약에 있는 규정들이 반드시 조약에 주어진 일반적 정책에 근거하여 해석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즉, 비록 여러 사건에서 비회원국과의 협정문이 거의 조약의 규정과 같은 경우도 많았지만, ECJ는 조약에 합치될 필요성이 없다는 태도를 유지하였다.[87]

ECJ에서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EU가 비회원국과 조약을 체결하면 그 조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EU 입장에서 그 조약의 실행은 회원국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로 인하여 만일 조약이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 효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EU는 조약에 따른 비회원국간의 관계를 유지시키기가 힘들 것이다. 물론 EU와 비회원국간의 조약은 회원국을 구속하며,[88] 그러한 조약을 따르지 않는 회원국에 대해 이를 강제할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러한 조약의 직접적 효력을 통해 ECJ가 동 조약을 실행할 보다 쉬운 길을 열어 주는 것이다. 동시에 그러한 조약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방식을 배척함으로써 비회원국이 지나치게 유리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

GATT의 규정과 관련된 사안도 문제가 된 예가 있다. GATT는 그 규정들이 유연성(flexibility)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89] 이는 GATT의 당사국들이 두 가지의 선택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는 GATT 규정의 실체적 규범성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GATT 규정의 규범성을 크게 긍정하지 않으면서 회원국이 그 규정과 반대되는 행위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만일 GATT가 EU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친다면, EU 자체가 이 조약을 위반한 상대국(EU의 비회원국)에 대해 일방적인 조치(unilateral action)를 취할 수 없으므로, EU 입장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GATT 체제에서 고려되었던 이러한 입장에 대한 정당성은 지금의 WTO 체제에서는 달라졌다. WTO 협정은 보다 더 강력한 집행체제를 구축하고 있

87) G. Bebr, Ibid., pp.35-36.
88) Article 218(ex Article 300 TEC) "… When concluding an agreement, the Council may … authorise the negotiator to approve on the Union's behalf modifications to the agreement …."
89) Cases 21 to 4/72, International Fruit Company, European Court Reports [1972], p.1219.

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ortugal v. Council*[90] 사건에서 ECJ는 과거 GATT 체계에서 취했던 입장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3. EU가 체결한 국제조약의 EU 법체계 내부적인 법적 효력

EU와 비회원국 사이의 국제조약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단계적인 검토방법이 필요하다. 즉, 국제적 단계, EU 단계, 그리고 국가적 단계를 통해서 EU와 비회원국 사이의 국제조약이 EU 법체계 내에서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적 단계' 에서의 조약에 관한 효력은,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구속하는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이는 국제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 단계에서 EU법이 적용될 수 있는 방법은 국제법에서 이에 관한 문제가 언급되었을 경우이다.[91] 그러나 'EU법적 체계 내' 에서의 국제조약의 효력은 EU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때 국제조약이 EU법질서 안에 있는 연원에 속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여 이를 승인하는 것에 관한 규정과 조건은 법에 규정될 수 있다. '국가적 단계' 에서 국제조약의 효력은 각 회원국의 법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회원국들이 조약을 따를 것에 동의했기 때문에, 회원국들은 ECJ에 조약들을 해석할 관할권을 주었다. ECJ는 "조약에 의해 각 회원국들은 EU법의 다수의 조항에 대해 각국이 효력을 주어야 할 것" 이라고 판단하였다. 각 회원국들은 자국 법원에서 EU법에 대한 효력을 미치는 국제적 의무 아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약의 효력은 부분적으로는 유효성에 따라 달라진다. 즉, 조약이 유효하지 않다면, 조약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회원국과의 국제조약이 국제법하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ECJ에 의한 결정 또한 비회원국을 구속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유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CJ는 그러한 조약이 EU의 법적 체계 내에 승인되고 적용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ECJ에 의한 결정이 국제적 단계에서 항상 구속적인 것만은 아니다. 비회원국간 국제조약이 국제법하에서 유효하더라도 ECJ는 이를 여전

90) Case C-149/96, European Court Reports [1999], p.8395.
91) Ilona Cheyne,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the European Community Legal System", European Law Review, Vol. 19(1994), p.581.

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조약이 EU법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약을 EU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 EU조약의 일반적 범위 내에서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 EU와 회원국간 체결된 혼합협정이라는 3가지로 분류해야 한다.

국제조약이 EU를 구속하는 경우도 있다. TFEU에 의하면, "EU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은 EU를 구속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이 조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EU법체계상 당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ECJ는 이보다 더 나아가 회원국에 의해 체결된 국제조약 또한 EU를 구속한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은 *International Fruit Company* 사건[92)]으로, 이 사건에서 GATT에 의해 EU가 구속받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그 당시 모든 회원국은 이에 대한 당사국이었다. GATT는 관세와 무역에 관한 것이었고, EU가 조약체결권한을 명시적으로 표현한 범위 내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ECJ는 "… EEC협정상 EU는 일반협정에 의해 지배되는 영역에서 회원국들에 의한 주권을 인정해 왔다. 이 협정의 규정은 EU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93)]라고 판시하며, EU가 이 협정에 구속됨을 언급하였다. 그 후의 사건들에서 ECJ는 GATT하의 목적달성을 위해 EU가 회원국들을 '대표한다' 고 하였다.

4. 한-EU FTA 체결에 대한 시사점

EU이사회는 신 통상정책이 등장한 이후 최초로 2007년 4월 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한국을 비롯해서 ASEAN 제국 및 인도와의 협상개시를 의결하였다. EU는 그 중에서도 최초로 한국과 FTA 협상을 진행하였다. 한국과의 FTA 협상은 역외 공업국과는 최초로 호혜성(reciprocity)에 입각하여 추진하는, EU에게는 WTO 규범 합치적인(WTO-compatible) FTA의 첫 사례이다. EU가 그동안 많은 FTA를 체결했지만, 유럽내 새로운 회원국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활용한 경험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FTA는 실제로 역외 개

92) Cases 21 to 4/72, International Fruit Company, European Court Reports [1972].
93) 원문은 다음과 같다.
… in so far as under the EEC Treaty the Community has assumed the powers previously exercised by Member States in the area governed by the General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at agreement have the effect of binding the Community.

발도상국들과의 무역특혜협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EU-개발도상국 사이의 무역특혜협정은 물론 개발도상국 사이에 서로 제공하는 무역특혜에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이 추진하는 시장통합은 대부분 WTO 관련협정에 위배되며 실제로는 특혜지역에 지나지 않았다.[94] 그러므로 이러한 WTO에 비합치적인 무역특혜협정을 제외하면, 한-EU FTA는 EU가 추진해 왔던 FTA에서 최초의 WTO 규범 합치적인 협정이 되는 것이다.

한편, EU가 체결한 FTA의 경우 회원국에 대해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EU 내에서 이러한 국제조약들에 대한 통일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Kupferberg* 사건 이전에 있었던 그와 유사한 사건인 *Polydor v. Harlequin Record Shops*[95]에서, 영국의 항소법원은 *Kuperberg* 사건에서 문제되었던 동일한 협정의 일부 규정의 해석과 그 규정들 중의 한 조항이 개인에 의하여 원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선결적 부탁을 ECJ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ECJ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판단을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Kupferberg* 판결은 진일보한 것이라 볼 수 있다. ECJ는 *Kupferberg* 사건에서 비로소 연합협정과 구별되는 일반적인 성격을 갖는 국제조약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직접효력을 부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96]

이러한 FTA상의 규정과 관련한 ECJ의 입장은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오스트리아와의 협정, 스웨덴과의 협정, EEA협정 등과 관련한 ECJ의 판결들이 그것이다. *Kupferberg* 사건에서 문제된 규정과 동일한 내용이 문제된 *Metalsa* 사건[97]에서 ECJ가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률자문가(Advocate General) Jacobs는 오스트리아와의 협정 제18조가 직접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또한 *Texaco v. Middelfart Havn et. al* 사건 및 *Thyboron Havn and Olieselskabe Danmark amba v. Trafikministeriet et, al*[98] 사건에서는 조세차별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갖는 1972년 스웨덴과의

94) 김세원, "EU의 세계통상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2007, 187면.

95) Case 270/80, Polydor Limited and RSO Records Inc. v Harlequin Records Shops Limited and Simons Records Limited, European Court Reports [1982], p.329.

96) 이성덕, "유럽공동체가 체결한 조약의 유럽공동체 역내적 효력," 한국EU학회, 2003, 22면.

97) Case C-312/91, European Court Reports [1993], p.3751.

98) Joined Cases C-114, 115/95, Texaco v. Middelfart Havn et. al and Thyboron Havnand Olieselskabe Danmark amba v. Trafikministeriet et, al, European Court Reports[1997], p.4263.

협정 제6조와 제18조가 문제되었는데, 여기서 ECJ는 그 규정들의 직접효력 유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도, 제18조와 유사한 규정을 갖고 있는 조약을 체결하여 비회원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는 EU법을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보다 더 광범위한 효력을 갖는 EEA협정과 관련하여 *Opel Austria GmbH v. Council*[99] 사건에서 ECJ는 EU에 의하여 체결된 조약은 회원국과 EU기관을 구속하는 것으로 EU법 본질적 구성부분이라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협정은 무조건적이며 충분히 명확할 때 직접적인 효력을 가지고, EEA협정이 발효한 이후부터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판단하는 등[100] EU가 비회원국과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하여 일관되게 직접효력을 갖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EU와 비회원국간 체결된 국제조약은 일련의 적용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ECJ는 거듭 확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EU FTA는 EU와 한 국가 또는 둘 이상의 비회원국과의 조약에 속한다. 이 때 EU는 자신의 조약체결권한이 조약에 명시적으로 부여된 경우만 행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약에서 EU의 조약체결권한과 관련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EU FTA를 체결하는데 있어서 EU의 조약체결권한이 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한편 비회원국과의 국제조약이 국제법하에서 유효하지 않다면 ECJ에 의한 결정 또한 비회원국을 구속하지 않지만, 비록 유효하지 않더라도 ECJ는 EU가 체결한 국제조약에 대해서 자신을 구속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EU FTA가 체결된 후 EU 자신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회원국에 대해서도 직접효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원칙을 각 회원국의 법체계에 연결하여 살펴보면, 각 회원국들은 국내법을 EU가 비회원국인 한국과 체결한 FTA의 기준에 맞추어야 한다는 과제를 부여받은 셈이다. 만약 FTA를 통해서 EU와 한국이 어느 상품에 대해서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제거하여 마치 EU 회원국의 상품거래와 같이 취급하기로 하였다면, EU의 각 회원국들은 비회원국인 한국의 해당 상품에 대하여 EU 회원국 상품인 것과 같이 취급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국내규범 역시 즉시 개선되어야 하고, 그러한 사항은 EU 차원에서 또는 각 회원국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99) Case T-115/94, Opel Austria GmbH v. Council, European Court Reports [1997], p.39.
100) 이성덕, 앞의 논문, 22-23면.

한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EU FTA는 EU에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새로운 시도이고, 그것이 EU법 자체에 주는 영향도 크다. WTO 규범에 합치하는 첫 상호 호혜적인 FTA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EU FTA를 통해서 향후 EU 국내법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며, 무역문제에 관하여 한국이 EU법체계 내에서 많은 부분 EU 회원국과 동등한 취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범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EU 회원국들이 이에 반하는 차별적 규범을 유지하는 경우, 한국은 EU측을 상대로 혹은 회원국을 상대로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5장 국내법률의 개선내용과 제안

FTA 체결이 국내규범체계에 대한 다양한 영향을 주고, 규범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장에서는 FTA 체결을 직접적인 이유로 하여 우리나라에서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을 각 행정제도 및 공기업 관련 분야, 독점ㆍ무역관련 분야, 조세관련 분야, 특허관련 분야, 전문자격사에 대한 분야로 세분하여 그 변화 부분을 검토해본다. 이렇게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이 FTA에 합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향후 법개정시 참고점을 분석한다. 아울러 FTA와 관련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사항으로 민사소송법 분야를 예시로 설명한다.

제1절 FTA 체결에 따른 법률개정 현황

Ⅰ. 행정, 제도, 공기업 관련 개정법률

1. 행정절차법(법률 제11109호, 2011.12.2, 일부개정)

법률 제1110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은 정부의 입법추진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를 법령에 반영함으로써 정부입법절차가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입법을 위한 행정절차에서 예견가능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면이 보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별히 FTA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행정절차법 개정에서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령의 입법예고기간을 현행 ‘20일 이상’에서 ‘40일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 점 역시 FTA에 따라 외국인 투자 및 무역확대로 인하여 국내법의 개정시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의 범위가 내국인에서 외국인까지로 확대

되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행정절차법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행정절차법 [법률 제11109호, 2011.12.2, 일부개정]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u>20일이상으</u>로 한다.	**제43조(예고기간)** - <u>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u>- - - - -.

2. 우편법(법률 제11116호, 2011.12.2, 일부개정)

법률 제11116호로 일부 개정되어 행정절차법과 마찬가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우편법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을 기본적인 내용으로 하였다. 우편법의 개정이 일반적인 국내상황에 따라서 개선된 부분이 많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FTA의 확대에 따라 우편 사업의 변화와 대비도 아울러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한-미 FTA의 일부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개정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다. 즉, 서신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서신송달을 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 사업의 범위를 축소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과거 국가가 독점하던 우편 사업시장을 FTA에 따라서 외국기업에게도 일정부분 개방하려는 취지이다.

이밖에도, 우편법은 국가가 여전히 독점하는 우편사업 외의 서신 송달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규제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편물 분실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실보상청구권 등의 소멸시효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우편법 [법률 제9636호, 2009.4.22, 타법개정]	우편법 [법률 제11116호, 2011.12.2, 일부개정]
제2조(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등) ①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②누구든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이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경영주체와 사업의 독점 등)** ① － － － － － － － － － －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 － － － .－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 ② － － － － 제1항과 제5항의 경우 외에는 － － － － － － －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業)－ － － － － － － － － － － － － 조직이나 － － － － － － － － － － － 서신을 － － － － － － － － － － － － 아니 된다. <단서 삭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신(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취급 서신은 제외한다)의 중량이 350그램을 넘거나 우편요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우편요금의 10배를 넘는 경우에는 타인을 위하여 서신을 송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2항을 위반하는 자에게 서신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우편사업이나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조의2(서신송달업자의 신고 등)** ① 제2조 제3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해당 신고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

	획서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서신송달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서신의 취급물량, 매출액, 중량 및 요금 등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1. 부가우편역무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2. 부가우편역무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하거나 지연배달한 때 3. 부가우편역무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생 략) ③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 - - - - - - - - - - - 각 호- - - - - - - - - - - - - - - - - 발생한 경우- - - - - - - 배상하여야 한다. 1. 우편역무 중 - 지연 배달한 경우 2. 우편역무 중 - 지연 배달한 경우 3. 우편역무 중 현금추심 취급 - 내준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우편역무- - - - - -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넘지 아니하는 범위- -. ④ 제2항과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행사하지 아	**제43조(배상 및 보수 등의 단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수 또는 손실보상,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제목개정 2005.3.31]	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제4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보수와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보상은 그 사실이 있었던 날부터 1년 2. 제38조에 따른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부터 1년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5호, 2011.12.2, 일부개정)

법률 제11115호로 개정되어 우편법과 마찬가지로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은, 우체국의 금융업에 대한 특혜를 배제하고 일반적인 금융규제에 따르도록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FTA 체결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화가 많았다. 한-미 FTA의 일부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개정된 법에서는 새로운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신설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우체국보험의 종류를 수정할 때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약관과 보험료 산출방법서 등을,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각각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개정되었다.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28호, 2009.4.22, 일부개정]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15호, 2011.12.2, 일부개정]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생 략)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8조에 따라 보험의 종류와 계약보험금 한도액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려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업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 - - - - - - 계약보험금 -. <단서 삭제>

③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채(國債) 및 공채(公債)의 매매이율과 제1항 단서에 따른 예금의 종류별 이자율을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하고, 예금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거나 제2항 단서에 따라 보험의 종류를 정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 변경하였을 - - - - - - - - - - - - - - - - - -.
<신 설>	④ 지식경제부장관은 보험의 종류를 수정하려면 「보험업법」 제5조제3호에 따른 기초서류 등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지식경제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보험의 결산이 끝났을 때에는 재무제표 등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제출서류와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법률 제10166호, 2010.3.22, 전부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법률 제10166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 허가제도와 이용약관 인가제도를 개선하고 전기통신서비스의 재판매 및 도매제공 제도를 도입하여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운 유형의 금지행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에서 개정되었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이 분야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개방적인 성격으로 개선하였다. 예를 들어, 허가제도 개선 등(제2조, 제5조, 제6

조 및 제16조 등)을 도입하여 기존에 개별적 허가단위로 하였던 여러 가지 기간통신역무를 1개로 통합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능력과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완화하여 허가제를 개선하였다. 이와 같이 허가제를 개선함으로써 한번만 허가를 받으면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허가심사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사이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목표로 하였다.

또한 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이용약관 인가제의 개선에 관하여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 이용약관에 대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가 대상 이용약관 중 서비스별 요금에 대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할인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신속한 할인요금 출시를 촉진하는 등 요금 경쟁이 활성화될 것을 목표로 하였다.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제도의 도입(제38조 신설)하여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으로 협정을 통해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도록 허용할 수 있는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의무적으로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통신망이나 주파수가 없는 전기통신사업자도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다양한 신규 사업자가 통신시장에 진입하여 기존 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FTA 체결에 따른 국내 통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설비제공제도의 개선(제35조, 제44조, 제45조 및 제104조)을 목표로 통신망의 확충ㆍ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기간통신사업자나 도로 등을 관리하는 기관이 협정을 체결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설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따라 설비 공동사용제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다. 또한 제5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금지행위 제도를 보완하여 전기통신사업자는 설비 등의 제공ㆍ공동활용ㆍ상호접속ㆍ도매제공 등의 대가를 공급비용에 비하여 부당하게 높게 결정ㆍ유지하는 행위 및 디지털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거래에서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금지행위에 대한 보완으로 전기통신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9919호, 2010.1.1,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2010.3.22, 전부개정]
제5조(기간통신사업자의 허가 등) ①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전기통신사업의 구분 등)** ① 전기통신사업은 기간통신사업, 별정통신사업 및 부가통신사업으로 구분한다.
<신 설>	② 기간통신사업은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고, 그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③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③ 별정통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1.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간통신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2. 전기통신설비의 규모의 적정성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내(構內)에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그 구내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
④방송통신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④ 부가통신사업은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6조(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주식소유 제한) ①기간통신사업자의 주식(의결권 있는 주식에 한하며 주식예탁증서 등 의결권을 가진 주식의 등가물 및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 모두가 합하여 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허가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주주인 법인으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하 "외국인의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 2.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제법인"이라 한다)은 외국인으로 본다.	기술적 능력 3.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4. 그 밖에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기간통신사업자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한 법인은 제2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사 사항별 세부 심사기준과 허가의 시기 및 허가신청 요령을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 촉진, 이용자 보호, 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자원의 효율적 활용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는 법인만 받을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지명령등) ①방송통신위원회는 별정통신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2.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때 3.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삭 제 5. 제37조제1항 또는 제6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6. 삭 제 7. 삭제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신 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損害賠償)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가 있는 경우에 금지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금지행위를 한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당해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요청하면 협정을 체결하여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이하 "재판매"라 한다)할 수 있도록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이하 "도매제공"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서비스를 재판매하려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정을 체결하여 도매제공을 하여야 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하 "도매제공의무사업자"라 한다)의 전기통신서비스(이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라 한다)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는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중에서 지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통신시장의 경쟁상황을 평가한 후 전기통신사업의 경쟁이 활성화되어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때에 따라야 할 도매제공의 조건·절차·방법 및 대가의 산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대가의 산정은 도매제공의무서비스의 소매요금에서 회피가능비용(기간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때 회피할 수 있는 관련비용을 말한다)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기간통신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도매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이내에 협정을 체결하고, 기간통신사업자와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는 협정 체결 후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협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 때에도 또한 같다. <u>⑥ 제5항에 따른 협정은 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u>

5. 전파법(법률 제10393호, 2010.7.23, 일부개정)

법률 제10393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년 1월 24일에 공포된 전파법은, 전반적으로 FTA와 함께 국제적 수요가 있는 주파수에 시장기능을 통하여 가치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파수 경매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무선국 준공검사제도를 간소화하여 전파이용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며, 무선국 신고제 적용 대상을 이동멀티미디어방송 무선국으로 확대하는 것이 주된 재정내용이었다. 또한 방송사업자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업친화적인 선진국형의 방송통신기기 등의 인증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도 목적이었다. 전반적으로 시장성과 경쟁적 요소를 강화한 셈이다. 이밖에 환경친화적인 규정과 재난에 관한 규정도 강화되었다.

제11조에서는 주파수 경매제 도입하여 현재 기간통신사업 등을 하려는 사업자가 주파수를 할당받기 위해서는 일정 항목의 비교심사를 거친 후 이 법에 따라 정해진 할당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으며 현행 대가할당방식 외에 경매방식인 가격경쟁에 의하여 결정된 대가를 받고 할당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주파수에 대한 경쟁적 수요가 없는 등 특별한 경우에만 기존의 대가산정방식을 적용하도록 개정하였다.

무선국 신고제 적용대상 확대(제19조의2 신설)와 관련하여서는 신고제 전환이 가능한 무선국의 범위를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위해 개설하는 무선국까지 확대하였다. 제24조의 무선국 준공검사 간소화는 현행 규정에 따라 무선국을 개설ㆍ운용하려는 자는 개설허가 또는 신고 후 모든 무선국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만 정상적인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전파 혼ㆍ간섭의 우려가 적은 무선국 등에 대하여는 전수검사가 아닌 표본추출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 인하여 다수의 무선국을 동시에 개설ㆍ운용하려는 자 등 전파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비용부담의 완화를 기대효과로 정하였다.

한편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인증제도 개편(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11까지 신설)을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다. 유선기기에 대하여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유선기기에 대한 인증 관련 조항을 이 법에 통합하되, 기기별 기준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위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인증유형을 재분류하고

적합성 평가절차를 간소화하였다. 따라서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방송통신기기 등에 대한 인증기간 및 인증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정들에 있어서, 특히 FTA에 따른 Global Standard 적합성을 주목하고 국가적인 준비를 하려는 목적을 확인할 수 있다.

전파법 [법률 제10166호, 2010.3.22, 타법개정]	**전파법** [법률 제10393호, 2010.7.23, 일부개정]
<신 설>	**제58조의2(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①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합등록 또는 제7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적합성평가"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2. 제47조의2에 따른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3.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 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기술기준 5. 「전기통신사업법」 제61조ㆍ제68조ㆍ제69조에 따른 기술기준 6. 「방송법」 제79조에 따른 기술기준 7. 다른 법률에서 방송통신기자재등과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기술기준이나 표준 ②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의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적합인증의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을 거쳐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불량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에 대하여는 스스로 시험하거나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는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하려는 사항 중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된 사항의 변경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해당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보관·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자재와 포장에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⑦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등의 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의 제조·수입·판매를 허용(이하 “잠정인증”이라고 한다)할 수 있다. 1. 방송통신망의 침해를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망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경우 2. 전파에 혼신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등 전

	파이용 환경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경우 3. 이용자의 인명, 재산 등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는 등 기자재 이용상 위해가 없는 경우 ⑧ 제7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거나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일정한 기한 내에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⑨ 잠정인증을 받은 자가 제8항에 따른 기한 내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인증의 효력은 소멸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합성평가기준과 적합성평가 및 변경신고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을 적합성평가 시험 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 및 인력을 확보할 것 2. 국제기준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을 확보할 것 3. 그 밖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험 업무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은 지정시험 업무를 일정 기간 중지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일부를 폐지하는 등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지정시험 업무의 전부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또는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시험기관이 아닌 자가 지정시험기관을 양수하거나 합병을 통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의 심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의 심사, 지정(변경, 폐지 및 승인을 포함한다)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8조의8(적합성평가의 국가 간 상호 인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 결과를 상호 인정하기 위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상호인정협정의 절차와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8조의9(국제적 적합성평가 체계의 구축)**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가 국제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6.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41호, 2008.12.19, 일부개정)

법률 제9141호로 일부 개정되어 2009년 3월 20일부터 시행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범죄와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 프로그램저작권 침해범죄를 이 법의 중대범죄에 포함하여 해당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은닉(隱匿)ㆍ가장(假裝)ㆍ수수행위를 처벌하고, 해당 범죄수익 등을 몰수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분야의 재산권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FTA 확대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와 국제적 분쟁을 피하려는 정부의 의지라고 평가할 수 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9141호, 2008.12.19,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별표에 규정된 죄(이하 “중대범죄“라 한다)와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이 경우 중대범죄 및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가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想像的 競合)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죄를 포함하며,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2호나목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고 행위지(行爲地)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
(이하 생략)
[별표] <개정 2008.12.19.>
중대범죄(제2조제1호관련)
...(생략)
9. 「상표법」 제93조, 「저작권법」 제136조제1항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46조제1항제1호의 죄
...(생략)

Ⅱ. 독점ㆍ무역관련 개정 법률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제11119호, 2011.12.2, 일부개정)

공정거래법은 FTA에 따른 시장환경의 변화와 경쟁자의 확대, Global Standards에 합치하는 불공정성의 제거를 위하여 많은 개선이 있었던 분야였다. 특히 해외 선진국의 제도를 민감하게 분석하고 국제적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였고, 새로운 제도를 과감하게 도입하면서도 국제사회와의 교류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 경쟁법’의 흐름을 신속하게 반영하였다.

법률 제11119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FTA 체결에 민감한 국내시장의 자율적 경쟁보장과 국내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개선내용을 명시하였다. 특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동의의결제 등을 도입하면서 관련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장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및 경쟁질서 회복이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목표로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동의의결제를 도입(제51조의2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된 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한 시정방안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그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아울러 동의의결의 절차(제51조의3 신설)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의의결의 사후관리(제51조의4 및 제51조의5 신설)에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으며,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19호, 2011.12.2, 일부개정]
<신 설>	**제51조의2(동의의결)** 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당해 조사나 심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이하 이 조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에서 "해당 행위"라 한다)로 인한 경쟁제한상태 등의 자발적 해소, 소비자 피해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동의의결을 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심의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가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인 경우 2. 제71조(고발)제2항에 따른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동의의결이 있기 전 신청인이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행위를 특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 2. 해당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3.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정방안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행위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정방안(이하 "시정방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 관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시정방안과 같은 취지의 의결(이하 "동의의결"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시정방안을 수정할 수 있다. 1.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룰 것 2.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될 것 ④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은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것을 의미하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신청인이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해당 행위가 이 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신 설>	**제51조의3(동의의결의 절차)** ① 공정거래위

	원회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기 전에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관보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개요 2. 관련 법령 조항 3. 시정방안[제51조의2(동의의결)제3항 후단에 따라 시정방안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시정방안을 말한다] 4. 해당 행위와 관련하여 신고인 등 이해관계인의 이해를 돕는 그 밖의 정보. 다만, 사업상 또는 사생활의 비밀 보호나 그 밖에 공익상 공개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찰총장과는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을 하거나 이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37조의3(전원회의 및 소회의 관장사항)의 구분에 따른 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동의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제4항의 의결에 따라 동의의결의 이행계획과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1조의2(동의의결)제2항에 따른 서면의 신청 방법, 의견 조회 방법, 심의·의결 절차 등 그 밖의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 설>	**제51조의4(동의의결의 취소)**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취소할 수 있다. 1. 동의의결의 기초가 된 시장상황 등 사실관계의 현저한 변경 등으로 인해 시정방

	안이 적정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신청인이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하여 동의의결을 하게 되었거나,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의의결을 받은 경우 3.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동의의결을 하여줄 것을 신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동의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중단된 해당 행위 관련 심의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8933호, 2008.3.21, 일부개정)

무역구제법분야 역시 공정거래법과 마찬가지로 FTA 현상에 매우 민감하게 변화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가 체결하는 FTA에 관련 특별법을 마련하여 적응하기도 하였으며, 관세법의 특례규정에 따라서 새로운 대응방법을 찾기도 하였다. 그러나 늘어나는 FTA 체결에 원칙을 수립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수적이었다. 특히 한-미, 한-EU FTA의 체결에 따라서 이러한 요구는 강조되었다.

법률 제8933호에 의하여 일부 개정되어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은, 불공정한 무역행위를 신속하게 바로잡기 위하여 무역위원회에 신청된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판정하는 기간을 명확히 정하고, FTA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산업에 대하여는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

선 · 보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기간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여부 조사에 대한 판정시한이 없었고, 그 기간이 상황 변화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제9조에서는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판정을 하여야 하며,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2개월의 범위에서 2회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의 판정기간을 명시함으로써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FTA 확대와 관련하여 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의 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된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이 수출입 거래경로의 변경 등을 통하여 계속 거래되더라도 동일한 조사 · 판정절차를 통해 제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무역위원회에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무역위원회는 해당 물품과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과의 동일성 여부, 정당한 권리 취득 여부만을 기초로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간략한 절차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확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지식재산권침해물품 등으로 판정된 물품을 거래하려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동일한 불공정무역행위의 재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22조의4를 신설하여 FTA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배제를 규정하였다. 이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협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외국과 양자간 체결한 FTA에서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다자간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이다. 무역위원회가 그 대상국가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여 심각한 피해가 인정되지 아니하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FTA로 인한 특정 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제22조의5 신설)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외국과의 FTA 이행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행 세이프가드조치 외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필요가 있다. 무역위원회는 FTA 체결상대국의 특정 물품 수입 증가로 무역피해를 입은 국내산업의 이해관계자 등이 조사 신청을 하면 해당 산업이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고, 무역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에 필요한 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33호, 2008.3.21, 일부개정]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부터 1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건의)** ① - - - - - - 제16조에 따른 조사 결- 판정하면 - - - - - - - - 1개월 - - - - - - - 각 호의 어느 하나- 시행-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의 건의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하 "구조조정촉진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 - - - - - - 세이프가드조치- - - - - -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③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4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아니 된다.
④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가 관련 산업, 국내물가, 소비자의 이익, 통상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 - - - - - -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결정할 때에는 해당 - - - - - - - - - - - - - - - 국내 물가- -.
⑤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 및 그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하는	⑤ - - - - - - - 제1항에 따라 - - - - - - - - - - - - - - - - - 결정할 때에는 해당 - 산업구조의 조

데 필요한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로 한정하여야 - - .
제18조(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무역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잠정적으로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잠정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잠정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건의)** ① - - - - - - 제16조에 따른 조사기간 중에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 물품- 조사기간 중-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② 잠정세이프가드조치- - - - - - - - - - - - - - - - - - - .
<신 설>	**제18조의2(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 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세이프가드조치·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1월 이내에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이프가드조치·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주요 이해당사국과의 협의, 법령의 개정 등의 준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준비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9조(세이프가드조치 등의 시행 및 해제)** ① - 건의받으면 1개월 이내에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 - - - - - - - - - - - - - - .- 구조조정촉진조치를 시행하기 - 필요하면 - - - - - 걸리는 기간은 전단의 1개월에 포함하

	지 - - - - -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제통상 관계와 국민경제 및 산업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세이프가드조치나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 - - - - - - - - - - - - - - - - 산업 전반- .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주기로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점진적으로 완화하여야 한다.	③ - 이상이면 일정기간을 주기로 그 조치를 점차 - - - - - - -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무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 소멸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정하면 - - - - - - - - - - - - - - - - - - - .
⑤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180일 이내의 세이프가드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⑤ - 대하여 그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끝난 - 지나기 -.- - - - - - -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 - - - - - - -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 - - - - - - - - - - - - - - - - - -.
1.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될 것	1. 해당 - 지날 -
2. 세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시행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일 것	2. - 해당 -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①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여부를 다시 검토(이하 “중간재	**제20조(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 ① - 초과하면 - - - - - - - - - - - 지나기 - 해제 여부- - -

검토"라 한다)하여야 한다.	- -.
②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 판정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 - .
③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③ - 판정하면 - - - - - - -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 - - - - - - - - - - -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 - - - - - - - - - - -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 제2항- - - - - - -.
제20조의2(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①무역위원회는 시행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이 있는 경우 조치연장 등의 건의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제20조의2(세이프가드조치의 연장 등 검토)** ① 무역위원회는 시행 중인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으면 조치 연장 등의 건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중에 있다는 증거가 있고,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당해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월 이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의 연장을 건의할 수 있다.	② - - - - - - -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국내산업이 구조조정 중- 판정하면 해당 세이프가드조치의 종료일부터 1개월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와 함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조조정촉진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 - - - - - - - 제2항에 따른 건의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 .
④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때에는 현재 시행중인 조치가 종료되기 전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로부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으면 현재 시행 중인 조치가 끝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우 변경되는 조치내용 및 연장되는 적용기간내의 조치내용은 최초의 조치보다 완화되어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이프가드조치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최초의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을 포함한다)과 그 연장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 - - - - - - - - - - - - 적용기간 내- -. ⑤ 제4항에 따라 - 연장하는 경우- 더- - - - - - - - - - - - - - - - 아니 된다.
제21조(섬유 및 의류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이 적용되는 섬유 및 의류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섬유수입수량제한의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이 조에서 "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기간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신청인으로부터 조사신청물품에 대하여 잠정적인 조치를 신청받은 경우로서 그 조사기간중에 발생하는 피해 등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잠정적으로 섬유수입수량제한의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이	<삭 제>

조에서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또는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섬유세이프가드조치 및 잠정섬유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외국인에 의한 서비스의 공급증가로 인하여 동종의 서비스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당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조(서비스에 관한 세이프가드조치)** ① - - - - - - - - - - - - 공급 증가로 같은 종류- 있으면 해당 - - - - - - - - - - - - - - - - - - 그- 무역위원회에 해당 -.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조사의 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조사를 통하여 당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이하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 및 그 기간을 결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② - - - - - - -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조사 결과 해당 - 판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 - - - - - - - - - - -.
③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은 때에는 그 시행여부·조치내용 및 그 기간을 결정하고 이를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무역위원회로부터 서비스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건의받으면 해당 조치의 시행 여부, 조치내용 및 조치기간을 결정하고 무역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세이프가드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의 개시여부 결정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 개시여부 - .
제22조의2(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①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회원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세이프가드조치(이하 "특별세이프가드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3. (생 략) ② ~ ⑥ (생 략)	**제22조의2(세계무역기구의 특정 회원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① - 회원국중 대통령령으로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 그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 한다)를 시행하기 - - - - - - - - - - - - - - . 1. 해당 물품의 수입 증가로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의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또는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4(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 ① 자유무역협정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로서 무역위원회가 제16조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를 조사할 때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의 특정 물품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별도로 조사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지 아니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이프가드조치 적용배제의 대상국가, 적용배제의 요건, 조사절차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에 대한 무역피해지원조치)** ①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으로부터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같은 종류의 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거나 입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무역피해"라 한다)가 있으면 해당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또는 해당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무역위원회에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조치(이하 "무역피해지원조치"라 한다)의 시행을 위한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른 무역피해의 조사 및 판정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 중 "제15조"를 "제22조의5제1항"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정 물품의 수입이 해당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미치는지"를 "무역피해에 해당하는지"로 본다. ③ 무역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무역피해가 있다고 판정하면 그 판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행을 건의할 수 있다. ④ 무역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무역피해지원조치를 결정할 때에는 해당 국내산업의 무역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산업구조의 조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시행 및 해제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잠정세이프가드조치 또는 구조조정촉진조치"는 각각 "무역피해지원조치"로 보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세이프가드조치"는 "무역피해

	지원조치"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역피해지원조치의 조사신청 절차, 국내산업의 범위,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조사 및 판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6(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협력)** 무역위원회는 자유무역협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을 위한 산업피해의 조사 등 산업피해의 구제와 관련된 업무(「관세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로 정한 것은 제외한다)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상대국과 필요한 협력을 할 수 있다.

3. 대외무역법(법률 제9630호, 2009.4.22, 일부개정)

FTA 확대에 따라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무역환경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무역규범의 기초를 제공하는 대외무역법에 있어서도 나타났다. 2009년 개정된 대외무역법은, 이러한 목표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였다. 즉, 선진 무역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통보 의무 등을 폐지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는 등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며,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등에 대한 면제ㆍ취소 등의 사유를 정하는 등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통제 제도를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 협력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7조 제2항). 아울러 기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기업의 해외 진출에 대한 지원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였다(제8조). 장관이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나 전문무

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도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였다. 한편, 장관이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9조).

물품 등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확인의무 및 전략물자에 대한 신고ㆍ통보 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으며(현행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삭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제의 올바른 정착 및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입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던 것을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화하였다(제33조제5항).

대외무역법 [법률 제9221호, 2008.12.26, 일부개정]	대외무역법 [법률 제9630호, 2009.4.22, 일부개정]
제9조(종합무역상사 등의 지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무역 기능을 다양화하며, 중소기업과의 계열화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무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종합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첨단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역거래자 중에서 전문무역상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한 자료 제출)**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우리나라가 체결한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역에 관한 조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직무상 습득한 자는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그 습득한 자료 중 기업의 영업비밀 등 비밀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漏泄)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자간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재외공관에서 사용될 공용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면제할 수 있다.
<신 설>	⑥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허가 또는 상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전쟁, 테러 등 국가 간 안보 또는 대량파괴무기 이동·확산 우려 등과 같은 국제정세의 변화

Ⅲ. 조세 관련 규범의 개정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06호, 2011.6.30, 일부개정 / 법률 제11107호, 2011.12.2, 일부개정)

FTA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은 FTA의 체결로 인하여 관세특혜를 받게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제정 이후에도 이미 2번의 개정을 거쳤다. 법률 제10806호의 일부개정은 한-EU FTA 체결을 원인으로 하였고, 법률 제11107호의 일부개정은 한-미 FTA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법률 제10806호의 일부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주요 내용은 일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법률 제11107호의 일부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내용은 미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림축산물

에 대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18호, 2010.1.1, 일부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06호, 2011.6.30, 일부개정]
<신 설>	**제7조의3(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과의 협정에 따라 양허(讓許)한 특정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일정한 물량(이하 이 조에서 "기준발동물량"이라 한다)을 초과하면 그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이하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조치의 대상물품ㆍ기준발동물량ㆍ세율ㆍ적용기간 및 적용방법 등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관세법 (법률 제11121호, 2011.12.31, 일부개정)

법률 제8833호로 2007년 일부 개정되어 2008년 1월 1일에 시행된 관세법은, 보세공장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원료에 대한 과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며, 저작권 등에 대하여도 상표권과 같이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었다. 또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에 대하여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도 개정의 목적이었다.

특히 FTA 확대에 따른 개정의 내용이 두드러진다. 즉 FTA 체결의 확대 등으로 원산지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가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다(제233조의2 신설). 관세청장이 원산지

확인, 결정 및 검증 등의 업무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분석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그것이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인한 규범의 개선도 이루어졌다. 즉, 저작권 등에 대한 보호 강화(제235조)와 관련하여, 저작권 등의 경우 상표권과는 달리 통관단계에서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조상품 등에 대하여도 통관이 허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표권의 경우와 같이 저작권 등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통하여 저작권 등을 침해한 물품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저작권 등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며,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이나 불법복제된 물품은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관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밖에 수출입 안전관리 강화 및 신속한 통관을 위한 민·관 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가 우수한 업체에게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보완하였다(제255조의2 신설). 즉, 제조·운송·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에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관세청장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통관절차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다른 국가와 상호인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세법 [법률 제8367호, 2007.4.11, 타법개정]	**관세법** [법률 제8833호, 2007.12.31, 일부개정]
제235조(지적재산권 보호) ①「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제235조(지식재산권 보호)** ①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이하 "상표권"이라 한다)을 침해하거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또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에 따른 프로그램저작권(이하 이 조에서 "저작권등"이라 한다)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다.
②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	② ------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을 -------------------- ---------- 때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 또는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

	로그램 보호법」에 따라 저작권등을 - - - - - - - - - - 상표권 또는 저작권등 - .
③세관장은 수출입신고된 물품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표권을 신고한 자에게 수출입신고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상표권신고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수출입신고된 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상표권 및 저작권등- 상표권 및 저작권등- -.- - - - - - - - - - - - 상표권신고자 및 저작권등신고자- -.
④상표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물품의 통관의 보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상표권 및 저작권등- -.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신고를 한 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을 요청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⑤ - . -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제외하고는 해당 - - - - - - - - - - - - - - - - .
<신 설>	1. 위조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착한 물품
<신 설>	2. 저작권등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된 물품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에 관한 신고, 담보제공, 통관의 보류 및 허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 - - - - - - 상표권 및 저작권등- -.
⑦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이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⑦ - - - - - - - - - - - - - - 상표권 및 저작권등- -.- .

⑧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삭 제>

3.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1106호, 2011.12.2, 일부개정)

법률 제11106호, 2011.12.2, 일부 개정되어 2012.3.15.부터 시행된 개별소비세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배기량이 2000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발효한 해에는 100분의 8, 발효한 해의 다음 해에는 100분의 7, 발효한 해의 다음다음 해에는 100분의 6, 그 이후에는 100분의 5로 연차적으로 인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0789호, 2011.6.7, 타법개정]	**개별소비세법** [법률 제11106호, 2011.12.2, 일부개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생 략)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씨씨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 100분의 10 나. (생 략) 4.·5. (생 략) ③ ~ ⑫ (생 략)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현행과 같음) ② --. 1.·2. (현행과 같음) 3. --. 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4. 지방세법 (법률 제11108호, 2011.12.2, 일부개정)

법률 제1110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에서는 한-미 FTA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였다.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였다.

<table>
<tr><th>지방세법
[법률 제10924호, 2011.7.25, 타법개정]</th><th>지방세법
[법률 제11108호, 2011.12.2, 일부개정]</th></tr>
<tr><td>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자동차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u>1. 승용자동차</u>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table>
<tr><th colspan="2">영업용</th><th colspan="2">비영업용</th></tr>
<tr><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r>
<tr><td>1,000시시 이하</td><td>18원</td><td>800시시 이하</td><td>80원</td></tr>
<tr><td>1,600시시 이하</td><td>18원</td><td>1,000시시 이하</td><td>100원</td></tr>
<tr><td>2,000시시 이하</td><td>19원</td><td>1,600시시 이하</td><td>140원</td></tr>
<tr><td>2,500시시 이하</td><td>19원</td><td>2,000시시 이하</td><td>200원</td></tr>
<tr><td>2,500시시 초과</td><td>24원</td><td>2,000시시 초과</td><td>220원</td></tr>
</table>
2. ~ 7. (생 략)
②·③ (생 략)
</td><td>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
<u>1. 승용자동차</u>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시시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으로 한다.
<table>
<tr><th colspan="2">영업용</th><th colspan="2">비영업용</th></tr>
<tr><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h>배기량</th><th>시시당 세액</th></tr>
<tr><td>1,000시시 이하</td><td>18원</td><td>1,000시시 이하</td><td>80원</td></tr>
<tr><td>1,600시시 이하</td><td>18원</td><td>1,600시시 이하</td><td>140원</td></tr>
<tr><td>2,000시시 이하</td><td>19원</td><td>1,600시시 초과</td><td>200원</td></tr>
<tr><td>2,500시시 이하</td><td>19원</td><td></td><td></td></tr>
<tr><td>2,500시시 초과</td><td>24원</td><td></td><td></td></tr>
</table>
2. ~ 7.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td></tr>
</table>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08호, 2011.6.30, 일부개정)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한-EU FTA는 한국의 국내규범에 많은 사항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지식재산법에 대한 다방면의 보호는 특히 한-EU FTA에 따라서 여러 법분야에서의 개정을 낳았다. 법률 제108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이와 같이 한-EU FTA의 내용을 많이 반영하였다.

즉,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안으로의 반입과 자유무역지역 밖으로의 반출을 금지하였다. 그 침해물품에 대한 단속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통관 보류 및 유치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는데, 이 내용 역시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90호, 2011.4.14, 일부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08호, 2011.6.30, 일부개정]
<신 설>	**제41조의2(지식재산권의 보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하거나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1.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2.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3. 「종자산업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 4. 「농산물품질관리법」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조약·협정 등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지정된 지리적표시권 또는 지리적표시 5. 「특허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특허권 6.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②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235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수출입"은 "반입·반출"로, "통관 보류"는 "반입·반출 보류"로, "환적, 복합환적"은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이적"으로, "수출입신고"는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출신고 및 국외반출신고"로, "환적 또는 복합환적신고된 물품"은 "제2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료를 제출한 물품"으로, "보세구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본다.

Ⅳ. 특허권의 강화를 원인으로 한 개정

1. 실용신안법 (법률 제11114호로 2011.12.2, 일부개정)

법률 제11114호로 2011년 일부 개정된 실용신안법은 한-미 FTA의 체결에 따른 국내법의 변화를 반영하였다. 즉,「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실용신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하면서,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였다.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는 것도 개정의 내용으로 하였다.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을 위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고안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실용신안등록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였다(제5조 제1항). 또한 등록실용신안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실용신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였다(제28조).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였다. 아울러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제44조)하여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는 「특허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용신안에도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실용신안법 [법률 제10502호, 2011.3.30, 일부개정]	**실용신안법** [법률 제11114호, 2011.12.2, 일부개정]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고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면 그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2. (생 략) ② (생 략)	**제5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고안으로 보는 경우)** ① - 12개월 - 제2항을 적용할 때 - .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0809호, 2011.6.30, 일부개정 / 법률 제11111호, 2011.12.2,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은 FTA와 관련하여 2번의 개정을 거쳤다. 법률 제10809호의 일부개정은 한-EU FTA 체결을 원인으로 하였고, 법률 제11111호의 일부개정은 한-미 FTA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법률 제10809호로 일부 개정된 디자인보호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였다. 즉, 디자인의 실시행위, 등록디자인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 행위 및 재심에 따라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여 등록디자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법률 제11111호의 일부 개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하렸다. 즉, 법원이 디자인권 등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0809호, 2011.6.30,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1111호, 2011.12.2, 일부개정]
<신 설>	**제81조의2(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81조의3(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

	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81조의4(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이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85조의2(비밀유지명령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의2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10호, 2011.6.30, 일부개정, 법률 제11112호, 2011.12.2,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FTA와 관련하여 2번의 개정을 거쳤다. 법률 제10810호의 일부개정은 한-EU FTA 체결을 원인으로 하였고, 법률 제11112호의 일부개정은 한-미 FTA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이었다.

법률 제10810호로 일부 개정된 내용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FTA에 따라 보호하는 지리적 표시의 사용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었다. 즉, 지리적 표시의 침해에 대한 금지예방, 손해배상 등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지리적 표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한 업무를 특허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공동사무로 조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제11112호로 일부 개정된 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으로 하여금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인한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는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비밀유지명령 신청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 등도 규정되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10호, 2011.6.30, 일부개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112호, 2011.12.2, 일부개정]
<신 설>	**제14조의4(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부정경쟁행위, 제3조의2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 이익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신 설>	**제14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신청이 그 기간 내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청구절차를 행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 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18조의4(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4. 특허법 (법률 제11117호, 2011.12.2, 일부개정)

법률 제11117호로 2011년 일부 개정되어 2012년 3월 15일부터 시행된 특허법은 한-미 FTA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즉,「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특허권 설정등록 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와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한 것이 주요 개정내용이다. 또한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려는 것이 목적도 있었다.

공지예외 적용시기를 연장하고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제30조 제1항, 제116조 삭제)하여,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 전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경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그 예외인정 기간을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특허발명의 불실시를 이유로 한 특허권 취소제도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도입하였다(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 신설). 즉,

특허출원인으로 인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인의 청구에 따라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FTA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변화는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제224조의3부터 제224조의5까지 신설)이다. 특허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등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그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허법 [법률 제10716호, 2011.5.24, 일부개정]	특허법 [법률 제11117호, 2011.12.2, 일부개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① - 12개월 이내-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9조(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생 략) <신 설>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허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제1항의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 설>	**제92조의2(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일부터 4년과 출원심사 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제8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은 제1항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출원인으로 인하여 실제 지연된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서 "출원인으로 인하여 지연된 기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제34조, 제35조,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199조제1항 및 제2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1.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한 날 2. 제52조에 따른 분할출원의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한 날 3. 제53조에 따른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변경출원을 한 날 4. 제199조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제20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날 5. 제214조에 따라 특허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국제출원의 출원인이 제214조제1항에 따라 결정을 신청한 날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그 특허출원일
<신 설>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모두 소명한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

	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영업비밀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그 신청 시점까지 다른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해당 소송으로 인하여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가 제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의 열람이나 증거 조사 외의 방법으로 그 영업비밀을 이미 취득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미 제출하였거나 제출하여야 할 준비서면 또는 이미 조사하였거나 조사하여야 할 증거에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2. 제1호의 영업비밀이 해당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공개되면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사용 또는 공개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영업비밀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5. 약사법 (법률 제11118호, 2011.12.2, 일부개정)

FTA의 확대는 약사법에도 변화를 주었다. 법률 제11118호로 일부 개정된 약사법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특허권자 등에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다. FTA 시대에 안정적인 의약품 관리와 국제분쟁의 발생가능성을 줄이려는 시도이다.

즉,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및 공고(제31조의3 신설)를 규정하여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나 존속기간 등의 정보를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특허권이 일정한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사실의 통지제도(제31조의4 신설)를 정리한 것도 중요한 사항이다. 이러한 통지제도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신청한 자는 그 사실을 의약품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특허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다.

약사법 [법률 제10888호, 2011.7.21, 타법개정]	약사법 [법률 제11118호, 2011.12.2, 일부개정]
<신 설>	**제31조의3(의약품 특허목록)** ①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특허권자, 존속기간, 권리범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특허정보”라 한다)을 의약품 특허목록(이하 “특허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받으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을 받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허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이하 "등재의약품"이라 한다)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는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를 변경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변경 등재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 등재 신청의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특허목록에 등재된 특허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이 제2항에 따른 대상 및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서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미리 해당 등재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특허목록에 등재한 경우나 등재의약품에 관한 특허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허목록 등재, 등재된 특허정보의 삭제·변경 및 특허목록 공고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6. 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 법률 제11110호, 2011.12.2, 일부개정)

저작권법은 FTA에 따른 변화가 많은 법이다. 법률 제10807호에 의한 일부개정에서는 한-EU FTA 체결로 인한 국내법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즉, 이 개정에서는「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 일정한 범위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하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면책범위를 유형별

로 세분화하고,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하려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한 것(제39조)과 공중의 접근이 가능한 장소에서 방송의 시청과 관련하여 입장료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방송사업자의 공연권을 인정한 것(제85조의2 신설)이 대표적이다. 또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단순도관, 캐싱, 호스팅, 정보검색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별 면책요건을 명확히 하였다(제102조제1항).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금지하되,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설정한 것도(제104조의2 신설) 중요한 사안이었다.

법률 제11110호의 개정은 한-미 FTA의 내용을 반영한 것이었다.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에 따라 일시적 저장의 복제 인정,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 도입, 위조라벨 배포행위 등 저작권자 권리침해행위 금지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등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 개정의 주요내용은 일시적 저장을 복제의 범위에 명시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제2조 제22호, 제35조의2 및 제101조의3 제2항 신설)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도를 도입(제35조의3 신설)하여,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조화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면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배타적 발행권을 도입[제7절(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및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7절의2(제63조 및 제63조의2) 신설]하여, 출판권과 프로그램 배타적발행권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는 배타적 권리를 모든 저작물의 발행 및 복제ㆍ전송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인접권 보호기간을 연장하여 방송을 제외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2013년 8월 1일부터 50년에서 70년으로 확대하였다(제86조 제2항).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요건을 구체화(제102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 신설)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요건으로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의 계정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제도를 도입(제103조의3 신설)하여 권리주장자가 소 제기 등을 위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ㆍ전송자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 적용에 따른 저작권자 보호도 강화되었다. 저작권자의 권리침해 행위를 금지(제104조의4부터 제104조의7까지 신설)하면서, 저작권자의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화된 방송 신호를 무력화하는 행위, 위조라벨을 배포하는 행위,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녹화ㆍ공중송신하는 행위 및 방송 전 신호를 제3자에게 송신하는 행위 등을 금지대상으로 명시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도의 도입(제125조의2 신설)도 강화된 내용이다. 불법행위에 대하여 실손해배상원칙에서, 신속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실손해 배상과 법정손해배상 중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정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 등을 갈음하여 침해된 각 저작물 등마다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다.

정보제공 명령제도를 도입(제129조의2 신설)하여,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에게 그가 보유하고 있는 불법복제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다른 당사자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경우 등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FTA에 따라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에 일반화된 비밀유지명령제도도 저작권법에 도입되었다(제129조의3부터 제129조의5까지 신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해당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수행 외의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국제조약 규정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1987년 7월 1일부터 1994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을 발생한 때의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0년간 존속하도록 하였다는 점도 저작권 관련 개정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저작권법 [법률 제9785호, 2009.7.31, 타법개정]	저작권법 [법률 제10807호, 2011.6.30, 일부개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 - 저작자가 - - - - - - - - - 사망한 후 70년간 - - - - - . <단서 삭제> ② -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 - - - - .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 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제40조(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의 보호기간)** ① - 70년간 - - - - - .- 70년이 지났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이 지났다-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70년간 - - - - - .- 70년간 - - - - - .
제42조(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은 제39조 및 제40조에도 불구하고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한 때부터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영상저작물- 70년간 - - - - - .- 70년간 - - - - - .

7. 상표법 (법률 제10811호, 2011.6.30, 일부개정, 법률 제11113호, 2011.12.2, 일부개정)

상표법 역시 FTA 체결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었다. 법률 제10811호로 일부 개정된 상표법은 한-EU FTA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협정에 따라 보호되는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 침해행위에 대한 몰수 대상 품목에 침해물의 제작에 사용된 재료를 추가하는 한편,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명시하였다.

한편 법률 제11113호로 개정된 상표법은 한-미 FTA의 내용을 반영하였다. 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합의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에서는 소리·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포함하고, 상품에 대한 정확한 품질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증명표장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용상표사용권 등록제도를 폐지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전용사용권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 것도 권리보호를 위한 개선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시각적인 표장인 소리·냄새를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신설), 소리·냄새 등 비시각적인 표장이라 하더라도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은 상표의 범위에 추가하여 이 법에 따라 등록되고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다.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한 증명표장 신설(제2조 제1항 제4호 신설 등)하여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품질, 원산지, 생산방법 등의 특성을 증명하는 증명표장제를 도입하여 상표의 품질 보증기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도 특징이다.

전용사용권의 등록 의무제도를 폐지하여(제56조 및 제58조), 그동안 상표사용권 중 전용사용권은 등록을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고 있어 등록하지 않는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등록하지 않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고 등록을 제3자 대항요건으로 변경하여 상표사용권자의 보호를 강화하였다.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것(제67조의2 신설)도 중요한 부분이다.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의 입증이나 손해액을 추정하기 곤란한 경우 상표권자 등의 권리 보호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5천만원 이하의 손해액에 대하여는 상표권자 등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다. 상표권자 등이 실손해액과 법정손해액 중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른 지식재산 관련 규범과 마찬가지로,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제92조의7부터 제92조의9까지 신설)하여 상표권의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한 비밀유지를 가능하도록 하였다.

상표법 [법률 제10358호, 2010.6.8, 일부개정]	상표법 [법률 제10811호, 2011.6.30, 일부개정]
제97조의2(沒收) ①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에 제공되거나 그 침해행위로 인하여 생긴 상표·포장 또는 상품과 상표 또는 포장의 제작용구는 이를 몰수한다. ② (생 략)	**제97조의2(沒收)** ① - 포장 또는 상품(이하 이 항에서 “침해물”이라 한다)과 그 침해물 제작에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공된 제작 용구 또는 재료-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Ⅴ. 전문자격사에 관한 법률

1. 세무사법 (법률 제10805호, 2011.6.30, 일부개정)

한-EU FTA 체결 이후 세무사법에 변화가 있었다. 즉, 세무사 업무 중 일부를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 및 등록(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6까지 신설)을 신설하여, 부적격한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기획재정부 등록을 통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

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하고,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 범위 및 수행 방식과 관련하여, FTA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활동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세무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였다(제19조의7 및 제19조의8 신설). 즉, 국내에 등록된 외국세무자문사는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대한 상담이나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그 업무는 개인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외국회계법인 사무소 또는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제19조의9 신설)을 위하여 부적격한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따라서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에 등록하여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국세무자문사 등의 의무도 규정하였다(제19조의12 및 제1조의13 신설).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의무와 금지사항을 명확히 정하여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외국세무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도록 하고, 원자격국에서 받은 행정처분 등을 신고하여야 하며, 외국세무자문사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국내 세무사를 고용할 수 없도록 하였다.

세무사법 [법률 제10624호, 2011.5.2, 일부개정]	세무사법 [법률 제10805호, 2011.6.30, 일부개정]
<신 설>	**제19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세무자문사”란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제19조의3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3. "외국세무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세무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한다. 4.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란 외국세무법인이 국내에서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5. "조약등"이란 자유무역협정이나 그 밖에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제19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모든 합의를 말한다. 6. "원자격국"(原資格國)이란 조약등의 당사국으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성(省)·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성·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신 설>	**제19조의3(외국세무자문사 자격승인)** ①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로서 외국세무자문사가 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의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자격승인 신청인"이라 한다)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세무전문가의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4조에 따른 세무사의 결격사유가 없으며, 성실하고 적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음을 서약하는 서류

	4. 대한민국에 서류 등을 송달받을 장소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첨부서류는 원본 또는 인증된 사본이어야 하고, 한글로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증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원자격국의 세무전문가의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자격승인 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9조의7(업무범위)** 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외국법자문사법 (법률 제9524호, 2009.3.25, 제정)

한-미, 한-EU FTA 등의 굵직한 FTA 체결은 국내법조시장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FTA뿐만 아니라 도하개발아젠다(DDA) 서비스협상 등 WTO 차원의 국제규범의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서비스 유형 중 교역이 가능한 외국법자문업을 제도적으로 대외 개방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분야의 대외 개방에 관하여 FTA에서 합의된 내용대로 외국법자문사(外國法諮問士)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로펌(Law Firm)의 국내 사무소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사항이 국내법에 필요하였다. 이러한 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서비스의 국제화와 선진화를 촉진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고급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철저히 하려는 것이 외국법자문사법의 제정취지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국법자문사 자격 창설 및 외국 로펌의 사무소 설립 허용(제2장 및 제4장)과 관련하여, FTA 등의 당사국의 공인된 법률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 별도로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조

건 아래 외국법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외국법자문사 제도를 창설하고, 외국 로펌이 일정한 요건 아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개설하여 외국법사무에 관한 영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 등록 등의 규정(제3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은 외국법자문사의 관리에 관한 내용이다. 외국법자문사가 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의 자격승인을 받도록 하고, 자격승인을 받으려는 자를 외국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법률 사무를 수행한 자로 제한하되, 자격승인 신청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원자격국법에 관한 조사 · 연구 · 보고 등의 사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직무경력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외국법자문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도록 하였다. 경험과 실력이 빈약한 외국변호사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여 국내 법률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 등에 관한 규정(제15조부터 제23조까지)은 외국 로펌 등의 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외국법자문사는 법무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를 받은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설립인가취소권을 가지며,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등록도 취소된 것으로 본다./ 또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 등에 관한 내용,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 등의 가입, 수임장부 작성 및 보관 등도 규정을 마련하였다.

외국법자문사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업무 범위와 수행 방식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및 제34조)은 외국법자문사의 사무 범위와 업무수행 방식을 명확히 하고 변호사 등과의 동업을 금지하도록 하여 통상협상의 합의 내용에 따른 제1단계 법률시장 개방을 제도적으로 실현하는 내용이다. 외국법자문사는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아닌 소속 외국법자문사 또는 국내 변호사 · 법무법인 · 법무법인(유한) · 법무조합 소속 외국법자문사로서, 원자격국의 법령에 관한 자문, 원자격국이 당사국인 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관습법에 관한 자문 및 국제중재사건의 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단계적 시장 개방의 취지에 따라 국내 변호사 등과 업무제휴 · 동업 및 고용 관계는 맺을 수 없다.

외국법자문사의 직무상 자격 표시(제27조)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또는 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의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국내 소비자의 혼란과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둘 필요가 있었다. 외국법자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을 표시할 때 원자격국 명칭에 이어 '○○법자문사'로 표시하고, 원자격국어로 된 원자격국의 명칭을 포함한 해당 외국변호사의 명칭을 부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는 본점의 명칭에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를 부기하도록 하고, 사무소 안팎에 소속 외국법자문사 및 원자격국을 표시하며, 수임 전 의뢰인에게 원자격국과 업무 범위를 알려야 하고, 직무 범위에 오해를 일으킬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외국법자문사의 국내 체류, 비밀유지 및 법조윤리 준수 의무(제28조부터 제31조까지)와 관련하여, 외국법자문사가 국내에서 법률전문직으로서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법률서비스 대외 개방에 따른 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었다. 외국법자문사는 1년에 18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여야 하고, 직무 관련 비밀을 지켜야 하며, 광고에 관한 규정 및 국내 법조윤리를 준수할 의무 등을 정하였다. 이밖에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징계와 벌칙규정을 두어(제36조부터 제53조까지) 금지 규정의 실효성 및 가벌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였다.

3.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0812호, 2011.6.30, 일부개정)

FTA 체결확대로 공인회계사 제도에도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특히 한-EU FTA 체결로 회계서비스 분야 중 일정 부분을 협정체결국에 개방하기로 함에 따라서, 국내에서 활동하게 될 외국공인회계사와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등록 및 관리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이 필요하였다.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원자격국 회계법 또는 국제회계법 및 기준에 관한 자문으로 한정하였다(제40조의3 신설).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의 등록(제40조의4부터 제40조의8까지 신설)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에 대한 관리 · 감

독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외국공인회계사 및 외국회계법인이 국내에서 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 관리,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외국 공인회계사의 활동유형을 명확히 정하여 회계시장 개방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국내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외국공인회계사의 업무수행 방식을 FTA 규정에 따라 국내에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사무소 개설, 외국회계법인 사무소에 고용되거나 국내 회계법인에 고용되는 방식으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0조의9 신설).

공인회계사법은 FTA 발효 후 5년이 경과된 후 외국공인회계사의 국내회계법인 출자를 허용하되, 국내 회계법인의 경영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제한하였(제40조의12 신설). 외국공인회계사가 국내 회계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 회계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1인당 출자한도는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으로 100분의 10 미만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0303호, 2010.5.17, 타법개정]	공인회계사법 [법률 제10812호, 2011.6.30, 일부개정]
제23조(設立) ①공인회계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23조(설립)** ① - - - - - - -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 - - - - - - - - - - - - - - - - .
②회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3. - - - - - - - 분사무소(分事務所)- - - - -
4. 사원 및 이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 - - - - - - - - - - - - - 주민등록번호(외국공인회계사인 사원은 외국인 등록번호) - - - -
5. 출자 1좌의 금액	5. - - - 1좌(座)- - - -
6. 각 사원의 출자좌수	6. - - - - - - 출자 좌수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결손금 보전에 관한 사항	8. - - - - 보전(補塡)- - - - - -

9. ~ 11. (생 략) 12.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및 사유	9. ~ 11. (현행과 같음) 12. 존립 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신 설>	**제40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공인회계사"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갖추고 등록한 공인회계사 중 제40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2. "외국회계법인"이란 대한민국 외의 국가에서 그 나라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그 본점 사무소가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중 제40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외국회계사무소"란 외국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제40조의3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에 개설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4. "원(原)자격국"이란 외국의 공인회계사 또는 외국회계법인이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친 국가(외국회계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사무소가 설치된 국가를 말한다)를 말한다. 다만, 한 국가 내에서 지역적으로 한정된 자격을 부여하는 여러 개의 주, 성(省), 자치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국가의 법률에 따라 그 자격이 통용되는 주, 성, 자치구 등의 전부를 원자격국으로 본다. 5. "조약 등"이란 자유무역협정 등 그 밖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이 외국(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 국가의 연합체를 포함한다)과 각 당사국에서의 공인회계사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효력이 발생한 일체의 합의를 말한다.

제2절 법률의 선진화를 위한 개선 제안

I.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개선안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일: 2012.09.03.)

FTA 체결에 따른 국내산업의 변화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인 취약산업의 피해와 이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FTA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하였다. 따라서 이미 한-칠레 FTA 체결 등에 따라서 발생하는 농어업인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어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특별기금의 설치 등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2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바 있다.

또한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과는 별도로, WTO 출범에 따른 농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일부 개정을 통하여 FTA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부채경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다만 이러한 법률들은 정부가 체결하는 FTA의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개정의 요구가 빈번했던 것이 사실이다. 현재 계류중인 경우와 마찬가지로 향후에도 체결되는 FTA의 내용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FTA 농어업지원 특별법은 2012년 9월에 개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폐업지원기간의 확대이다. FTA에 따른 폐업지원기간은 동법의 시행령 제11조에서 한·EU FTA 발효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주요 품목의 관세철폐는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폐업지원기간이 관세철폐기간에 비하여 짧다는 문제가 발생였다. 또한 폐업지원기간을 현행 5년과 같이 단기로 하는 경우에 해당품목의 관세철폐로 인한 불안심리가 작용하여 폐업신청이 일시에 집중될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이 법을 개정하여 폐업지원기간을 관세철폐기간에 부합하

게 하여 폐업지원의 실효성(實效性)을 높이고 폐업신청을 분산시킴으로써 국가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Ⅱ. FTA 기본원칙별 법령 선진화 방안

FTA의 확대에 따라서, 국내시장의 개방과 자율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국내법률과 이에 근거한 시행령 등이 새롭게 평가되어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FTA는 앞으로 계속 진행될 것이며 상대국과의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국내법률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해서 비합치의 문제를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아래에서는 이전에 제시한 FTA의 기본원칙 중에서 몇 가지를 기준으로, 비합치의 가능성이 있는 규범을 제시하고 개선의 방향을 제안한다.

1.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NT)원칙[101]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은 건설신기술에 대해 유사 외국도입기술에 비해 정부가 국내의 신기술에게 사실상 혜택을 부여하면서 활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FTA 서비스 부분에서 기본적인 내국민대우 또는 상대국과의 평등원칙에 비합치될 가능성이 있다.

<u><건설기술관리법></u> 제18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한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건설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1. <u>*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로서*</u>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2. <u>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서 국내에서</u>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

101)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자국의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자국의 기술개발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으나, 평등의 원칙 또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깨트리는 규정일 수 있다. 따라서 FTA 상대국으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또는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있다. Global Standards를 고려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율적이라고 평가되는 기술을 활용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혜택을 줄 수 있는 규정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2. 시장접근 제한 금지(Market Access; MA)원칙[102)]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등록제한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은 시장접근 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FTA 협정에 위배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여러 차례 지적되거나 사회적 논란이 되었고, 판례도 지나친 영업시간의 제한은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02) 외국인의 자국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원칙

물론 이러한 내용이 사회정서와 국내현실을 고려한 것임에는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쟁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이러한 규제보다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SMBD)103)

다수 지자체의 지방공기업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고위 경영층에 대한 국적 제한을 금지한 원칙을 고려하였을 때, 개선을 검토해야 할 사항일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 중 략 - ② 공사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4.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104)

한국의 다양한 강제적 경제정책은 상대적으로 FTA 등을 기초로 한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에 약점이 될 수 있다. 특히 부동산가격안정화 정책들은 협정 상대국 투자자에게 간접수용으로 규정되고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다음과 같다.

103) 고위 경영층(Top managerial personnel)의 국적에 대한 제한을 금지하는 원칙

104) '비위반(非違反) 제소' 또는 '비위반 청구'란 말 그대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징발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기본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따라서, 이러한 국가의 부동산 관련 규범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변화가 정부의 기능이나 국가주권의 제약을 가져온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겠으나, 되도록 FTA 상대방과의 분쟁의 가능성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며, 법률적 검토 후에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면 원칙을 가지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Ⅲ. FTA에 따른 법률의 개선제안 - 민사소송법 개정제안을 중심으로[105)]

FTA 확대에 따라서 법분야에서도 ‘법의 세계화’ 또는 ‘국제기준의 법’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경제의 상당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을 고려할 때, 특히 거래나 기업활동과 관련된 많은 국내법들은 이러한 현상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관련 국내법이 국제기준에 합치하여 국제거래나 무역문제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민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에서도 이러한 노력은 절실하다.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국내의 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법적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지만, 무역이 활성화될수록 민사문제는 다양하게 국제적 차원에서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도 국제관계를 고려한 보완의 대상인 것이다. 민사소송법은 2002년 이루어졌으나, 개정의 주요 내용은 민사소송제도의 국

105) 아래의 내용은, 김봉철, "기업의 국제적 활동을 위한 민사소송절차 개선의 필요성" 『법제연구』 42호, 한국법제연구원, 2012의 일부를 정리한 것임.

내운용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고, 무역과 국제거래의 확대에 따른 민사소송서비스의 국제적 제공을 위한 개선은 여전히 과제가 되었다.

FTA 체결로 각종 국제거래가 증가하고,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경제활동을 많이 하면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 법적 쟁송에 얽히는 상황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외국에서의 분쟁은 국내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기에 불리할 수도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실제로 국내의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국제경제활동에 제약으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국제소송경합 취급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의 신설과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의 개선에 관하여 실제로 민사소송법 개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국제재판관할권의 존중이라는 명제와도 연결되어 있으므로, 국내기업의 보호를 위하여 국내법원의 자의적인 관할권 인정도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국내기업이 외국의 법원에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다면,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걸러주어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대한민국의 공서양속 위반인지 국내법원이 조사하여, 외국법원의 부당한 재판이나 판결로부터 국내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내법질서도 보호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가 이와 관련된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외국판결의 승인을 거부한 사례도 있다.[106)]

아래에서는 국제소송경합에 대한 취급과 관련된 민사소송법 규정 신설제안의 내용과 국제소송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제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본다.[107)]

(1) 국제소송경합에 대한 취급 관련 민사소송법 규정 신설의 제안

국제소송경합의 문제는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논의되었으나, 민사소송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제소송경합에 관한 이론은 국제사법의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중재나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에서의

106) 대법원 1994.5.10.선고 93므1051 판결은,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3호[개정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3호]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107) 이규호, “국제민사소송절차의 개선방안-관련 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FTA 발효에 따른 국제민사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한 공청회」, 한국기업법무협회, 2012 , 40~89면.

논의에서도 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 국제소송경합에 관한 민사소송법 개정의 제안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제소송의 경합에 따른 중지(규정의 신설제안)

第246조의2 (국제소송의 경합에 따른 중지)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국내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때에 외국법원에서 선고될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법원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속관할을 가지는 경우 2.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이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 3. 국내법원이 당해 사건을 처리하기에 보다 적절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외국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가 국내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때에 외국법원에서 선고될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신설이 제안된 규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은 법정지 법리에 관한 요건과 전소법원과 후소법원에서의 절차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후소법원이 적절한 법정지인 경우에 전소법원의 소송절차를 중지하고 후소법원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은 헤이그국제사법회의 "민사 및 상사사건의 국제재판관할과 외국재판에 관한 협약" 예비초안 제21조 제1항의 내용을 담은 것이다.

(2)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절차의 개선

국제소송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서 유럽지역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국내에서도 절차의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관한 해결책은 국제소송의 특수성을 충분히 감안하면서도, 국내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존중하는 지혜를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 국내외 논의를 고려하여 제안된 이 문제에 관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 승인의 요건과 손해전보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배상 등(제217조 제1항 3호 단서와 4호의 신설제안)

3. 그 재판의 내용 및 소송절차에 비추어 보아 그 재판의 승인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은 그 초과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으로 본다. 4. 대한민국과 그 외국법원이 속하는 국가에 있어 외국재판의 승인요건이 중요한 점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을 것.

승인의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 민사소송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등의 기준을 두고 있었다. 3호와 4호의 신설/보완 개정안은 이를 더욱 구체화하려고 하였다. 특히 손해전보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재판은 그 초과범위 부분을 제외하고자 한다. 이것은 징벌적손해배상이 우리나라의 공서에 위반함을 명시하는 의미를 가진다.

-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의 과도한 부분의 제한(제217조 제2항과 제3항의 신설)

② 외국 법원이 인용한 변호사보수를 비롯한 소송비용이 과도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외국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이 소송과 관련된 비용과 경비를 전보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제217조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이 과도한 경우 국내법원이 이를 다시 제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한다.

- 요건 구비 여부 등을 국내법원 직권조사사항으로 지정(제217조 제4항의 신설)

④ 법원은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안된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제217조에서 조항을 신설하여 승인의 요건을 직권조사사항으로 하려고 하였다.

제3절 소 결

지금까지 FTA의 체결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에 대한 내용을 개정 또는 제정된 법률을 행정제도 및 공기업 관련 분야, 독점 · 무역관련 분야, 조세관련 분야, 특허관련 분야, 전문자격사에 대한 분야로 세분하여 그 변화부분을 검토해보고 내용을 정리하였다. 아울러 FTA 확대상황에 합치하는 법률선진화 방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현재까지 FTA체결과 관련하여 법개정 및 제정은 특정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부분에 검색되었고, 1회에 그친 경우도 있으나, 계속 체결되는 다양한 FTA에 합치하기 위해서 같은 법률에 대해서도 여러번 개정된 경우도 찾을 수 있었다.[108]

FTA와 관련하여 현재 개정된 법률분야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특허 · 지식적재산권 관련 법률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 법률의 숫자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개정 법률 간에는 유사한 점이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비밀유지명령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개정은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특허법, 상표법 개정 등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는 특허, 상표,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하여 비밀유지명령을 내려 권리자를 한층 보호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러한 권리자의 보호의 측면은 저작권법에서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법개정이나, 특허법에서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법개정,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반입 · 반출을 금지하는 법개정, 관세법에서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를 도입한 법개정 등에서 일맥상통하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하나의 흐름은 FTA 체결로 인하여 기존보다 특허 ·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의 권리자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려는 협정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다.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후진국으로 평가되어 온 현실을 개선하는 좋은 계기될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자격사에 대한 분야에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

108) 예를 들어 같은 법률에 한-EU FTA를 준수하기 위한 개정이 있었고, 그 뒤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합치하기 위한 개정을 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자격 보유자 개인에 관한 법개정보다는, 이들이 다수가 모인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대한 법개정이 주목된다. 즉, 개정된 내용에서는 외국 법무법인(로펌), 회계법인, 세무법인에 대한 국내 시장의 개방을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들을 동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개방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시장개방은 FTA 내용에 합치는 물론 세계적인 추세에 비추어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국내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단계적 개방하도록 법을 개정한 것은 FTA의 합치와 관련 국내 시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평가된다.

물론 FTA 확대에 따른 법률분야의 선진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본문에서도 몇 가지 제안을 하였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직접 관여하게 되는 국내법 체계인 법률과 시행령 수준의 개선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기회가 많았고, 이러한 기회에서 관련 국내법의 개선이 상당히 진행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TA 체결로 인하여 법률의 내용면에 있어서는 변화하게 되는 관세 및 여러 국가 규제와 상대방 국가정부/기업 등에 대한 평등한 취급, WTO 다자간 규범과의 조화, 국내 취약 산업에 대한 보호,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요소의 재배치 등 매우 다양하고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국내법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비교적 합리적인 제안들이 법률개정에 반영되면서, FTA와 법률의 개선작업은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된 법률개선 작업이 상당한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하더라도, FTA 상대국과 그 영향은 미래에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도 공동연구등의 형태로 진행중인 FTA가 많으며, 이러한 FTA들이 실제 타결되는 경우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작업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FTA의 기본원칙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법률 및 시행령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지속되어야 한다.

제6장 자치법규의 개선을 위한 제안

이미 몇몇 자치단체에서 한-미 FTA 발효와 함께 FTA와 자치법규 사이의 비합치가능성 및 이에 대응하여 개선하려는 조례 등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대다수의 자치단체들은 이른바 'FTA 시대 자치법규 선진화'의 출발점조차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장에서는 국내 자치법규가 FTA 원칙과 비합치하는 사례를 검토한 후, 앞서 언급한 FTA의 기본원칙별로 해당 자치법규의 개정안 및 상-하위법 상호 관계에 기인한 선진화 방안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제1절 현행 자치법규의 FTA와의 합치성 여부 검토

2011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는 조례와 규칙 등 자치법규의 수가 총 79,043건(조례 55,996건, 규칙 23,047건)으로, 1992년에 비해 약 48%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수는 4천여건인 법령 건수의 약 20배나 되므로,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법령 선진화의 일환으로 FTA와의 합치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매우 높아졌다.

법령의 범위에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한 법체계[109]로 인하여 FTA 협정에 신속히 반응(합치)하도록 지방자치법규를 제ㆍ개정 하는 것에는 다소 신속함이 부족하기 마련이다. 특히, 자치법규는 중앙정부의 법령에 비해 입법기능 또한 취약하기 때문에, FTA 기본원칙의 이해부족 등에서 야기되는 FTA 협정과의 비합치 문제 발생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FTA 정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은 계속 논의되었으며, 특히 한-미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법규와 FTA 또는 국제규범과의 조화라는 문제가 크게 부각되었다.

---

109) • 헌법 제117조 제1항 :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 제정
- 지방자치법 제22조 : [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
- 지방자치법 제23조 : [자치단체장의 규칙 제정권] "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 제정"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 : 교육감의 교육규칙 제정권

한-미 FTA와 한-EU FTA 등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되는 FTA가 체결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더욱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지방자치법규의 개선은, 지방사회의 기본적인 정서가 깊게 반영된 것이기도 하므로, FTA라는 국제규범과 합치되지 못하여 심한 갈등을 낳을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정부는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수차례의 조사를 통하여 FTA 원칙과의 합치성 여부를 계속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와 분석들은 주로 FTA의 기본원칙이 지방자치법규의 특정 규정들과 합치할 수 있는가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을 주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법규 중에서 지하철/개발공사의 임원에서 외국인을 제외하는 것이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합치할 것인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장 많은 논의를 낳은 사안은 여러 지방자치단체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학교급식 지원시 국내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FTA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일부 지방자치법규에서는 향토음식점 음식재료로 지역 농산물을 우선 이용하고, 친환경 농산물을 관내 생산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FTA의 근본원칙과 부합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도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정부는 꾸준히 지방자치법규에 관한 사항들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한-미 FTA의 준비와 협상, 체결과정에서 자치법규의 비합치 가능성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전개되었다. 특히, 서울특별시가 소관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점검과 점검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유도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표 9> “한·미 FTA 관련 비합치 법령에 대한 대책마련 건의(2012.1.26)” 에 대한 정부(외교통상부)의 검토 답변(2012.2.6.)

※ 전체적으로 한·미 FTA와 비합치하는 조례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따라 지자체는 한·미 FTA를 포함한 상위 법령내에서 사무를 처리하도록 지방사무 및 자치조례 운용과정에 주의를 기울이고 근거자료를 축적해나가는 것이 필요함. ㅇ 한·미 FTA 발효시 양국내 시행중인 기존 자치법규의 내용은 협정상 의무에 합치여부에 관계없이 그대로 인정한 상태에서 발효됨(협정 제11.12조, 제12.6조,

제13.9조).

1 **서울시가 발표한 유형 A 관련** (8건 : 상위법령이 한·미 FTA 비합치할 가능성이 있어 자치법규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건의할 필요)

ㅇ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조례** : 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 나갈 필요

-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규모점포에 대한 등록 제한 규정이 한·미 FTA상 시장접근 의무 및 WTO 서비스협정(GATS)상 의무에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설정 및 동 지역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등록상의 제한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 하기 위한 비차별적 국내규제로서 시장접근 의무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음.

- 이렇게 상이한 주장이 함께 존재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이미 시행중인 점을 감안, 동 제도가 차별적이고 과도한 진입규제로 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제반 통상협정상 의무와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균형있게 운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함.

ㅇ **건설기술관리법 관련 조례** : 한·미 FTA와 비합치하지 않음.

-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 법 시행령상 신기술활용제도는 기술개발자의 국적 또는 기술개발장소가 국내인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국내 심사를 거쳐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을 인정받은 건설기술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임.
- 이 제도는 외국 개발자 및 건설회사에게도 참여가 허용되어 있으므로 한·미 FTA 서비스 또는 투자챕터의 내국민대우와 충돌하지 않음.

ㅇ **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 조례** : 한·미 FTA와 비합치하지 않음.

- 사회적기업육성법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상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조항은 정부조달에 해당되어 한·미 FTA 제2.2조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협정위반 소지는 없음.

2 **서울시가 발표한 유형 B 관련** (8건: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뒷받침할 자료 축적이 필요)

○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 : 한·미 FTA와 비합치 하지 않음.

- 한·미 FTA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은 중앙정부기관의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절차에만 적용됨(제9.2조제1항).
- 학교급식용 식재료 구매는 정부조달에 해당되며, 정부조달은 한·미 FTA 제9장(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제9.2조제2항).

○ **기업지원 관련 조례** : 한·미 FTA와 비합치 하지 않음.

- 전략산업(첨단산업 등)을 위한 우대조치를 통해 이러한 산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조례에 내·외국인간 차별을 규정하지 않고, 실제 운용상 내·외국인 차별을 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가 우려하는 내국민대우 위반소지는 없을 것임.

3 **서울시가 발표한 유형 C 관련** (11건: 운용에서 주의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 **시설 등의 관리 관련 조례** : 한·미 FTA와 비합치 하지 않음.

-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서울시의 노력을 평가하며, 현행 관련 조례는 한·미 FTA와 비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보조금 관련 조례** : 한·미 FTA와 비합치 하지 않음.

- 한·미 FTA에는 보조금 규정이 부재하여 협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

※ 서비스챕터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제12.1조제4항), 투자챕터상 내국민 대우 등 의무는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음(제11.12조제5항).

○ **간접수용 관련 조례** : 한·미 FTA와 비합치 하지 않음

- 간접수용이란 직접수용과 동등한 재산권 침해 효과를 가지는 경우를 말하나,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위한 비차별적인 규제행위는 간접수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한·미 FTA 부속서 11-나), 서울시가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게 정책을 일관되게 운용한다면 문제 소지는 없을 것임.

4 **서울시가 발표한 유형 D 관련** (3건: 자치법규 개정 필요): 한·미 FTA와 비합치하지 않음.

ㅇ 현행 조례는 한·미 FTA와 상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코자 하는 취지의 개정여부는 상위법령의 범위내에서 해당 지자체가 판단 가능함.

2007년 한-미 FTA 협상 타결 이후 FTA 후속조치를 위해 정비가 필요한 법령을 조사하고 정비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모습이 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예를 들어 법제처는 한-미 FTA의 협상 타결 직후인 2007년 6월, 한-미FTA 후속조치를 위해 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 등 총 70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국무총리실 등 관계 기관은 협의체 구성 및 하위법령 특별 정비 대책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법령에 대한 특별정비를 시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FTA의 원칙을 고려한 법령의 개선작업을 다소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진행중인 자치법규의 선진화 작업은, 향후 FTA 원칙을 고려하는 것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2절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기존질서의 유보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의 체결에 있어서, 많은 경우에는 각 당사국의 기존 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유보조항을 두는 경우가 많다. 지방자치와 관련하여, 기존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그러한 노력이 많은데, 한-미 FTA의 체결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다. 즉, 제1.3

조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조례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만, 양국내 시행중인 기존 자치법규는 FTA에 따른 의무에 합치하는가와 상관없이 그대로 유효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규정하는 한-미 FTA의 규정은 대체로 제11.12조, 제12.6조, 제13.9조 등이다. 예를 들어, 투자에 관한 한-미 FTA 제11장에서 자치법규에 대한 유보를 설정하는 근거조항은 다음과 같다.

제11.12조 비합치 조치 1.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및 제11.9조는 다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당사국이 다음에서 유지하는 기존의 모든 비합치 조치 1)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중앙정부 2) 부속서 I의 자국 유보목록에 그 당사국이 기재한 대로, 지역정부, 또는 3) 지방정부 나.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지속 또는 신속한 갱신, 또는 다. 가호에 언급된 모든 비합치 조치의 개정이 제11.3조, 제11.4조, 제11.8조 또는 제11.9조에 대하여 그 개정 직전에 존재하였던 그 조치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그 개정

특히 한국의 경우, 위 11.12조 제1항 가 3)에서 말하는 ‘지방정부’라 함은 지방자치법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또한 ‘기존’의 의미는 정의 규정인 제1.4조에 따라서 한-미 FTA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결국 투자에 관한 지방자치법규가 한-미 FTA 이전에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지방자치법규는 설령 한-미 FTA의 이행의무에 합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유보조항에 따라서 당사국이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다.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관한 제12.6조와 금융서비스에 관한 제13.9조 역시 같은 취지도 동일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비합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한-미 FTA의 유보조항이 기존 지방자치법규의 FTA 비합치성를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분야는 투자,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에 국한되며, 다른 분야에 관하여는 여전히 지방자치법규의 유보는 불안정하거나 인정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이러한 유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기존’의 것에만 해당되며, 새로운 자치법규는 한-미 FTA의 기준에 합치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현 정책은 적극적인 FTA 체결 추진이라는 흐름에 보조를 맞추어 국내 상·하위법령의 선진화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미처 FTA시대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령에 대해서는 각 FTA별 상대국과의 교섭을 통해 포괄적인 유보[110)]를 정함으로써 해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포괄적 유보" 역시 협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요구하는 측에게는 불리한 레버리지로 작용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자치법규를 포함한 국내법령의 시급한 선진화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향후 더욱 확산될 FTA 시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FTA에 근본적으로 조화될 수 있는 국내법령의 체질 개선, 특히 자치법규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s)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3절 FTA 기본원칙별 선진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를 FTA 현상에 합치하도록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동원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FTA의 기본원칙을 기준으로 현존하는 자치법규를 검토하면서 그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 원칙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자국의 동종 사업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FTA뿐만 아니라 WTO 규범의 기본원칙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 자치법규 중 특정 사회계층, 사업분야 또는 사업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례 등이 내국민대우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110) 협정상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현존 조치를 나열하는 '현재유보'와 향후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현존 비합치 조치 또는 전혀 새로운 제한 조치가 채택될 수 있는 분야를 나열한 '미래유보'가 이에 해당한다.

실례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에서 규정한 지원대상 항공사업자 중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크다.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은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특히, 동 조례는 상위법령인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제3조 2항의 개정사항을 신속히 반영하지 않아 상-하위법령 간 비합치가 발생한 대표적인 사례로, 자치단체 스스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자치법규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관련 부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과정에서 상위규범과의 합치를 유도하기 위한 검토를 제안할 수 있다.

※ 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 2항 제3조(항공운송사업의 조성) ① 정부는 항공운송사업을 하는 자(이하 "항공사업자"라 한다)가 「항공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으로 융자하여 줄 수 있다. 1. 국제항공노선의 신규개발 2. 항공기의 조종사, 정비사 및 무선기술기사의 양성

3. 전쟁 · 내란 · 테러 등으로 인한 손실의 발생 ② 지방자치단체는 항공운송사업의 진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사업자(<u>*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를 포함한다.*</u> 이하 제8조에서 같다)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17.]

해당 조례는 위의 원칙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u>*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는 제외한다*</u>.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은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 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 <u>*(삭제)*</u> 이하 같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은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 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사회적기업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에는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토록 권고하고 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12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10.6.8.]

이와 관련하여, 많은 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에서 '자치단체장은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절차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국내기업만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우선 구매의 실질적 수혜자가 된다는 점에서 내국민대우의 위반으로 분쟁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위 규정을 이어받아 제정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하남시, 강화군 등 다수 자치단체의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해당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

※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기 조례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위배될 개연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조달*	제8조(*소비 장려 촉진*) ① *삭제*

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22>	
②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Ⅱ. 시장접근 제한 금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 원칙은, 내국민 대우의 원칙과 같이 평등에 근거한 FTA 기본원칙으로, 외국인의 자국 시장 접근에 대한 규제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자치법규상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선발시 국내 공공기관 및 공사 등을 우선 지정토록 규율하는 내용은 시장접근 제한 금지의 원칙을 대표적인 위반하는 사례이다.

>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
>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
>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동 조례는 시장접근 제한금지의 FTA원칙을 반영하여 시장접근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제11조(사업시행예정자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4. *위 각호의 기관, 단체와 동등한 사업역량이 있다고 도지사가 판단한 외국법인 (추가)*

위와 같은 개발사업시행 관련 자치법규는 개발사업의 종료 이후 폐지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유사한 사례는 파악되지 않으나, 향후 신도시 개발 등의 대규모 사업 관련 조례 제정시 반드시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도 FTA 시장접근 원칙에 위배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국내 유통대기업에 대해서도 등록제한의 조치가 동등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비차별적 국내규제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장의 등록제한 기준으로 제시된 내용은 외국기업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여지도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FTA의 시장접근 원칙에 비추어 위배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자치법규의 예는 아래와 같다.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시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강릉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상생협력사업계획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위 조례들의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의 해당 조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개정규정 중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제2항ㆍ제3항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중략]---------------------------------- 제13조의3(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

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11.24]

[법률 제10398호(2010.11.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5년 11월 23일까지 유효함]

시장접근의 동등한 기회보장이라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자치법규에서는 등록제한 기준을 보다 객관적인 요소로 규정하여 차별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조례들의 규정은 아래와 같이 개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 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발전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

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2. 강동구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대규모점포등의 등록) ①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시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상생협력사업계획서 제출 시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에 설립된 상인조직(「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조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2>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등록을 제한</u>할 수 있다. 1. <u>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u> 2. <u>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u>	④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등록을 제한</u>할 수 있다. 1. <u>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단, 상인조직의 반대(이의) 근거가 객관성을 상당히 결여하였거나 불합리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였을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2. <u>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u>

Ⅲ. 현지주재 의무 금지(Local Presence; LP)

현지주재 의무 금지의 원칙은, 일반적으로는 국경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 안에 대표사무소 또는 기업 등을 설립·유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원칙이다.

국내 자치법규 중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대표되는 수도권역 외 지역개발

사업시행 조례 등에서 빈번히 나타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의 사무소를 권역내 위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FTA의 현지주재 의무 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권역내 사무소 소재 의무를 부과하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주광역시 하남3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시행자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청 내에 둔다.*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삭제--*

Ⅳ. 이행요건 부과금지(Performance Requirement; PR)

이행요건 부과금지의 원칙은, 생산품 중에서 일정한 비율 수출 강제, 국산품 사용의무 부과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원칙이다. 만약 어느 자치법규가 해당자에게 특정한 이행을 조건으로 권한을 부여하거나 지원을 약속하는 경우에 이러한 원칙의 위반일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친환경우리농산물 만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ㆍ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국산품 의무 사용 등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동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많다. 이러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친환경<u>*우리*</u>농산물 우선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u>*친환경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u>하여야 한다.	제3조(친환경~~*우리*~~*(삭제)*농산물 우선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의한 친환경~~*우리*~~*(삭제)*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 조례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친환경<u>우리</u>농산물’의 정의 부분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향후 FTA에 따른 분쟁의 여지를 제거하는데 필요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u>*우리*</u>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신선 농 · 수 · 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생산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우리*~~*(삭제)*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신선 농 · 수 · 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생산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 관리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수·축산특산물 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아. 친환경우리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자.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이력추적 관리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원양산을 포함한다) 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증한 농·수·축산특산물 사.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 아. 친환경우리농산물수급체계에 따라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 자.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 식품

Ⅴ.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Senior Management and Boards of Director; SMBD)

FTA의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이란, 특정한 국내법규정이 특정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 자국 또는 특정 국가의 국적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의 영향 아래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단, 공사 설치조례상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한 관련 조례는 고위 경영층의 고용에 있어서 국적에 불문한 투자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위경영자/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2조 1호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특정 국적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경상남도개발공사 설치조례 제12조 1호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삭제)*~~

제3절 상-하위법 상호 관계에 기인한 선진화 방안

상위법령 상 특정 규제나 지원 등의 권한을 자치법규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 관련 권한에 대한 재량권이 남용되어 FTA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영업시간 제한
> 2. 의무휴업일 지정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2.1.17]

그러나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 내용에서는, 다음과 같이 위임된 내용을 개별/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재량권 남용의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

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본조신설 2012.6.1)

이러한 자치법규의 규정은 최근 국내에서도 다양한 논란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서 사회의 여러 의견이 충돌하는 사안이 되었고, 국내법적 쟁송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FTA의 원칙을 고려하여 검토하면, FTA 기준을 존중한 상위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서 또다른 비합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해당 조례의 내용은 위임권한의 범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중구 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	제14조의2(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삽입) 중구 내에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1. 영업시간 제한 :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2. 의무휴업일 :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본조신설 2012.6.1)	---------------------- ---------------------- ---------------------- ----------. 1. 영업시간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2. 의무휴업일은 월 1일 이상 2일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 대해서는, 위임을 하는 상위법률 자체의 FTA 원칙에 대한 위배가능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자치법규의 개선 이전에 상위법률의 검토를 통하여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제4절 소결 및 정책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TA로 대표되는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을 위한 실무 교섭 단계에서부터 그 영향과 파급효과를 감안하게 되는 상위법령은 자치법규보다 상대적으로 기민하게 법률 개정 등의 선진화(현실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로 많은 상위법령들은 여러 차례 FTA 체결을 거치면서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당시 상위법령보다 비교적 관심을 덜 받았던 자치법규의 신속한 선진화 정비가 시급해졌다. 비록 한-미 FTA에서 유보조항을 통해서 기존의 자치법규 개선이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향후 진행될 FTA에 따라서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법규에 관하여 상위법령과의 신속한 합치 작업 등에 관하여 업무 처리절차를 견고하게 설정하거나 또는 FTA 원칙을 고려한 자치법규 선진화를 진행하기 위한 기본원칙의 정립이 필요하다. 제안할 수 있는 기본원칙의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위법령 제개정 취지 및 내용을 신속 정확히 파악하여 관련 자치법규에 반영한다.

둘째, FTA 기본원칙에 대한 숙지를 바탕으로 해당 자치단체 차원에서 관할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 및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셋째, 둘째 과정에서 비합치가 의심되는 자치법규가 발견되는 경우, 법제처 등 관련 상위기관에 적극 문의하여 검토를 요청한다.

넷째, 법제처 또는 행정안전부 등 상위기관을 중심으로 자치단체간 비합치 사례 및 개정 검토 내용을 유기적으로 공유하도록 한다.

다섯째, 공유된 사안이 유사한 내용의 다른 자치법규 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담당자들이 이와 같은 단계를 통하여 FTA 원칙을 고려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검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중앙정부의 해당기관 또는 법제처 차원에서 이러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주체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제처 내부에 가칭 ‘FTA시대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팀’의 설립 및 운영을 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지원팀의 운영 초기에는 FTA시대 우리 자치법규의 대표적인 선진화 필요 사례를 유형별로 수집하고, 최종 선진화까지의 단계별 과정을 도식으로 요약 정리하여 자치단체 교육에 필요한 자료를 만든다. 중반부터는 앞서 정리한 교육자료를 토대로 자치단체별 방문지도를 실시한다. 이때, 방문할 자치단체의 단위는 광역자치단체별 구성이 시간과 비용면에서 효율적일 것이다. 광역자치단체 내 업무 담당자 커뮤니티 조성에도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종반에는 각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 협력과 정보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원팀의 일련의 업무 수행은 FTA 시대를 맞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사이의 유기적 업무 협력의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제7장 결 론

FTA를 통하여 마련된 규범과 기준은 국내규범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일종의 법적인 자원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FTA를 체결하는 국가는 이른바 ‘법적 기반(Legal Infrastructure)’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적 기반이 산업기반시설과 같은 역할을 할 경우에 체결 당사국의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양자를 유사한 의미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FTA의 원칙을 고려한 법령의 개선을 통해서, 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분쟁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FTA의 법적 성격과 기본원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서, FTA 시대에 합치하는 법령의 개선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한국이 지금까지 추진해온 FTA 정책은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었다. 국제사회의 약속인 FTA를 이행하고, 향후 국익을 위한 새로운 FTA 체결과정에서도 이러한 분석내용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FTA 규범과 국내법의 조화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FTA를 포함한 지역무역협정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EU와 같은 선진국에서도 국제법인 FTA와 국내법 사이의 조화 또는 합치의 문제는 어려운 과제였다. 이들은 다양한 법개선과 판례를 통하여 지역무역협정의 국내법 적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하고 실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EU FTA와 같은 새로운 FTA 상대국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준비를 하고 있다.

분석 결과, 중앙정부와 관련된 많은 국내 법률 및 시행령 등은 이미 FTA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면서 법률의 개선과 선진화를 진행하였다. 특히 한-미 FTA와 한-EU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내 법률의 개선작업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향후 진행할 새로운 FTA를 고려하여, 이러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법률의 개정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FTA 관련 상위법령의 개선은 향후 정부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상위법령이 가지는 상황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상대적으로 법률 개정 등의 선진화(현실화) 단계에서 어

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FTA 원칙이 어느 정도 설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을 고려한 자치법규의 개선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자치법규들 중에서 FTA 원칙을 고려하여 비합치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개선안을 제안해 보았다.

한-미 FTA의 유보조항은 기존의 자치법규 개선을 미룰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유보조항을 통해서도 자치법규의 비합치성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마련되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유보조항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개선을 요구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한 다른 앞으로 한-중 FTA와 같은 영향력이 큰 FTA의 체결에 대비해서라도 자치법규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자치법규의 선진화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FTA 시대에 대비하는 자치법규의 신속한 선진화 정비가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합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와 자치단체 사이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자치법규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단체는 FTA 원칙을 투영한 자치법규 선진화 작업을 진행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FTA를 고려한 자치법규 선진화 작업을 위한 몇 가지 기본원칙을 제안해 보았다.

그러나 자치법규의 선진화 작업은 자치단체만의 몫은 아니다. 법제처 등 중앙정부의 해당기관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주도하여 자치단체에게 개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가칭 ‘FTA시대 자치법규 선진화 지원팀’의 설립 및 운영을 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향후 구체적인 대안을 연구하여 제시할 수 있는 상설기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 록

※ FTA 체결을 원인으로 하여 제·개정된 법률 현황

구분	법률명	담당부처	개정이유	한미FTA 관련조항	추진상황
국회 통과 (23)	행정절차법	행정 안전부	법령 입법예고기간을 20일 →40일로 확대	제21.1조 제3항 등	11.12.02 공포, 12.03.15 시행
	우편법	지식 경제부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의 범위 축소	제12장 서한(특급배달 서비스-규제 개혁절차)	11.12.2 공포, 12.3.15. 시행
	우체국 예금보험법	지식 경제부	금융위의 우체국 보험에 대한 감독기능 강화, 신상품 개발 금지	부속서한(일반인에 대한 우정사업본부의 보험공급)	11.12.02 공포, 12.03.15 시행
	전기통신 사업법	방송 통신위	공중통신서비스 재판매시 차별 금지, 허가조건·허가 소요기간 공개	제14.6조 등	10.3.22 공포, 10.9.23 시행
	전파법	방송 통신위	정보통신기기 인증 관련 상호인정 제도 도입 (시험기관 지정, 국제적 적합성 평가 체계 구축)	제9.5조 등	10.7.23 공포, 11.1.24 시행
	범죄수익 은닉처벌법	법무부	상표권, 저작권 침해를 중대범죄로 규정	제18.10조 등	08.12.19 공포, 09.3.20 시행
	독점규제· 공정거래법	공정 거래위	동의의결제 도입	제16.1조 등	12.03.21 공포, 12.06.22 시행
	불공정무역 행위구제법	지식 경제부	FTA 체결국에 대한 다자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배제	제10.5조 등	08.3.21 공포, 08.9.22시행

구분	법률명	담당부처	개정이유	한미FTA 관련조항	추진상황
	대외무역법	지식 경제부	섬유·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 협력	제4.3조 등	09.4.22 공포, 09.10.23 시행
	관세법	기획 재정부	저작권 침해 물품에 대한 직권 통관보류제도 도입	제18.10조 등	07.12.31 공포, 08.1.1 시행
	개별소비세법	기획 재정부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3년내 5% 단일관세율)	제2.12조 등	11.12.02 공포, 12.03.15. 시행
	지방세법	행정 안전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율구간 조정 및 세율 인하: 5단계(80원~220원)→3단계(80원~200원)	제2.12조 등	(11.12.2 공포, 12.3.15 시행)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식 경제부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의 반입 반출 금지	* 한-EU FTA에 포함된 사항	11.6.30 공포, 11.7.1 시행
	실용신안법	지식 경제부	등록지연에 따른 실용신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제18.8조 등	11.12.2 공포 12.3.15 시행
	디자인보호법	지식 경제부	디자인권 등의 침해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제18.10조 등	11.12.02 공포, 12.03.15 시행
	부정경쟁방지법	지식 경제부	관련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제18.10조 등	11.12.2 공포, 12.3.15. 시행
	특허법	지식 경제부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공지예외 적용시기 연장(6월→12월)	제18.8조 등	11.12.02 공포, 12.03.15 시행
	약사법	보건 복지부	의약품의 시판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통보)	제18.9조 등	11.12.2, 공포, 12.3.31 시행

구분	법률명	담당부처	개정이유	한미FTA 관련조항	추진상황
	저작권법	문화 체육 관광부	저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第18.4조 등	11.6.30 공포, 11.7.1 시행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연장(50년→70년) 등		11.12.02 공포, 12.03.15 시행
	상표법	지식 경제부	몰수 대상에 상표권 침해에 사용된 재료 포함	第18.2조 등	11.6.30 공포, 11.7.1 시행
			상표 범위 확대(소리·냄새 포함), 법정손해배상제도 신설, 비밀유지명령제도 도입 등		11.12.2 공포, 12.3.15 시행
	세무사법	기획 재정부	외국세무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1단계)	부속서 II(서비스/투자)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 전문직 서비스-외국세무사	11.6.30 공포, 11.7.1 시행
	외국법자문사법	법무부	외국 로펌에 대한 단계적 개방 (1단계)	부속서 II(서비스/투자) 대한민국 유보목록 분야 : 법률서비스-외국법자문사	09.3.25 공포, 09.9.26 시행
			" (2단계)		11.4.5. 공포, 11.4.30 시행
	공인회계사법	금융 위원회	외국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1-2단계)	부속서 II(서비스/투자) 대한민국의 유보목록 분야 : 전문직 서비스-외국공인회계사	11.6.30 공포, 11.7.1 시행

※ FTA의 원칙과 비합치될 가능성 있는 지방자치법규 현황

연번	자치법규 명칭	조 항	세 부 내 용	비합치성 판단
1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친환경우리농산물 우선사용)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 및 유아교육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친환경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국산품 사용의무 부과는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요건의 부과를 금지하는 "이행요건 부과금지" 위배
2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우리농산물·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우리농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한 신선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으로서 생산과 유통이 투명하여 그 이력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FTA협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되나, 상대국 또는 상대국 투자자가 TBT준수의무(제9.1조) 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소지 있음
3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지주재, 내국민대우
4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지주재, 내국민대우

5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1호	1. "향토음식" 이란 지역의 특산물을 이용하거나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으로 조리되어 지역고유의 맛을 내는 향토색 있는 음식과 이를 기본으로 개발된 새로운 음식을 포함하여 말한다. 다만, 제주산 식재료 공급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내산 식재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행요건
6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2조(지원대상) 1호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사업자(『항공운송사업 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공사업자로서 외국인 국제항공사업자는 제외한다.)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을 정기편으로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국제항공노선은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으로 한다.	내국민대우, 시장접근 제한
7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48조(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 제2항에 따라 안전도 검사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3명 이상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2. 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3.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도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장비	시장접근 제한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사업시행 예정자의 지정대상)	도지사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도지사가 민간기업과 공동 개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국가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자치단체나『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3. 제16조 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단체	시장접근 제한, 현지주재
9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 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상위법령인『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또는 서비스를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국내 기업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한미 FTA 상품 판매에서의 내국민대우 조항에 위반될 수 있음
10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 조례	제14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이하 "개설등록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의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것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것이지만, SSM에 대한 규제, 조건부과

			② 행정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 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지역 내 중소유통업체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③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추진계획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적합한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의 신청자가 제3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는 때에 제8조에 따른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행정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 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 3. 제6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과잉공급에 대한 시장의 역기능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	등을 규정한 상위법령이 한미 FTA 시장접근에 위반될 수 있음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구청장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형마트로 등록된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시장접근 제한 금지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6조(안전도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40조 제2항에 따라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검사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2.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사무실 설치 요구(현지주재)로 볼 수 있어 시장접근 위배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제16조(도로명주소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법에 따라서 설치된 도로명주소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 최근 3년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지방공사·공단으로 제한을 두는 시장접근 위배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표 5에 따라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기간	폐기물 관리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대행자격 제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영업 구역 제한으로 시장접근 위배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제11조(분뇨수집·운반 등의 대행)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별표 1의 요건을 갖춘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오수·분뇨 관리 관련 서비스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대행자격 제한, 분뇨수집운반업의 영업구역 제한은 시장접근 위배
16	인천광역시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6호	6. "식재료"란 친환경무상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식품위생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과 이 원료로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이력 추적이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국 또는 상대국 투자자가 TBT준수의무(제9.1조) 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소지
17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 조례	제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임원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는 것은 내국민대우 위배